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 출 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원 장 김 선 기

연 구 진

연구책임	황 영 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임 승 현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배 균 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호 중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김 수 용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제2장.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7
1. 공유경제, 개념과 배경	9
2. 공유경제, 자원과 방식	15
3. 공유경제, 특징과 쟁점	20
4. 공유경제, 유형과 사례	25
5. 공유경제, 정책사례	31
6. 공유경제, 기대와 전망	36
제3장. 전라북도 공유가능 자원조사	41
1. 공유가능 자원조사 개요	43
2. 정부 공유자원 DB 조사	45
3. 전라북도 공유자원 자체조사	49
4. 전라북도 공유자원 통합 DB	52
5. 자원조사 시사점과 과제	60
제4장.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조사	63
1. 도민 의식조사 개요	65
2. 공유경제 여건진단	68
3. 공유경제 인지경험	71
4. 자원보유 이용실태	74
5. 자원제공 이용의향	78
6. 공유자원 이용 중요도	83
7. 공유경제 기대태도	88
8.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91
9.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	93

제5장.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101
1. 조건검토	103
2. 정책가치	105
3. 정책구성	106
4. 비전과 목적	107
5. 방향과 전략	108
제6장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113
전략 1.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115
전략 2.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125
전략 3.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131
전략 4. 생활 속의 공유가치 확산	139
전략 5.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151
전략 6.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 육성	167
전략 7.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운영	177
전략 8. 공유경제 전담조직 강화	185
전략 9.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193
제7장 예산계획 및 평가관리	201
1. 예산계획	203
2. 평가관리	206
참고자료	209
부록 1. 공유경제 국외 벤치마킹 결과	213
부록 2.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27

표 목차

〈표 2-1〉 공유경제 관련 이론적 자원	13
〈표 2-2〉 공유경제의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 구분	15
〈표 2-3〉 공유경제 제공 서비스에 따른 유형 구분	16
〈표 2-4〉 공유경제 작동의 필수요소	17
〈표 2-5〉 공유경제와 소유경제의 특징 비교	21
〈표 2-6〉 공유경제와 렌탈 서비스의 비교	22
〈표 2-7〉 작동체계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구분	26
〈표 2-8〉 거래자원 형태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구분	27
〈표 2-9〉 서울특별시 대표 공유경제 사업	35
〈표 2-10〉 상위 10개 유니콘 기업 중 공유경제 기업	36
〈표 3-1〉 전북도내 공공부문 공유자산 조사대상 기관	44
〈표 3-2〉 정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유자원 유형별 구분	48
〈표 3-3〉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자원조사 대상기관	49
〈표 3-4〉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유형별 구분	52
〈표 4-1〉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주요내용	66
〈표 4-2〉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응답자 지역분포	66
〈표 4-3〉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1	67
〈표 4-4〉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2	67
〈표 4-5〉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관련 집단 비교	69
〈표 4-6〉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관련 도시-농촌 비교	69
〈표 4-7〉 렌탈방식 사업에 대한 의견의 집단 비교	70
〈표 4-8〉 공유경제 ‘인지여부’와 ‘경험여부’	71
〈표 4-9〉 공유경제 ‘인지여부’ 관련 집단 비교	72
〈표 4-10〉 공유경제 ‘이용경험’ 관련 집단 비교	72
〈표 4-11〉 생활자원 ‘보유정도’ 관련 집단 비교	75
〈표 4-12〉 생활자원 ‘이용정도’ 관련 집단 비교	76
〈표 4-13〉 생활자원 ‘현재 이용정도’ 및 ‘추가 이용의향’	77
〈표 4-14〉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활용 태도’ 집단 비교	78
〈표 4-15〉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제공 의향’ 집단 비교	79
〈표 4-16〉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이용 의향’ 집단 비교	80
〈표 4-17〉 ‘물건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83
〈표 4-18〉 ‘공간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84

〈표 4-19〉 ‘재능·경험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85
〈표 4-20〉 ‘정보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85
〈표 4-21〉 ‘노동력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86
〈표 4-22〉 ‘공공자원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87
〈표 4-23〉 공유경제 ‘긍정적 기대’ 관련 집단 비교	89
〈표 4-24〉 공유경제 ‘부정적 우려’ 관련 집단 비교	90
〈표 4-25〉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	91
〈표 4-26〉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별 의견 1	92
〈표 4-27〉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별 의견 2	92
〈표 4-28〉 공유경제 ‘제도마련’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3
〈표 4-29〉 공유경제 ‘제도마련’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4
〈표 4-30〉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5
〈표 4-31〉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6
〈표 4-32〉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지원’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6
〈표 4-33〉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7
〈표 4-34〉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98
〈표 4-35〉 공유경제 ‘제공과 이용’ 참여 영향요인 분석결과	99
〈표 7-1〉 공유경제 활성화 자원별 예산계획	204
〈표 7-2〉 공유경제 활성화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205
〈표 7-3〉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별 추진단계 및 예산	20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6
〈그림 2-1〉 공유경제 주요개념과 체계	10
〈그림 2-2〉 공유경제의 거래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	18
〈그림 2-3〉 공유경제 거래방식 대별	19
〈그림 2-4〉 공유와 소유의 경제적 효과 비교	20
〈그림 2-5〉 공유경제의 주요쟁점	23
〈그림 2-6〉 공유경제의 접근방식 대별	23
〈그림 2-7〉 자원보유형 ‘국민도서관 책꽂이’ 사업모델	27
〈그림 2-8〉 자원보유형 ‘키플’ 사업모델	27
〈그림 2-9〉 거래중개형 ‘비앤비히어로’ 사업모델	28
〈그림 2-10〉 거래중개형 ‘마이리얼트립’ 사업모델	28
〈그림 2-11〉 후원형 ‘열린옷장’ 사업모델	28
〈그림 2-12〉 자원·서비스·정책사례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29
〈그림 2-13〉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31
〈그림 2-14〉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의 4섹터로 수렴	38
〈그림 2-15〉 제4섹터 공유경제 판단절차	39
〈그림 3-1〉 정부 24 ‘공공자원 개발·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홈페이지	45
〈그림 3-2〉 정부 24 ‘공공자원 개발·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개별 공유자원 (예시)	46
〈그림 3-3〉 ‘알리오 플러스’ 시설정보 제공 홈페이지	47
〈그림 3-4〉 ‘알리오 플러스’ 개별 시설정보 제공 (예시)	47
〈그림 3-5〉 정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유자원 시·군별 분포	48
〈그림 3-6〉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자체 조사표	49
〈그림 3-7〉 자체조사 기입 참고표	50
〈그림 3-8〉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자체조사 유형별 구분	50
〈그림 3-9〉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지역별 현황	53
〈그림 3-10〉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지역별 분포	53
〈그림 3-11〉 전주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4
〈그림 3-12〉 군산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4
〈그림 3-13〉 익산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4
〈그림 3-14〉 정읍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5
〈그림 3-15〉 남원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5
〈그림 3-16〉 김제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5

〈그림 3-17〉 완주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6
〈그림 3-18〉 진안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6
〈그림 3-19〉 무주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6
〈그림 3-20〉 장수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7
〈그림 3-21〉 임실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7
〈그림 3-22〉 순창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7
〈그림 3-23〉 고창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8
〈그림 3-24〉 부안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58
〈그림 3-25〉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DB	58
〈그림 3-26〉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정보 예시	59
〈그림 4-1〉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진단	68
〈그림 4-2〉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지정도’	71
〈그림 4-3〉 생활상 필요 자원의 ‘보유정도’ 및 ‘이용정도’	74
〈그림 4-4〉 생활자원 유형별 보유수준	75
〈그림 4-5〉 현재 사용하는 자원의 ‘이용정도’ 및 ‘추가 사용의향’	77
〈그림 4-6〉 물건·정보·자원의 ‘제공 의향’ 및 ‘이용 의향’	80
〈그림 4-7〉 공유경제 방식의 물건·정보·자원 ‘제공 의향’ 및 ‘이용 의향’	81
〈그림 4-8〉 물건·정보·자원의 ‘제공 의향’ 관련 집단 비교	81
〈그림 4-9〉 물건·정보·자원의 ‘이용 의향’ 관련 집단 비교	82
〈그림 4-10〉 공유경제 활용가능 자원 영역별 ‘이용 중요도’	83
〈그림 4-11〉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요인	88
〈그림 4-12〉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우려요인	88
〈그림 4-13〉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태도	91
〈그림 4-14〉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	93
〈그림 5-1〉 공유경제 정책의 수준	104
〈그림 5-2〉 공유경제 정책개발 영역 검토	104
〈그림 5-3〉 정책개발의 프레임	105
〈그림 5-4〉 공유경제 정책의 구성요소	106
〈그림 5-5〉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	108
〈그림 5-6〉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종합)	111
〈그림 5-7〉 공유경제 정책의 실행구조	112
〈그림 7-1〉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별 예산계획	204
〈그림 7-2〉 공유경제 활성화 년도별 예산계획	204
〈그림 7-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관리 및 평가체계	206
〈그림 7-4〉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전략체계(안) 종합	208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체계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¹⁾

□ 연구배경

- 최근 주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희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은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소유와 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 특히 공공재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고 낮은 상황에서 그 극복방안으로 공유경제의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인 경제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창업과 일자리 마련은 물론 생활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전통적인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계속 발전시키는 전략임
-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가운데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15)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주체의 활동을 추동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2017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에 적합한 공유경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목적

- 공유경제는 자원의 이용권을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거래하는 특성상 소비와 생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결합하되 그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생활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거래방식으로 제공하는 측(주체)과 사용하는 측(주체)이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형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음
- 이를 위해 제공자와 이용자를 엮어주는 플랫폼 방식의 새로운 혁신기술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
-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는 이용권이 거래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시장과 다른 지역사회 기반 신뢰가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음
- 공유경제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 여건을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실천과제임
- 따라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는 정책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임
- 이 연구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제5조)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범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정책을 어떠한 방향에 입각하여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내용

□ 주요내용

- 이 연구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제5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계획 상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 시책개발, 공유경제 단체·기업의 지정, 자원조달’ 등의 내용마련이 주요한 연구내용임
- 이를 위해 공유경제의 사회적 여건을 진단하고 ‘공유경제 도민의식 조사’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유가능 자원조사’를 수행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0년 ~ 2024년, 5개년)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실행과제, 세부사업, 추진체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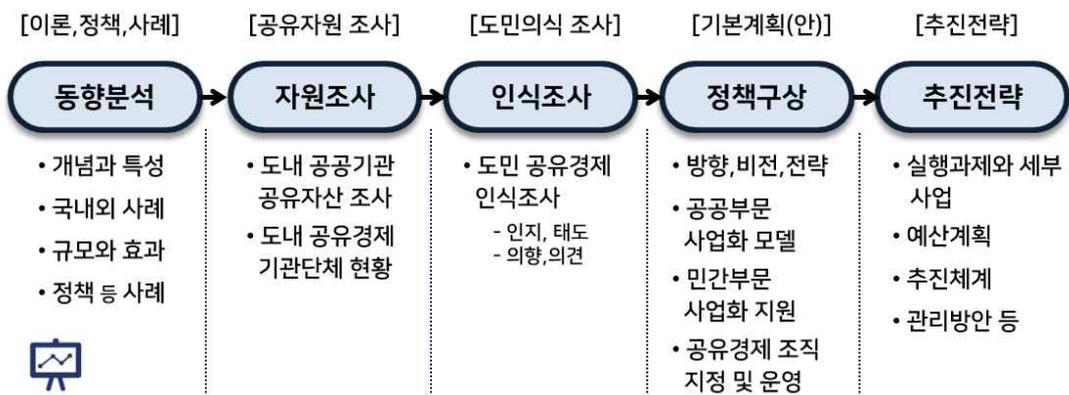
- 시간적·공간적 범위 : 2020년 ~ 2024년(5개년), 전라북도
- 내용적 범위
 - 이론검토를 통해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대표사례와 정책현황 등 분석
 - 공공부문 공유가능 자원조사를 통한 수준을 분석
 - 전북도민의 공유경제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
 -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추진전략, 실행과제, 세부사업, 예산 등
 - 기타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 연구내용

- 이 연구는 크게 ‘①공유경제 이론검토, ②공유가능 자원조사, ③공유경제 의식조사, ④공유경제 정책구상’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공유경제 이론검토를 통해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대표사례와 정책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함
 -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면서, 공유경제의 시대적 배경과 현실적 실천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공유경제의 기대효과와 현실적 쟁점 등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부문의 공유가능 자원을 조사하여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 자원의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내 소재 공공기관의 공유가능 자원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추가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을 직접 조사하여 DB를 통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셋째, 전북도민의 공유경제 인식과 태도조사로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진단해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구상의 근거로 삼고자 함
 - 공유경제에 관한 도민의 인식수준, 소유자원의 공유 태도, 공유자원의 사용 및 제공의향, 공유경제 정책방향 의견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고자 함
 - 전북도민의 공유경제 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넷째, 전라북도 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추진전략, 실행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지역사회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가치와 방향을 정리하여 공유경제 정책구상의 토대로 삼고자 함
 - 공유경제 정책의 비전과 목적, 추진전략, 공공부문 공유경제 사업화 모델, 민간부문 공유활동 사업화 방안 등을 실행과제 수준으로 제안하고자 함
 -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식, 추진체계, 예산계획, 평가 및 관리방안 등도 마련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1. 공유경제, 개념배경
2. 공유경제, 자원방식
3. 공유경제, 유형사례
4. 공유경제, 정책사례

제2장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1. 공유경제, 개념과 배경²⁾

(1) 공유경제의 주요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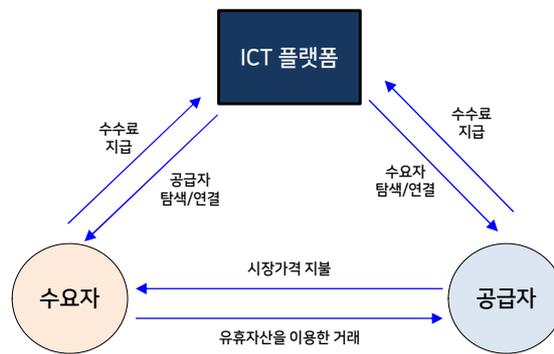
- 공유경제를 파악하고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공유경제에 관한 대표적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공유경제는 비 가격적인 것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으로 하이브리드 경제(Lessig, 2008)
 - 둘째, 공유경제는 생산된 상품의 공유활동이 협업과 커뮤니티 방식으로 살아나는 협력적인 소비(Botsman, 2010)
 - 셋째, 공유경제 범위는 고정보다 변화함을 강조하는데, 사람은 사회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복수영역에 있고 배타적이면서 공존하기 때문(Lessig, 2008)
-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경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조례와 정책자료를 통해 공유경제를 정의해 왔음
 - 서울특별시(2012),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권보다 해당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
 - 부산광역시(2018), 개인이 소유하지만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경험·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 대여 또는 교환하여 거래 참여자가 상호편익·적정이윤 얻는 경제활동 방식
 - 전라북도(2017),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

2)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15)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출하는 경제활동

-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제시함
 -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모델(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희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관계부처 합동, 2019)
 - ‘①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②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희자산’을 ‘③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희자산을 이용한 ‘④시장거래’를 ‘⑤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한국개발연구원, 2015)
- 공유경제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진화해 오고 있는데, 개인, 기업, 정부 등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되어 빌리거나 빌려주는 활동주체로 참여해 오고 있음

〈그림 2-1〉 공유경제 주요개념과 체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2) 공유경제의 주요배경

- 공유경제에 주목하는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배경은 이른바 ‘상업경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첫째,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저성장, 높은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문제의 심화에 따른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시장중재를 수반한 사회의 동반성장 필요성과 관철은 자본주의의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강조하고 있음
- 둘째, 경제위기와 장기적 경기불황이 불러온 생활경제에서 대량생산과 과잉소비가 대표되는 소유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성찰로 기존 소비수준은 유지하면서 비용감소의 대체 욕구의 방안으로 공유경제에 주목하고 있음
- 셋째, 생활경제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 소비자들이 주체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과 활동이 경제적 거래로 확산되어

수동적 구매객체에서 직접 거래주체로 등장하는 시장여건 변화가 배경임

- 넷째, 능동적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업과 활동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인 간 소통과 참여방향으로 이용과 거래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SNS와 ICT 기반의 정보기술 서비스 확산이 개인 활동의 토대가 되고 있음
- 다섯째,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상품소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여섯째, 공유경제 활동의 주체에 대한 주목으로 이른바 G세대(Generosity, 1988년 전후 출생 Green-Global 세대, 인터넷과 함께 자란 세대, 도량이 넓은 세대)가 경제적이며 사회적 활동의 주류로 성장하면서 강조되고 있음

(3)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대

- 인류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사회(community)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역사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노동력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를 유지해온 두레, 품앗이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임
- 최근 주목받고 강조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발달되어온 경제적 관습의 한 형태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사회화되어온 생활방식 중의 형태임
- 공유경제의 현대적 기원은 1940년대 이탈리아 트렌토(Trento) 지역에서 시작된 카톨릭 기반의 공동체 경제 유형인 포콜라레(Focolare) 운동에서 기원하여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 포콜라레 : ‘난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연료가 부족한 빈민 가족과 친구들이 난로 불 주위에 모여 앉아 평화롭고 따뜻한 대화와 음식을 나눠먹는 친밀함을 상징
 - 포콜라레 운동은 이후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어 1959년 브라질에서는 포콜라레 운동을 공유경제 프로젝트 실험에 적용(신용조합 벽돌공장 등 공동체 프로젝트 실험)
 - 이후 1991년 포콜라레 운동의 지도자 끼아라 루빅(Chiara Rubich)이 상파울로 포콜라레 공동체에서 공유경제 운동을 확산
- 2000년대 들어 공유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의 대안적 조류로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음(wikipedia)
- 공유경제 활동의 사상적 자양분은 ‘공유경제 사상, 협력적 소비 사상, 그물

코경제 사상' 등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상은 자원의 공유에 중점(Yochai Benkler, 2002), 자원의 고갈에 중점(Annie Leonard, 2007), 부(wealth)와 사회적 가치 창출 신모델(Rachel Botsman and Roo Rogers, 2010) 등에 착안하고 있음
 -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사상은 소비의 혁신에 중점(Botsman, 2010)을 두거나 가치의 창출에 중점(Botsman, 2011)을 둠
 - 그물코 경제(mesh economy) 사상은 거시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최소화)에 중점(McDonough & Braungart, 2002)
-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활용도 낮은 자산과 자원을 동료 간 시장(peer-to-peer marketplace)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있음
- 이를 통해 신규 직종과 새로운 소득 흐름이 만들어지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공동체 네트워크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재결합시키려는 경제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소유중심의 기존 상업경제와 대별하여 구분하는 형태로 오픈소스, 위키피디아, P2P와 같이 소유를 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현상을 말하는 개념으로 제안되었음(Lawrence Lessig과 Yochai Benker 등의 입장)
- 2010년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개인의 재화를 IT기술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현상을 지칭하는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Rachal Botsman과 Lisa Gansky 등의 입장)

(4) 공유경제의 이론적 자원

- 공유경제에 관한 논의와 현실적인 실천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이론적 자원은 다음과 같이 8개로 대별할 수 있음
-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①공유자원의 협력적 관리'와 현대사회의 '②과잉소비에 대한 성찰적 대응'이 공유경제의 우선 중요한 영역임
 -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③집단지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입각한 '④디지털 공동체'는 공유경제의 확산과 실행에 중요한 작동기저로 주목되고 있음
 - 개인을 신뢰로 잇는 네트워크와 규범으로서 '⑤사회적 자본'과 혁신을 전제로 지속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⑥창조적 공유재'에 대한 논의임

- 공유와 협력을 위한 사회 시스템으로서 ‘⑦협력적 소비’와 개인과 개인의 필요를 연결하고 사업과 활동의 방식으로 구동시키는 체계로서 ‘⑧플랫폼’은 공유경제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영역임

〈표 2-1〉 공유경제 관련 이론적 자원

이론적 자원	주요 내용	대표 연구자
① 공유재와 협력적 관리	공유자원의 협력적 관리 가능성을 강조	Ostrom 등
② 과소비와 위 제너레이션	과잉소비를 넘는 위제너레이션 협력소비	Botsman, R. 등
③ 집단지성과 공유체계	협업과 공유 시스템으로서의 집단지성	Leadbeater, C. 등
④ 디지털 공동체와 네트워크	공유하는 방식과 체계에 관한 네트워크	Leadbeater, C. 등
⑤ 사회적 자본과 공유기반	공유의 조건이자 결과로서 사회적 자본	Putnam 등
⑥ 창조적 공유재와 혁신	공유의 혁신을 통한 창조적 가치 강조	Botsman, R. 등
⑦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개인과 공동체 조화, 협력소비 시스템화	Botsman, R. 등
⑧ 플랫폼과 공유 시스템	공유경제 작동체계로서 플랫폼 이론	Andrei Hagiu 등

자료 : 황영모 외(2015)

① 공유재의 협력적 관리

- 공유지(communs)는 비극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음을 세계의 사례로 실증되었음에 주목함
- 공유자원 협력적 관리는 협력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파악하고 있음(Ostrom)

② 과소비와 위 제너레이션

- 공급과 노동이라는 단선적인 사회접근이 아니라 수요와 소비 측면에서 사회를 파악하는 입장
-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³⁾,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⁴⁾, 미 제너레이션(me generation)⁵⁾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⁶⁾ 논의가 핵심임(Botsman)

③ 집단지성과 공유체계

- 개인과 개별의 한계를 집단지성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여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양식의 공유를 강조함

3)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4) 하나의 물건을 사고 나서 그 물건에 어울릴 만한 물건을 구매해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

5)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신 또는 집단의 이익 외에는 무관심, 자신의 욕구충족을 바라는 젊은 층

6)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사회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

- 집단지성에 필요한 원칙은 혁신의 제공, 창조적 커뮤니티, 관계맺기, 차이를 인정하는 협업, 다양한성과 독립적 창의성 등임(Charles Leadbeater)

④ 디지털 공동체와 공유 네트워크

- SNS의 발전과 활성화로 나타나는 디지털 공동체의 긍정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임
- 물건(상품) 위주의 경제는 무엇을 공유하느냐가 존재를 대변하며, 웹이 창조하는 아이디어 위주의 경제에서는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중요함(Lessig)

⑤ 사회적 자본과 공유기반

- 공유경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중요함
- 비슷한 구성원을 연결하는 접착적(bonding) 사회적 자본보다 이질적인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계적(bridging)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때 사회적 효과와 거래비용에 유리함(Putnam)

⑥ 창조적 공유재와 혁신

- 공유재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통제를 배격하고 혁신의 창조를 강조함(Lessig)
- 경제적 이윤에 치중하는 자기혜택 동기(얇은 공유경제)의 지원이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상대혜택 동기(두터운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것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음

⑦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 과소비 구조(me generation)를 협력적인 소비(we generation)로 변화를 설명하는 소비양식임(Botsman)
-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일시적인 반대작용 아니라, 협력적인 소비 방식으로 성장세 보이는 새로운 동향으로 주목됨

⑧ 플랫폼과 공유 시스템

- 공유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시스템으로 여러 그룹을 장(場)으로 모아,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과 집객을 하는 기제로 주목됨
- 이용자와 제공자의 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검색과 광고 등의 비용을 줄이는 네트워크로 효과를 창출하는 영역(강철구 외, 2017)

7) 유형은 싱글사이드(single side), 투사이드(two side), 멀티사이드(multi side), 중개자형(match makers), 관중 동원자형(audience builder), 비용절감자형(cost minimizers) 등임

2. 공유경제, 자원과 방식⁸⁾

(1) 공유경제의 이용자원

- 공유경제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원은 ‘재화, 서비스, 지식, 경험’ 등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형태의 자원이 이용되고 있음
- 공유경제의 자원을 ‘①이용자원, ②서비스 유형’에 따라 대별할 수 있지만, 유형화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현실화에 필요한 분석적 방법에 지나지 않음
- 첫째, 공유경제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자원의 종류를 ‘유형적 비 소모자산, 유형적 소모자산, 무형적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2〉 공유경제의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 구분

구 분	유형 자원		무형 자원
	비소모 자원	소모 자원	
형 태	소모가 안 되는 자원	소모되는 자원	정보 및 서비스
특 징	상시적인 이용 목적	이용으로 가치창출	관계통한 가치창출
사 례	공간, 교통, 물품 등	소셜 다이닝 등	지식, 경험, 시간 등

자료 : 권애라(2013)

- ‘유형적 비 소모자산’은 일반적인 재화나 부동산 등과 같이 이용을 통해 소모되지 않는 자원으로 대부분의 공유경제 자원이 여기에 해당함
 - 숙박, 자동차, 공구, 책 등을 소유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이용과 활용이 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 등임
- ‘유형적 소모자산’은 식료품과 같이 거래를 통해서 상품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소비와 유사하지만, 가치의 공유를 위한 소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소셜 다이닝(식사문화 공유)은 식료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식소비와 다른 성격을 가짐
- ‘무형적 자산’은 경험, 시간, 지식, 노동력 등 물리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추상적인 자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연결되는 수단이 마련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임
 - 다양한 경험, 지혜, 지식, 시간, 노동력 등의 자원은 해당 분야의 특정 공유 플랫폼이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용의 폭이 넓어지는 등 발전

8)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15)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둘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공유경제 자원을 ‘상품 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3〉 공유경제 제공 서비스에 따른 유형 구분

구분	상품 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
거래방식	사용자가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적 이용
공유자원	자동차, 자전거, 장난감, 도서 등	경매시장, 물물교환 시장 등	공간, 구인, 경험, 지식 등

자료 : 김점산 외(2014); 황영모 외(2016)에서 재인용

- ‘상품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로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렌트사업과 유사하며, 자동차 쉐어링, 자전거 쉐어링, 태양 에너지 공급,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등이 구체적 형태임
-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는 상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며, 경매시장, 물물교환 시장, 무료·상품권 교환 등이 있음
- ‘협력적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 사용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자원 전체를 포괄하여 이용되는 형태로 공간공유, 구인구직, 여행경험, 지식공유, 크라우드펀딩 등이 주요 사례임

(2) 공유경제의 작동요소

-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등의 상품과 자원을 소유하기보다 대여 또는 교환하여 서로간의 편익과 이익을 얻는 경제적이며 사회적 생활방식임
- 공유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업경제와 달리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하면서 웹과 모바일 등의 혁신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Botsman, R., 2013)
- Botsman이 규정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특징은 ‘사회적이고(social), 지역적이며(local), 모바일(mobile)에 기반하는 생활경제 양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공유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둔 상업경제와 달리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있는데, 이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⁹⁾

9) 이 내용은 Botsman & Rogers(2010)의 내용으로 김형균 외(2013)에서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표 2-4〉 공유경제 작동의 필수요소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적절한 규모 critical mass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② 여분의 자산 idling capacity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개인 소유의 유휴 자산
③ 공유재 믿음 belief in the commons	여럿이 공유하면 사용의 가치가 커진다는 공유재의 믿음
④ 당사자 신뢰 trust between stranger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

자료 : Botsman & Rogers(2010)과 김형균 외(2013)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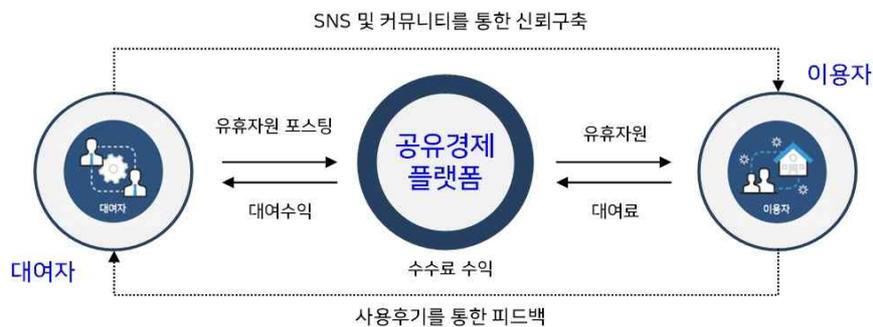
- 첫째, 공유경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의 소비만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가 ‘적정한 규모(critical mass)’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목적과 사용하려는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잘 선택하였다고 평가하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갖춰지는 일정 규모가 되어야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¹⁰⁾
- 둘째, 공유경제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대여자와 이용자 간에 거래가 되는 것은 ‘여분의 자산과 재능(idling capacity)’을 활용한다는 점임
 - 공유경제의 자원은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공유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소유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경기불황과 생활경제의 어려움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원 활용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셋째, ‘공유재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commons)’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개별 이용자가 공유재를 독점하여 이용할 때 나타나는 공유지 비극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전화기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전화기의 사용가치는 없지만, 전화기를 소유한 사람이 많아지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증가할수록 소유와 이용의 가치가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임
- 넷째,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trust between stranger)’가 형성되어야 공유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는 대여와 이용이 이뤄지는 작동체계에서의 평판 시스템으로 확인이 됨
 - 상업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 매개자(유통자본 등)가 연결되어 양측을 차단(blocking)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대여자와 이용자가 직접 거래의 신뢰 환경과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함

10) 다만 공유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규모는 상대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3) 공유경제의 거래방식

-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거래방식은 상품 및 서비스를 대여하고 이용하는 주체를 양 축으로 하고 이를 연결하는 주체이자 체계로 플랫폼을 상정하고 있음
- 상품 및 서비스를 소유하면서 공유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대여자는 관련 공유경제 플랫폼 혹은 제공주체에 자원을 포스팅하고 이용되면 공급주체(플랫폼 등)를 통해 대여 수익을 수령하는 구조임
- 특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공유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관련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유희자원을 이용하고 소정의 이용료를 공급자에게 납부하게 됨
- 유형과 무형 등의 공유경제 이용자원은 판매(sell), 재판매(resell), 유료대여(rent), 무료대여(lend), 공동소유(co-Own), 공동운영(co-Op), 물물교환(swap), 기부(donation) 등으로 거래되고 있음(J.Owyang, 2013)

〈그림 2-2〉 공유경제의 거래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 공유경제부산(www.sharebusan.kr)에서 수정

- 이러한 공유경제의 거래방식을 대여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형식을 통해 4개 유형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개인 대 개인의 거래방식’으로 유희 상품에 대한 P2P 중개 플랫폼으로 거래가 되는 형식
 - ‘②쌍방간 사용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희 상품 및 중고품, 재능 및 서비스를 커뮤니티 안에서 교환하는 형식
 - ‘③소유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중고품을 거래하는 장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형식
 - ‘④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자가 사용될 상품을 제공하지만 이용자는 이용 권리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획득하는 형식
- 공유경제 거래방식에서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가

능하게 하는 기반기술이나 틀(framework)로 일정한 양식을 매개로 참여자들
 을 연결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임(최창욱, 2013)

- 플랫폼은 비용의 감소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경제적·사회적인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져 이른바 프로슈머가
 생산과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2-3〉 공유경제 거래방식 대별

개인대 개인간 거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상품에 대한 P2P 중개 플랫폼 •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물물교환, 무료대여, 기부, 유료회원가입 등
쌍방간 사용권 교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물품, 중고물품, 재능/서비스 등 커뮤니티 안에서 교환 • 유료 대여, 유료 회원가입, 공동소유, 공동운영, 무료대여 등
소유권 교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물품 거래장터 플랫폼 •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공동소유, 공동운영, 기부 등
사용권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터카 사업자와 유사 • 유료회원가입 등

* 공급자 : 자산이나 재능을 임대하거나 판매

* 사용자 : 이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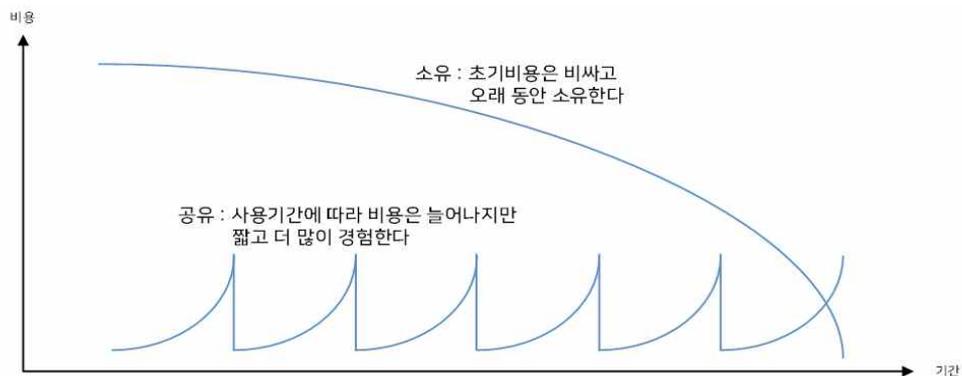
자료 : 김형균 외(2013)

3. 공유경제, 특징과 쟁점¹¹⁾

(1) 공유경제의 특징

- 공유경제의 특징은 공유경제가 요청되는 시대적인 배경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전통적 방식의 소유경제와 공유경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특징을 규정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소유경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유를 기반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사용자의 사용가치 극대화과 공급자의 이윤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왔음
 - 소유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주체 간의 경쟁을 전제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는 데, 거래구조는 B2C(Business to Consumer) 구조로 중개자와 공급자는 전문기업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단절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음
 - 반면 공유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용권 이전’을 목적으로 공급자와 이용자 등의 모든 주체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적절한 가격을 통해 이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공유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구조는 P2P(peer-to-peer) 방식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계되고 이들을 방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시장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임
- 공유경제 구조에서 ‘대여자’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원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용자’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수준의 사용이 가능한 윈-윈(win-win) 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그림 2-4〉 공유와 소유의 경제적 효과 비교



11) 이 내용은 황영모 외(2015)에서 재인용함

- 이 가운데 대여자와 이용자 간 거래를 촉진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작동하게 하는 공급주체(일반적으로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성격을 가짐

〈표 2-5〉 공유경제와 소유경제의 특징 비교

구 분	공 유 경 제	소 유 경 제
형 태	이 용	소 유
목 표	가치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목 적	재화·용역의 이용권 이전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
거래체계	플랫폼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거래관계	주체 간 신뢰	주체 간 경쟁
거래구조	P2P를 기본	B2C
거래주체	공급자와 소비자 연계	공급자와 소비자 분리
중 개 자	중개자≠공급자, 플랫폼	중개자=공급자, 전문기업
소비방식	협력적 소비	개별적 소비
신뢰확보	인터넷 평가·평판	과거 거래경험·평판
비 용	저 가	고 가
자원사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자원의 일방적 사용
기 간	단기, 사용횟수 많음	장기, 사용횟수 적음

자료 : 김형균 외(2013)와 한국디자인진흥원(2014)를 토대로 수정 작성

-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둘러싼 거래관계로 공유경제를 파악하기 쉬운 경향이 있어 ‘렌탈 서비스’와 비교하여 그 성격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¹²⁾
- 상품과 서비스를 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기존 소유경제에서의 렌탈 서비스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거래주체’만을 놓고 볼 때 렌탈 서비스는 빌려 쓸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과 상품을 대여하려는 개인 간의 거래이지만, 공유경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용되고 거래되는 ‘상품가치’를 놓고 보면 공유경제는 자원의 잔존가치까지 이용과 거래가 가능한 반면, 렌탈 서비스는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상품의 자원수명이 종료되는 특징이 있음
 - 상품의 ‘이용기간’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시간 및 일(日) 등 짧은 기간인 반면, 렌탈 서비스는 1일~수년간의 장기간이라는 차이가 있음

12) 이 내용은 김형균 외(2013)과 권애라(2013); 황영모 외(2015)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2-6〉 공유경제와 렌탈 서비스의 비교

구 분	공유경제	렌탈 서비스
거래주체	개인과 개인 간 거래	렌탈기업과 개인 간 거래
상품가치	자원 잔존가치까지 거래 지속 가능	대여기간 종료 후 자원수명 소멸
이용기간	시간~일 단위	1일~수년간 장기간
유희시간	자원 유희시간 최소화	미 이용 유희시간 많음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에서 작성, 황영모(2015)에서 재인용

(2) 공유경제의 쟁점

- 최근 공유경제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과 사업을 둘러싸고 공유경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쟁점이 ‘참여자, 대상자산, 플랫폼’ 등으로 나누어 형성되고 있음
 - 공유경제 활동과 사업에 관계하는 ‘참여자’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 개인과 정부, 법인과 정부의 거래까지 참여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 공유경제 활동과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넓어지고 있는데, 물질적 자산에서 시작되었던 사업과 활동이 시간, 공간, 기능, 화폐, 용역자산 등 비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
 - 공유경제 활동을 작동시키는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재정, 이용자 신뢰, 기술, 정보통신 기술(ICT)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공유경제 실현을 도와주는 플랫폼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현실에 있어 공유경제와 관련한 현상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대별하여 요약할 수 있음
 - 공유경제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 키우려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대 경쟁이 치열해 지고 기업인수도 일반화되고 있음(카셰어링 Zipcar를 렌터카 Avis가 인수)
 - 거래 주체 간 신뢰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Botsman이 강조한 공유경제 화폐는 신뢰와 같은 평판자본(reputaion capital)이 중요해짐
 - 산업분야 가치사슬이 복잡해지자 기존 업체가 공유경제를 기업경영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임
 - 공유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자 기존의 사업자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주체들의 반발과 갈등이 현실화되고 기존 제도적 규정과

장치로는 해결이 어려움

○ 공유경제의 현실적 현상에 대한 논의와 이견은 공유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가가 쟁점임

- ‘공유경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경제의 참여자, 대상자원, 경제활동 메커니즘을 어느 범위까지 간주하는가에 따라 쟁점이 형성됨

- ‘공유경제 활동원리의 중점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경제의 사업과 활동을 포착할 때 ‘공유, 경제, 공동체, 혁신’ 등 어떠한 원리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의 전개양상이 달라지고 여기에 쟁점이 형성됨

- ‘공유경제의 사업과 활동의 목표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경제의 사업과 활동의 목표를 ‘경제적 수익, 사회적 가치, 자원활용’ 등 어느 내용으로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쟁점이 형성됨

- 최근에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 현행의 규제 체계의 정비, 조세 관련 문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 형성 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공유경제의 가치에 기반하되, 현실에서의 공유경제 활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포괄하는 절충적 접근이 현실적임

- 공리주의적 접근 : 경제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가치와 효용이 창출되는 측면에 주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공유경제 인식, 정책적 측면에서의 유도과 개방적 태도 유지

〈그림 2-5〉 공유경제의 주요쟁점



〈그림 2-6〉 공유경제의 접근방식 대별



- 가치지향적 접근 : 공유경제 활성화로 비정규직 직종확대, 대형 기업체가 플랫폼을 수익모델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동위축 등 정책적 측면에 부작용을 억제하려는 제한적 육성 태도를 유지
- 절충현실적 접근 :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 최대화하려는 접근방법으로서 정책적으로 점진적 육성 태도를 유지

4. 공유경제, 유형과 사례¹³⁾

(1) 작동체계에 따른 유형

- 공유경제 작동체계를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유형화할 수 있는데, ‘①상품 서비스 시스템, ②재분배 시장, ③협력적 생활방식’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¹⁴⁾
- 첫째, ‘상품-서비스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으로서의 유형
 - 공유경제의 상품-서비스 시스템은 상품의 소비보다 상품의 이용을 통해 가치와 실리적 이익에 집중하는 사용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소유에서 이용’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
 - 잘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나 시설을 판매하기보다 필요할 때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전환하여 상품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형태임
 - 구체적으로 상품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경우 소요되거나 부담해야 하는 유지비, 보수비, 보험비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 형태로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상품을 다른 주체와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임
 - 사례로 자동차 공유, 자전거 공유, 장난감 공유, 의류공유 등을 들 수 있음
- 둘째, ‘재분배 시장(redistribution market)’으로서의 유형
 - 버려지거나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해서 이용가치를 새롭게 하는 시장을 만드는 형태임
 - 이용되지 않는 재화나 중고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되는 형태로 자원의 유효적인 이용과 활용, 환경문제의 최소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이 유형에 내포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되지 않는 모든 상품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구매하거나, 등가 또는 부등가로 물물 교환하는 모든 거래활동이 여기에 해당함
 - 사례로 인터넷을 활용한 중고물품 거래, 이용하지 않는 물품을 맞교환하는 시장, 재활용 물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등이 있음
- 셋째, ‘협력적 생활방식(collaborative lifestyle)’으로서의 유형

13) 공유경제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연구자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공유경제의 ‘작동체계, 자원 및 서비스,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이성규(2014)는 공유자원의 성격(재화, 지식정보), 영리성 여부(영리, 비영리), 개설주체(개인, 단체 및 기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14) 이 내용은 Botsman(2011)의 내용으로 김형균 외(201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공동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물건, 공간 등의 유형자산과 기술, 시간, 경험 등의 무형자산을 공유하게 되는 유형으로, 유사한 생활방식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이 되어 새로운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게 됨
 - 개인이나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이를 서로 거래하는 형태로 공간, 물품 등 유형적 자원과 재능, 시간 등 무형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 사례로 협업공간(coworking space), 여행경험(travel experience), 기술 공유(skill sharing), 크라우드펀딩과 공유금융(crowd funding and sharing financing)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유형은 ‘얼굴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역’ 단위에서 먼저 이뤄지게 되는데, 사무실 공유, 물물 교환, 기술 교환, 음식 나눔, 주차장 공유, 여행 공유 등이 그 사례이며, 지역적 사례가 온라인의 혁신기술을 매개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표 2-7〉 작동체계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구분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상품 서비스 시스템 products service system	상품 이용을 통한 가치와 실리적 이익에 집중하는 사용중심의 사고방식
② 재분배 시장 redistribution market	필요하지 않은 사람(장소)에서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되는 유효적 이용과 활용
③ 협력적 생활방식 collaborative lifestyle	공동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간의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 연결망

자료 : Botsman & Rogers(2010)과 김형균 외(2013)를 토대로 작성; 황영모 외(2015)에서 재인용

(2) 거래형태에 따른 유형

-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활동사례는 서구에서 보편적 사례로 소개되는 카셰어링, 숙박공유, 여행공유에서부터 공간, 경험, 재능, 시간 등 무형자원으로까지 그 사례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음(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 국내의 공유경제 사업 및 활동주체는 기존의 소유 중심 상업경제에서 거래되는 사업모델을 일부 대체해 나가기도 하면서, 거래되지 않았던 다양한 자원의 거래관계를 일정한 시장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는 특징이 있음¹⁵⁾
-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활동사례는 참여자 모두에게 이용거래의 이윤을 배분하는 이윤형 구조이며, 아직까지 후원을 통해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는 매우 적음

15) 새로운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사례로는 소셜다이닝으로 식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집밥’, 경험과 지혜를 거래하고 나누는 ‘위즈돔’, 여행경험을 거래하고 공유하는 ‘마이리얼트립’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윤형 공유경제 활동사례는 유희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여자로부터 직접 자원을 매입하거나 수탁을 받아 보관하며, 이용자에게 자원을 대여해 주는 ‘자원 보유형’과, 자원을 보관하지 않고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만 해주는 ‘거래 중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8〉 거래자원 형태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구분

구 분		주 요 내 용
이윤형	자원 보유형	상품자원을 사업주체가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자원 제공
	거래 중개형	상품자원을 사업주체가 보유하지 않고 대여자와 이용자 간 거래 지원
후원형		상품자원의 후원으로 대여자의 이윤발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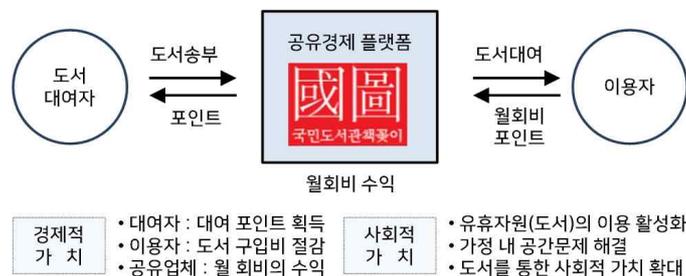
자료 : 크라우드연구소(2013)에서 작성

- 첫째, ‘자원 보유형’ 공유경제 유형에서 사업주체는 공유자원을 직접 관리하고 배송 및 수령에 참여하고 있음
 - 자원 보유형 공유경제 사업주체는 공유되는 상품자원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가 직접 지게 되는데, 상품 이용자가 불만족하게 될 경우의 리스크, 상품자원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의 비용부담 등이 그것임
 - 이러한 자원 보유형 공유경제 활동의 대표사례로 ‘책꽃이, 키플(Kiple), 코업(CO-UP)’ 등을 들 수 있음
- 둘째, ‘거래 중개형’ 공유경제 유형에서 사업주체는 공유자원을 대여자와 이용자 간 중개만을 통해 거래를 하는 역할을 함

〈그림 2-8〉 자원보유형 ‘키플’ 사업모델



〈그림 2-7〉 자원보유형 ‘국민도서관 책꽃이’ 사업모델



- 거래 중개형 공유경제 사업주체는 공유자원의 이동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낮고, 자원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
- 이러한 거래 중개형 공유경제 활동의 대표사례로 ‘위즈돔(Wisdome), 마이리얼트립(MyREALTRIP), 비앤비히어로(BnBHero)’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림 2-9〉 거래중개형 ‘비앤비히어로’ 사업모델



〈그림 2-10〉 거래중개형 ‘마이리얼트립’ 사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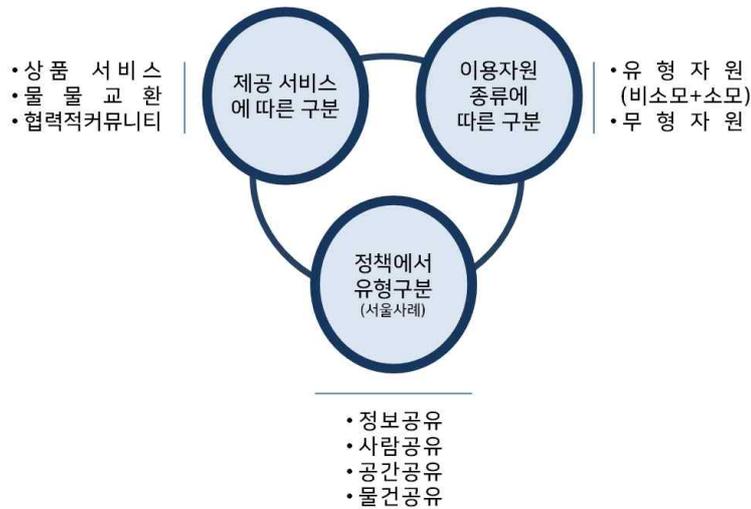
- 셋째, 후원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공유해주는 ‘후원형’ 유형은 이윤형 유형과 다른 특성을 가짐
- 후원형 공유경제 사업유형은 유휴자원을 후원형태로 제공받아 자원공유 및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원 소유자에게 이윤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임
- 이러한 후원형 공유경제 활동의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며, 대표사례로는 ‘열린옷장’ 등을 들 수 있음

자료 : 황영모 외(2016)에서 인용함

〈그림 2-11〉 후원형 ‘열린옷장’ 사업모델



〈그림 2-12〉 자원·서비스·정책사례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3) 우리나라 대표 공유경제 사례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는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하여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차량분야¹⁶⁾
 - 쏘카(SOCAR) : IT 플랫폼,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10분 단위) 제공(회원 435만명), 일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자신이 보유한 차량 활용
- 자전거
 - 누비자(창원시) : 공공 자전거 공유 서비스
 - 따릉이(서울시) : 버스 정류장, 주택단지, 관공서, 학교 등 통행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여 접근성 증대
- 숙박
 - 코자자(KOZAZA) : 한국의 에어비앤비로 에어비앤비와 차별화하기 위해 한옥 스테이, 럭셔리 홈스테이 서비스 도입
- 주거
 - 우주(Woozoo)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세어하우스로 주택 구입과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제공

16) 현재 기존 사업자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과 같은 P2P 승차 공유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서울에 96호점 개점)

○ 사무공간

- 위워크(Wework) : 글로벌 오피스 공유기업(세계 300여 지점 운영)으로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기기나 라운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주차장

- 모두의 주차장 : 주차장 공유 서비스로 완전한 주차장 공유 서비스가 아니며, 민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공유 주차장 정보를 모두 제공함

○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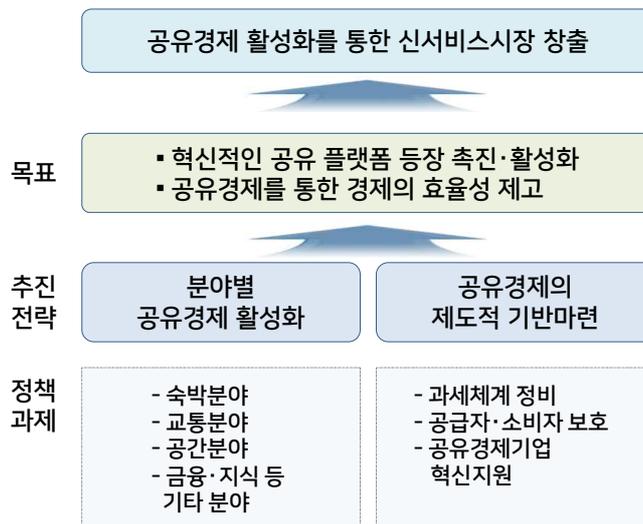
- 열린옷장 : 입지 않은 옷을 공유하는 비영리 공유 기업으로 2011년 기증 받은 정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서비스로 출발하여 2016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전함
- 쏘시오(SSOCIO) : 다양한 상품의 공유 서비스로 유아 관련 아이템이 많은 것이 특징임

5. 공유경제, 정책사례

(1)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¹⁷⁾

-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13〉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 숙박분야 :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년간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용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분야 :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 활성화
 - 카셰어링 배차와 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17) 이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II”에서 정리하였음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분야 :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중

○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 창업 7년내 중소기업→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억원→15억원)
-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과세체계 정비 :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

-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2)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

□ 서울특별시

-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 12월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였음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공유를 촉진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으로 삼음
 - 2013년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험해 오고 있음
- 서울시 공유사업은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시행 중
 - 1기(2013~2014년) : 공유도시 기반 조성에 중점(조례 등), 서울시가 자치구가 주체가 된 공유사업 확산을 유도
 - 2기(2015년 이후) : 경제, 교통, 주거,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기업을 육성
 -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 서울시는 부서와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사업 : 따릉이(공공 자전거), 한지붕 세대공감(어르신·청년 주거 나눔), 휴먼라이브러리(사람책 도서관), 공공시설 개방, 공유센터·공유마을 조성 등
 - 공간·물건 등 공유대상 중심에서 공유마을, 아파트 등 공동체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
-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을 지정·육성하고 공유기업 창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음
 - 공유경제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행사비, 홍보비 등 지원하고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 위탁교육 및 공유경제 시민학교 운영하고 있음
 -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청년인턴 인건비 등도 지원하

고 있음

- 공유서울 브랜드 확산 및 공유도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 우수 공유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유도시 협의체」 운영 중
 - 국내 「공유제도개선 기획단」, 세계동향 파악을 위한 국제자문단을 운영
 - 조선비즈 「스마트 클라우드 쇼」와 연계한 공유서울 포럼 등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 개최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 2013년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를 ‘공유문화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음
 -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내 광주공유센터 운영
 - 광주공유센터가 위치한 남구 외에 동구, 서구, 북구에 물품공유센터를 설치 확대할 계획
- 초기 아동용품 공유에서 시작해 저명인사 강연 등의 재능공유와 공용차량 공유 등 공공기관의 역할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유모차, 장난감, 아동책 등을 대여해 주는 ‘빛고을 키즈 공유센터’ 운영
 -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동영상 강연을 공유하는 ‘아리바다’ 구축
 - 공공기관 시설·회의실 개방, 공휴일에 관용차량(22대)을 취약계층에 제공

□ 부산광역시

- 2014년 3월 조례 제정, 부산경제진흥원과 연계 공유기업 창업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을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유기업 발굴 및 교육, 각 대학과 연계한 공유기업 창업 지원에 중점
- 공유기업 육성, 구·군 지원사업 및 셰어하우스 등 사업 추진
 -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화, 공유기업 컨설팅 등 지원
 - 구·군 공유경제 촉진 공모 및 공유경제 포럼 개최
 - GS건설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청년 우리집」 셰어하우스 운영
 - 대학 인근 주택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등을 지원하여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제공('18년 1~3호, '19년 4~7호 조성)

□ 경기도

- 2014년 8월 조례 제정, 공유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특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유기업 공모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를 지원
- 산업단지 내 차량, 장비, 물류, 마케팅 등의 공유 활성화를 지원
- 2016년 CJ대한통운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포복합물류센터에 공공물류유통 센터를 개소하여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2016년부터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조례 제정, 행복 카셰어를 운영 중
- 공휴일이나 명절 등에 공용차량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대여
 - 차량 이용료와 보험가입비는 무료, 유류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

〈표 2-9〉 서울특별시 대표 공유경제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부서
물품	나눔카	차량 공유업체 쏘카, 그린카를 이용하도록 서울시 모바일 공유지도에 차량위치 표시	교통정책과
	따릉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휴대폰으로 대여 및 반납 ('19년 운영예산 : 325억원)	자전거정책과
	공유서가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공유서가에 보관·공유	사회혁신담당관
	공구도서관	가끔 사용하는 생활 공구 대여	사회혁신담당관 공동주택과
	아이옷·장난감 공유	이용주기가 짧은 아동 의류와 장난감 공유	사회혁신담당관 보육담당관
공간	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등)	주택가 근처의 건물, 학교의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계획과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공청사 회의실, 강당 등을 시민에게 개방	자치행정과
	한지붕 세대공감	대학 인근 노인 거주 주택의 유휴공간을 수선하여 대학생 등에 저렴하게 제공	주택정책과
	도시민박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공간 제공 (공유기업 에어비앤비, 코자자 활용)	사회혁신담당관
재능·정보	휴먼 라이브러리	책 대신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대여(만나게) 해 주는 사람책 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 e-품앗이	공동체 화폐를 매개로 서비스·물품을 품앗이 거래하는 공동체 사업	서울시복지재단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및 IT산업 육성	빅데이터담당관
	서울 사진은행	시 보유의 사진자료를 한 장소에 모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도 보유한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진공유 플랫폼	뉴미디어담당관

6. 공유경제, 기대와 전망

(1) 공유경제의 기대효과¹⁸⁾

- 공유경제를 통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부정적인 우려요인이 함께 상존하는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패턴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혁신과 성장을 가져올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음
- 기존에 상업경제에서는 거래되지 않던 유휴·미활용 자원을 거래할 수 있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생겨 관련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은 공유경제와 관련한 직접 일자리 85만개, 간접 일자리 1천만개 창출된 것으로 보고됨(중국 공유경제발전보고서, 2017)

〈표 2-10〉 상위 10개 유니콘 기업 중 공유경제 기업

순위	기업	분야	기업가치
1	우버	교통	720억달러
2	디디추싱	교통	560억달러
3	에어비앤비	숙박	293억달러
6	위워크	공간	200억달러

자료 : CB Insights('18)

- 공유경제는 유휴·미활용 자원의 이용권을 거래하므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공유경제 소비자 77.8%는 지속적 참여를 희망(산업연구원, 2016)
- 공유경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생겨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소득 변동성으로 인해 월 소득이 평소보다 적거나 이직 과정 중에 있을 때에 플랫폼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JP Morgan, 2016)

18) 이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9)에서 정리하였음

(2) 공유경제의 주요이슈¹⁹⁾

□ 이용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의 확보

- 공유경제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이슈는 ‘이용자의 안전성, 거래 안전성’과 관련한 분야가 지적되고 있음
- 비대면 거래의 특성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정책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함
- 공유자원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일정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규제 체계의 정비

-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기술의 혁신을 직접 비즈니스에 적용하면서 기존의 법제도와 새로운 혁신적 경제활동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법 제도의 변화가 기술의 혁신 속도와 이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속도가 미스매치(mismatch)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임
- 공급자-플랫폼-이용자라는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경제활동 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생겨나고 있음
- 기술의 혁신과정에서 기술의 혁신에 동반하는 규제적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에 대해 제도와 규정의 혁신도 속도를 맞추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노동시장의 형성

-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희자원을 거래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음
- 실제로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 등의 고용형태가 늘어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소득과 후생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Rovert Reich,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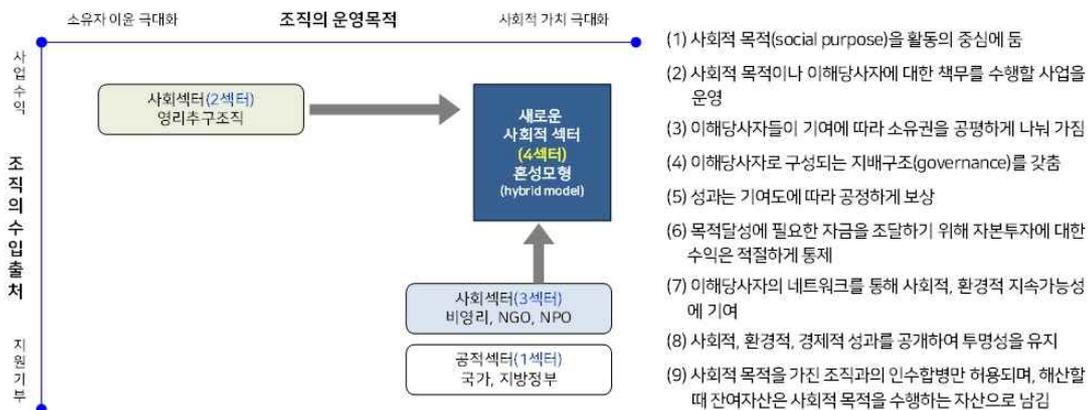
19) 이 내용은 박건철 외(2016)에서 정리하였음

- 노동계약과 노동시간이 유동적이며 고용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 보호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이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공급자-소비자는 일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므로 기존 사업자에 비해 세금신고 등의 조세에 대한 쟁점도 높아지고 있음

(3) 공유경제의 4섹터화²⁰⁾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경제 모델과 비즈니스가 상업적 이윤 추구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공유경제의 제4섹터화가 주장되고 있음
- 4섹터는 사업과 수익을 얻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영역(Fourth sector network, 2009)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으로 사적 영리만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제2섹터(민간)와 기부·지원에 의존하여 사회적 목적 수행하는 비영리 시민영역(제3섹터)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
- ICT 기반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와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독점화 경향을 보이므로 제4섹터 공유경제는 제2섹터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됨
-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도 제2섹터 공유경제로 전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듈화된

〈그림 2-14〉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의 4섹터로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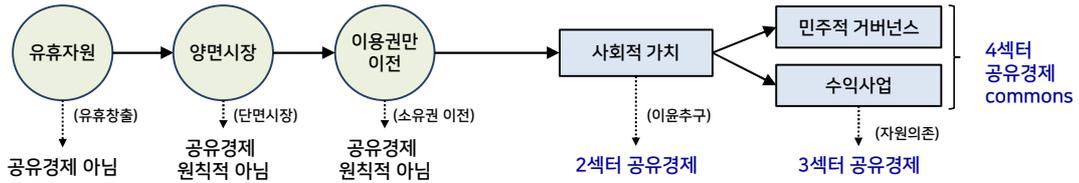
자료 : Fourth sector network(2009); 이재민(2019)에서 재인용

20) 이 내용은 이재민(2019)에서 정리하였음

ICT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4섹터 공유경제의 핵심은 ICT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기반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플랫폼은 정보와 공유재가 교환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림 2-15〉 제4섹터 공유경제 판단절차



자료 : 이재민(2019)

제3장

전라북도 공유가능 자원조사

1. 공유가능 자원조사 개요
2. 정부 공유자원 DB 조사
3. 전북 공유자원 자체조사
4. 전북 공유자원 통합 DB
5. 자원조사 시사점과 과제

제3장

전라북도 공유가능 자원조사

1. 공유가능 자원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공유가능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파악
- 공공기관의 공유가능 자원을 DB로 확보하여 향후 구축·운영할 예정인 '전라북도 공유경제 플랫폼'의 탑재자료로 활용

○ 조사구분

- 기 구축 자료 조사 : 중앙정부 주도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 구축된 공유자원 현황 파악 및 관련 자료 재정리
- 신규 공유자원 조사 : 도내 공공부문 신규 공유자원 조사를 위해 전라북도 지방 공기업 및 지방 출연·출자기관, 시군-읍면 단위 우체국, 농축협, 수협 등 기관 전수조사

○ 조사기간

- 1차 조사('19.10.16.~10.31), 2차 조사('19.11.1.~12.4)

○ 조사내용

- 기관 일반현황 : 기관명, 기관유형, 기관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 공유가능 자원유형 : 건물공간, 실외공간, 주차장, 숙박시설, 체육시설
- 공유자원 이용정보 : 세부유형, 시설위치, 시설규모, 이용시간, 이용요금, 신청·접수방법, 부대시설, 시설사진 등

○ 조사대상

- 공공행정기관 : 기초 행정관서, 지방 행정관서, 중앙 행정관서 등

- 공공기관 : 지방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표 3-1〉 전북도내 공공부문 공유자산 조사대상 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소수	출처	
공공 행정 기관	기초 행정관서	-	671	전북도 사회적경제과	
	지방 행정관서	-	107	전북도 사회적경제과	
	중앙 행정관서	-	120	전북도 사회적경제과	
	소 계		898		
공공 기관	지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9		
		지방출연기관	46	행정안전부	
		지방출자기관	8	행정안전부	
	소 계		73		
	중앙 공공기관		공기업(시 장 형)	25	알리오플러스
			공기업(준시장형)	28	알리오플러스
			기타 공공기관	42	알리오플러스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25	알리오플러스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68	알리오플러스
	소 계		188		
합 계			1,159		

2. 정부 공유자원 DB 조사

- 정부의 공공기관 공유자원은 크게 ‘①행정안전부(정부 24)와 ②기획재정부(알리오 플러스)’가 제공하는 자원공유 및 공개 서비스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 첫째, 행정안전부는 ‘정부 24’ 내에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설 및 공공기관의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²¹⁾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
- '18년 8월~'20년 1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예정, 시범사업 기간에 정부24에서 필요한 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신청시, 담당자 승인 후 이용 가능
- 향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 2월부터 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
- <https://www.gov.kr/portal/service/publicResrceOpn>

〈그림 3-1〉 정부 24 ‘공공자원 개발·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홈페이지

총 1,112건의 공공자원이 있습니다. 10 건 ▾

지역	위치	자원유형	수용인원(주차대수)	운영시간	사용료	연락처
전라북도 완주군	가죽문화교육원 본관 6층(강의실17개)	강의실	45	평 09:00~18:00	1시간 10,000원	063-290-2214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사무소 본관2층	회의실	100명	평 09:00~18:00	무료	063-539-7481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사무소 본관앞	주차장	20대	평 종일개방 토 종일개방 휴 종일개방	무료	063-539-7481
전라북도 정읍시	감골문화센터 본관1층	회의실	20명	평 09:00~18:00	무료	063-539-7481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복지관 본관2층	체육시설	30명	평 09:00~18:00 토 09:00~18:00 휴 09:00~18:00	무료	063-640-4324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사무소 본관2층	회의실	60명	평 09:00~18:00	무료	063-640-4324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전천후개이트볼장 본관	체육시설	50명	평 09:00~18:00 토 09:00~18:00 휴 09:00~18:00	무료	063-640-4324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물물관 1층	강당	20명	평 09:00~18:00	무료	063-640-432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사무소 주민센터앞	주차장	19대	평 종일개방 토 종일개방 휴 종일개방	무료	063-454-761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사무소 본관2층	회의실	100명	평 09:00~18:00	무료	063-454-7194

21) 자료 출처: <https://www.gov.kr/portal/service/publicResrceOpn>(자료검색일 2019.10.2.)

〈그림 3-2〉 정부 24 ‘공공자원 개발·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개별 공유자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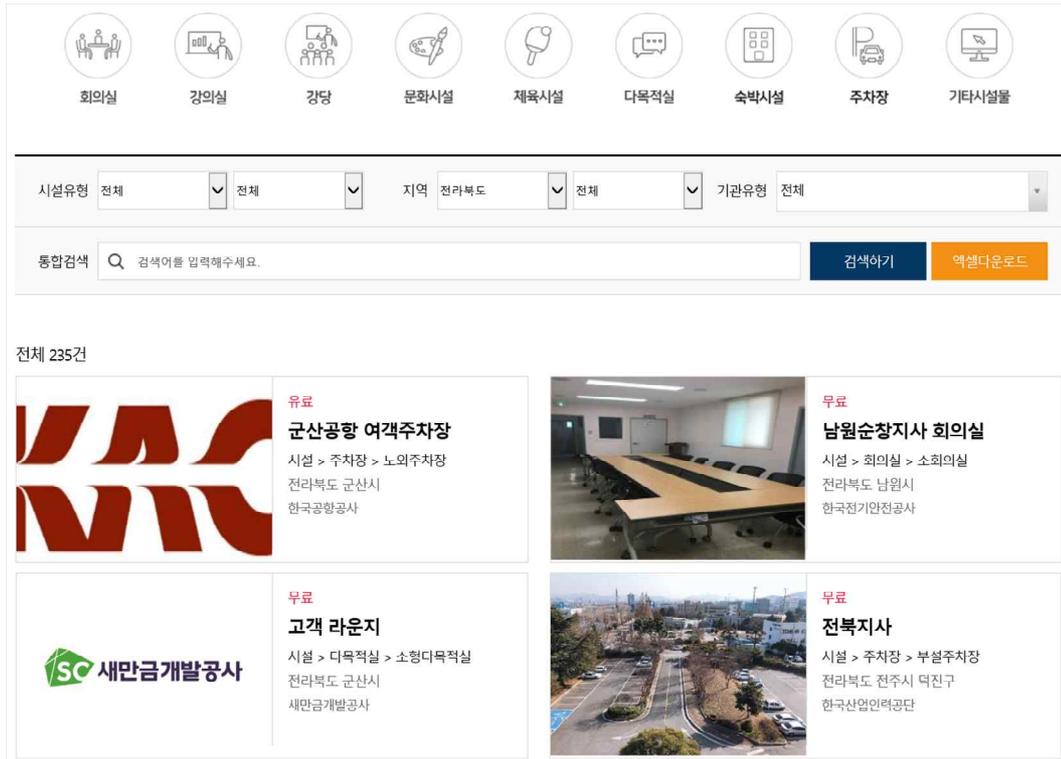
지역	위치	자원유형	수용인원(주차대수)	운영시간	사용료	연락처
전라북도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본관 6층(강의실1개)	강의실	45	평 09:00~18:00	1시간 10,000원	063-290-2214
가족문화교육원 본관 6층(강의실1개)						
자원유형	강의실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456-39 가족문화교육원 본관 6층(강의실1개)	기관명	완주군			
수용인원(주차대수)	45	개수	1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이용불가	이용불가			
사용료	1시간 10,000원					
담당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연락처	063-290-2214			

- 행정안전부 ‘정부 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 제공자원 내용
 - 자원유형으로는 ‘강의실, 회의실, 강당, 정보화 교육실, 다목적실, 숙박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기타’ 등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공함
 - 지방자치단체 기관 유형은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 있음
 - 공공기관 유형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제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등이 있음
 - ‘정부 24’의 ‘공공자원 개발·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도내 공유자원은 총 1,096개로 조사되었음
- 둘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플러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각종 고유 사업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알리오 플러스]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고유 사업 및 서비스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국민의 참여·협력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공공기관 통합서비스
- 시설정보, 행사정보, 사업정보, 국민소통, 기관정보 등을 제공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유가능 시설정보를 제공
- <http://www.alioplus.go.kr/facilities/factByTypeList.do>

〈그림 3-3〉 ‘알리오 플러스’ 시설정보 제공 홈페이지



〈그림 3-4〉 ‘알리오 플러스’ 개별 시설정보 제공 (예시)



- 기획재정부 ‘알리오 플러스’ 공공기관 시설정보 제공자원 주요내용
 - 공공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대학,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있음
 - 자원유형은 ‘회의실, 강의실, 강당,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목적실, 숙박시설, 주차장, 기타 시설물’ 등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공함
 - ‘알리오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도내 공유자원은 총 232개로 조사됨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유가능 자원(시설정보 등)의 DB를 집계한 결과 전라북도 공유자원은 총 1,163개로 분석됨

(중복시설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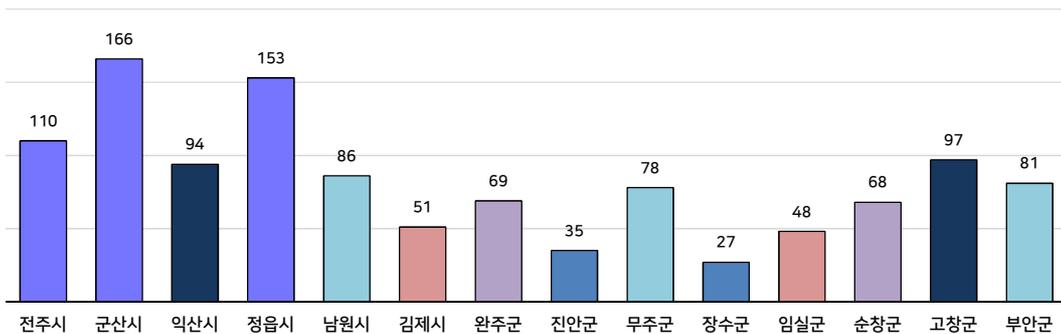
- 공유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건물공간 자원이 515개소(44.3%), 주차장 461개소(39.6%), 체육시설 160개소(13.8%), 숙박시설 16개소(1.4%), 실외공간 11개소(0.9%)임

〈표 3-2〉 정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유자원 유형별 구분

구분	분류	자원수	구분	분류	자원수
건물공간 (515)	강당	127	체육시설 (160)	축구	4
	강의실	61		야구	-
	회의실	284		농구	2
	정보화교육실	2		배드민턴	2
	다목적실	8		테니스	12
	기타	33		탁구	1
실외공간 (11)	야외공연장	2		헬스	13
	야외학습장	1		골프	1
	기타	8		풋살	5
주차장 (461)	실내주차	7		족구	6
	실외주차	443		게이트볼	11
	기계식주차	-		수영	2
	전기차충전소	11		운동장	14
숙박시설 (16)	펜션형	-		체육관	5
	숙박형	12		기타	82
	기타	4		합계	1,163

- 지역별로는 군산시 166개소, 정읍시 53개소, 전주시 110개소, 고창군 97개소, 익산시 94개소, 남원시 86개소 등,
 - 시 지역 공유자원이 56.7%(660개소), 군 지역은 43.3%(503개소)를 차지

〈그림 3-5〉 정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유자원 시·군별 분포



3. 전라북도 공유자원 자체조사

□ 조사방법

- 정부(행정안전부 ‘정부 24’와 기획재정부 ‘알리오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공유가능 자원과 함께 전라북도에 소재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기타 기관 총 68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유가능 자원을 직접 조사하였음

〈표 3-3〉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자원조사 대상기관

대분류	중분류	개수
행정기관	중앙 행정기관 (우체국)	249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54
기타기관	농협은행	35
	지역농협	273
	지역축협	42
	수협	27
	인삼협	2
합계		682

○ 조사내용

- 정부의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정보제공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간과 시설을 중심으로 공유가능 자원 조사

〈그림 3-6〉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자체 조사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조사표 (공간시설 중심)

1. 기관명 (세부명칭)	전북연구원		2. 기관유형			3. 전화번호	(대표)	280-7100	4. 담당부서	행정지원부
	□본소, □지소	(기업하지 알아주세요)			(담당)		280-7151	5. 홈페이지	www.jthink.kr	
6. 주소	(도로명) 전주시 완산구 봉위팔귀로 1696 (지번) (550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52-1									
7. 자원유형	7-1 세부내용	7-2 배치(위치)	7-3 면적(㎡)	7-4 수용인원	7-5 이용시간	7-6 이용요금	7-7 접수방법	7-8 부대시설	7-9 관련사건	
① 건물공간	강당	본관 1층	120	50명	(평일)09시-18시 (휴일)이용불가	(평일)1시간 5천원 (휴일)투표	전화접수	원프로젝트, 음향	(사진열부)	
	회의실									
	(내용추가)									
② 실외공간	(내용추가)									
③ 숙박시설	(내용추가)									
④ 체육시설	(내용추가)									
⑤ 주차장	(내용추가)									
⑥ 화장실	(내용추가)									
⑦ 기타	(내용추가)									

- 자원유형 : 건물공간, 실외공간, 숙박시설, <그림 3-7> 자체조사 기입 참고표
체육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 조사내용 : 자원의 세부내용, 위치, 면적, 수용인원, 이용시간, 이용요금, 접수방법, 부대시설, 관련사진 등

번호	항목	세부내용	
1	기관명	기관 정식명칭을 기입	
	(세부명칭)	세부명칭을 기입하고 본지/지사/사무 체코 (예) 오수관촌농원 관촌계소	
2	기관유형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3	전화번호	기관대표전화와 담당부서 담당자 직통전화 기재	
4	담당부서	기관에 담당부서를 팀/계단위로 기재	
5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기재, 공유자원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 기재	
6	주소	도로명주소/지번주소 정확하게 기재	
7	공간시설	건물공간(7-1), 실외공간(7-2), 숙박시설(7-3), 체육시설(7-4), 주차장(7-5), 화장실(7-6), 기타(7-7)	
	7-1 세부내용	① 건물공간	강당(01), 강의실(02), 회의실(03), 정보화교육실(04), 다목적실(05), 기타(07)
		② 실외공간	야외공연장(01), 야외학습장(02), 기타(03)
		③ 숙박시설	펜션형(01), 숙박형(02), 기타(03)
		④ 체육시설	축구(01), 야구(02), 농구(03), 배드민턴(04), 테니스(05), 탁구(06), 볼스(08), 골프(07), 기타(08)
		⑤ 주차장	실내주차(01), 실외주차(02), 기계식주차(03), 기타(04)
		⑥ 화장실	남성전용(01), 여성전용(02), 남녀공용(03), 기타(04)
	7-2 배치(위치)	시설공간이 있는 구내 세부 시설의 명칭과 층수를 기재 (예) 본관 1층, 본관 뒷편	
	7-3 수용규모	수용인원, 주차면, 계소수 등을 기재 (예) 50명, 차량 50대, 탁구대 2개, 농구장 2면 등	
	7-4 면적(m ²)	시설면적을 계급비단위로 기재 (예) 50㎡ 등	
7-5 이용시간	이용가능시간을 24시간 표시방식으로 기재 (예) 평일-09:00-12:00, 휴일-휴가 등		
7-6 이용요금	이용요금을 차관당 원단위로 기재하되 무의 경우 무료로 기재 (예) 1시간 1만원, 무료 등		
7-7 접수방법	대상자원의 이용을 위한 예약방법 등 기재 (예) 전화예약, 이메일 예약 등		
7-8 부대시설	시설공간에 비례하여 있는 부대시설장비 세부설명 (예) 발표도크트, 노트북, 방송시설 등		
7-9 관련사진	대상자원 관련사진 원형 후 파일로 첨부 (예) 전북연구원_회의실.JPG 등		

○ 조사방법

- 각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능한 자원에 대한 현황정보를 조사양식에 기입하여 이메일로 제출
- 공유가능 자원 조사표는 조사 항목별 기입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참고표를 첨부하여 기입정보의 누락 방지 및 통일된 형식을 유지하도록 함

○ 조사기간 : '19.10. ~ 12. (지속 보완 예정)

□ 조사결과

-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유가능 자원을 자체조사한 결과('19.11 말까지) 공유가능 자원은 총 308개소로 집계됨
- 공유가능 자원의 유형별로는 '건물공간, 화장실, 주차장, 실외공간,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8>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자체조사 유형별 구분

구분	분류	자원수	구분	분류	자원수
건물공간 (117)	강당	127	체육시설 (6)	테니스	1
	강의실	61		헬스	2
	회의실	284		기타	3
	정보화교육실	2	화장실 (114)	남성전용	43
	다목적실	8		여성전용	43
	기타	33		남녀공용	14
실외공간 (7)	야외공연장	2		기타	14
	야외학습장	1	주차장 (60)	실내주차	7
	기타	8		실외주차	443
숙박시설 (4)	펜션형	-		기계식주차	-
	숙박형	12		전기차충전소	11
	기타	4	합계	1,163	

- 지역별로는 전주시(96개소), 고창군(64개소), 무주군(43개소), 임실군(42개소), 군산시(19개소), 순창군(16개소), 익산시(11개소), 장수군(8개소), 남원

- 시(4개소), 진안군(4개소), 부안군(1개소) 등(정읍시, 김제시, 완주군은 없음)
- 지역별 공유가능 자원조사의 편차는 실제 공유가능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원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제출된 자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라북도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DB구축 시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가 필요

4. 전라북도 공유자원 통합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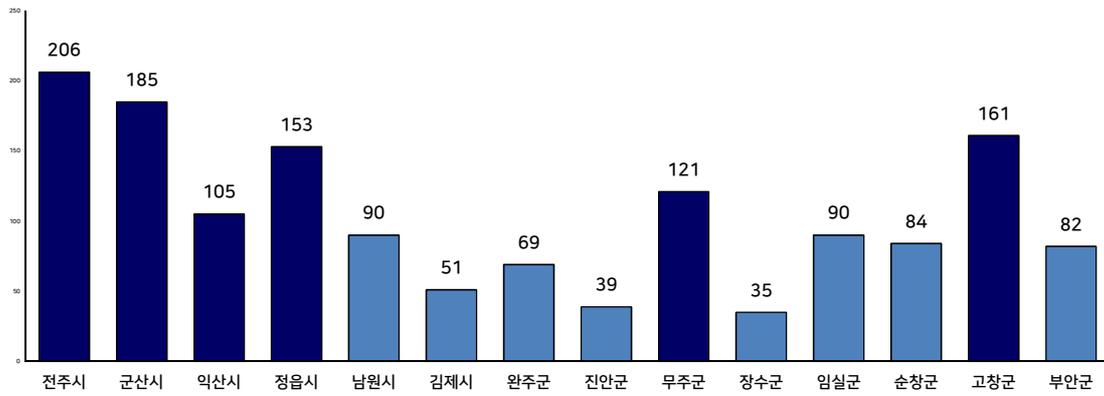
- 정부(행정안전부 ‘정부 24’와 기획재정부 ‘알리오 플러스’)의 공유자원 DB 조사결과와 전라북도 자체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전라북도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DB’로 구축함
- 2019.11 현재 전라북도의 공유가능 자원(시설중심)은 총 1,471개소로 나타남(정부 DB 1,163개소, 자체조사 308개소)
- 공유가능 자원 유형별로는 건물공간이 43.0%(632개소)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이 35.4%(521개소), 체육시설 11.3%(166개소), 화장실 9.5%(114개소), 숙박시설 1.4%(20개소), 실외공간 1.2%(18개소)임

〈표 3-4〉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유형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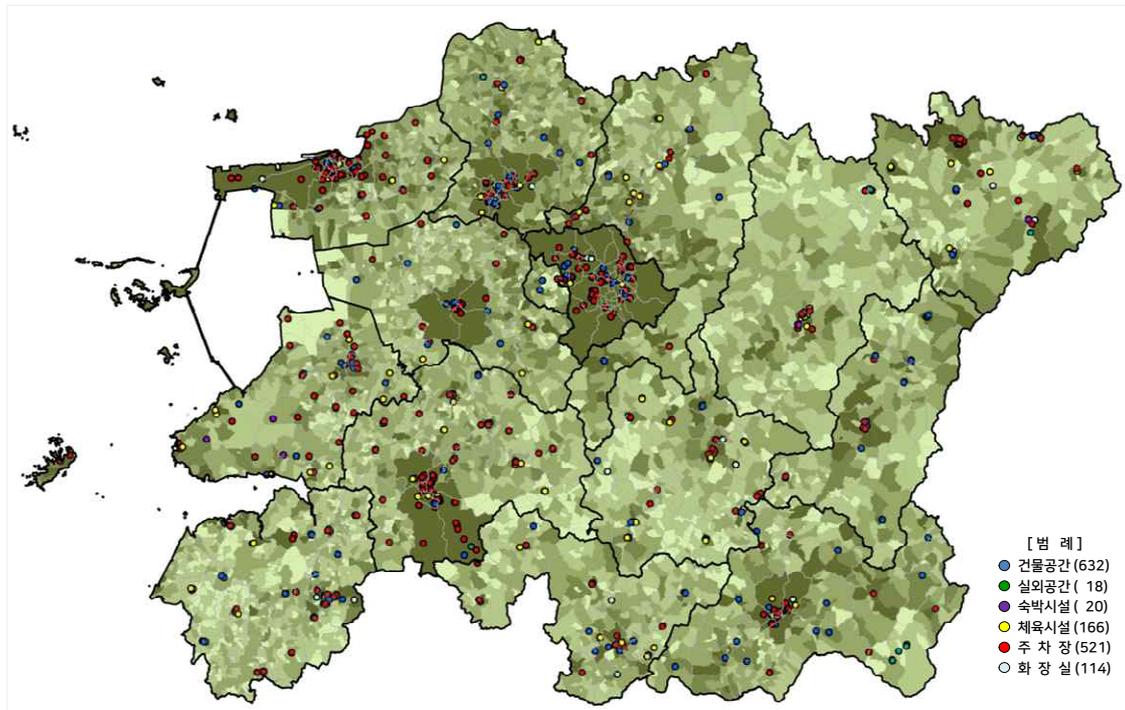
구분	분 류	공유자원(수)	구분	분 류	공유자원(수)
건물공간 (632)	강 당	138	체육시설 (166)	축 구	4
	강 의 실	76		야 구	-
	회 의 실	318		농 구	2
	정보화교육실	2		배드민턴	2
	다목적실	9		테 니 스	13
	기 타	89		탁 구	1
숙박시설 (20)	펜 셴 형	1		헬 스	15
	숙 박 형	14		골 프	1
	기 타	5		풋 살	5
주 차 장 (521)	실내주차	13		족 구	6
	실외주차	497		게이트볼	11
	기계식주차	-		수 영	2
	전기차충전소	11		운 동 장	14
	기 타	-		체 육 관	5
화 장 실 (114)	남성전용	43		기 타	85
	여성전용	43		실외공간 (18)	야외공연장
	남녀공용	14	야외학습장		1
	기 타	14	기 타		13
합 계				1,471	

- 시·군별로는 전주시 14.0%(206개소), 군산시12.6%(185개소), 고창군 10.9%(161개소), 정읍시 10.4%(153개소) 순으로 나타남
 - 시 지역 공유자원은 53.7%(790개소), 군 지역은 46.3%(681개소)를 차지함
- 시·군별 읍·면·동별 공유자원 현황 분석결과 인구 밀집지역인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 지역에 공유가능 자원이 밀집되어 있음
 - 군 지역에서는 행정 서비스 시설 및 공공기관이 위치한 읍·면소재지에 공유가능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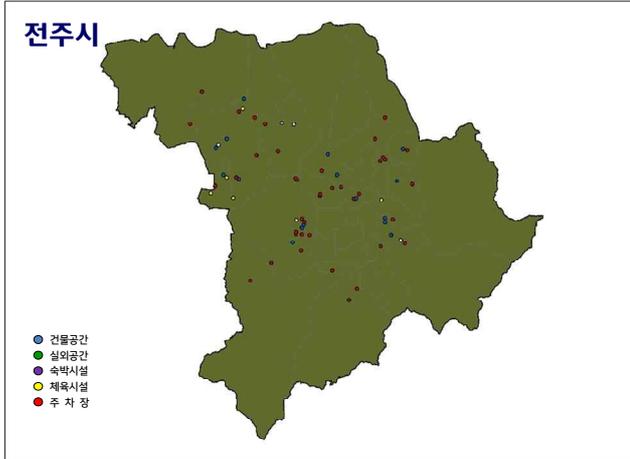
〈그림 3-9〉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지역별 현황



〈그림 3-10〉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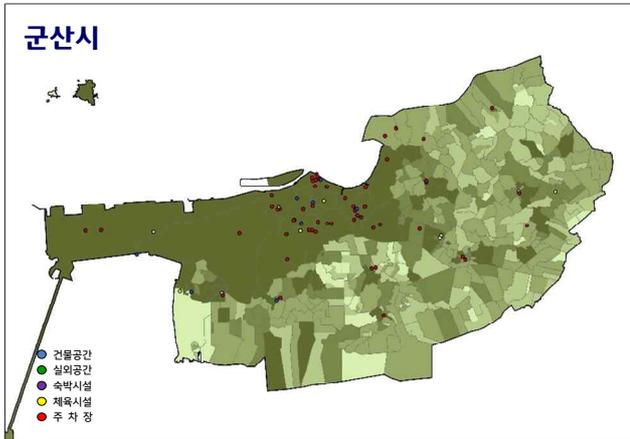


〈그림 3-11〉 전주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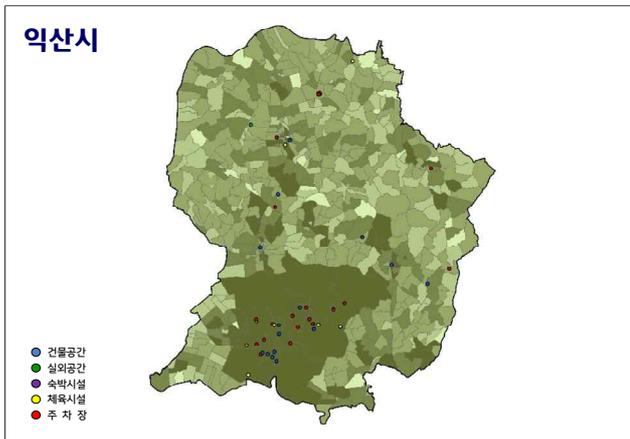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전주시 전체	206	효자4동	42
중앙동	-	효자5동	-
풍남동	26	진북동	6
노송동	10	인후1동	1
완산동	3	인후2동	6
동서학동	8	인후3동	1
서서학동	-	덕진동	30
중화산1동	-	금암1동	-
중화산2동	-	금암2동	-
평화1동	-	팔복동	20
평화2동	5	우아1동	3
서신동	4	우아2동	-
삼천1동	3	호성동	1
삼천2동	-	송천1동	-
삼천3동	1	송천2동	-
효자1동	-	조촌동	3
효자2동	-	여의동	33
효자3동	-	혁신동	-

〈그림 3-12〉 군산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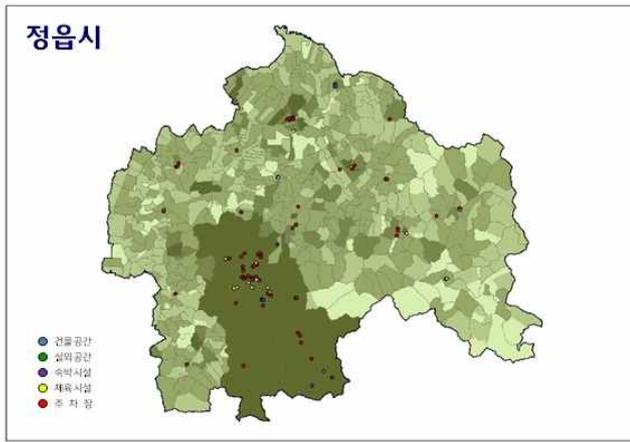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군산시 전체	185	삼학동	3
옥구읍	4	신흥동	12
옥산면	2	중앙동	3
회현면	2	홍남동	4
임피면	8	조촌동	9
서수면	3	경암동	2
대야면	4	구암동	4
개정면	16	개정동	2
성산면	10	수송동	21
나포면	5	나운1동	4
옥도면	-	나운2동	6
옥서면	6	나운3동	9
해신동	7	소룡동	25
월명동	12	미성동	2

〈그림 3-13〉 익산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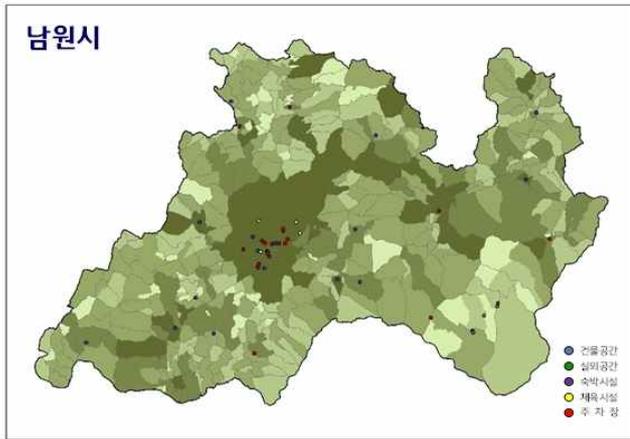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익산시 전체	105	함열읍	11
금마면	4	어양동	20
남산면	-	영등1동	6
망성면	4	영등2동	2
삼기면	-	남중동	6
성담면	5	마동	1
여산면	1	인화동	5
오산면	-	중앙동	4
왕궁면	7	송학동	3
용동면	6	모현동	3
용안면	-	신동	-
용포면	-	삼성동	-
춘포면	-	팔봉동	9
합리면	-	평화동	7
황등면	1	동산동	-

〈그림 3-14〉 정읍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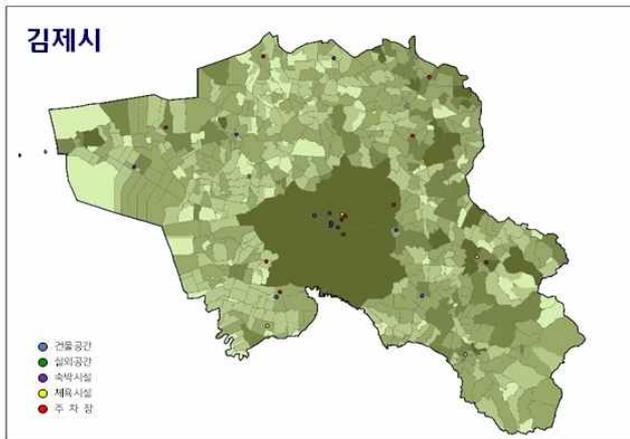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정읍시 전체	153	용동면	4
신태인읍	8	칠보면	6
북면	4	산내면	6
입암면	2	산외면	7
소성면	3	농소동	6
고부면	3	수성동	18
영원면	13	연지동	12
덕진면	2	장명동	5
이평면	2	시기동	4
정우면	8	초산동	8
태인면	6	상교동	5
감곡면	4	내장상동	17

〈그림 3-15〉 남원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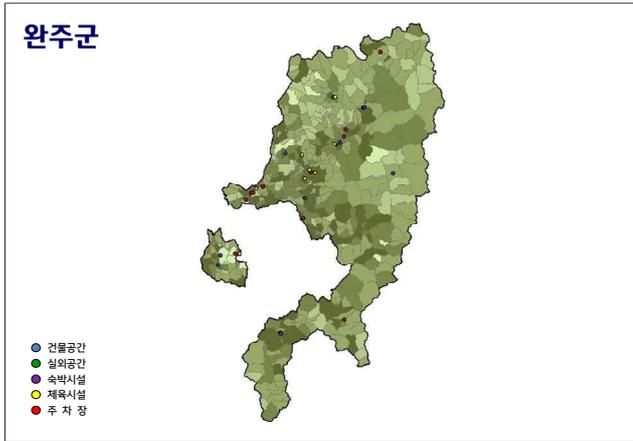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남원시 전체	90	산동면	2
운방읍	2	이백면	1
주천면	7	인월면	1
수지면	3	아영면	1
송동면	2	산내면	9
주상면	1	동중동	6
금지면	2	죽향동	3
대강면	1	노암동	4
대산면	2	금동	7
사매면	1	왕정동	4
덕과면	1	항교동	13
부절면	2	도동동	15

〈그림 3-16〉 김제시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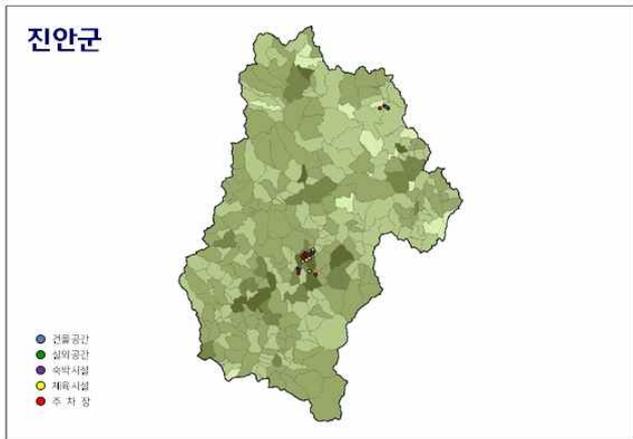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김제시 전체	51	황산면	1
만경읍	1	죽산면	1
광활면	1	부량면	11
진봉면	1	금구면	5
성덕면	-	봉남면	1
청하면	1	금산면	1
백산면	-	요촌동	4
공덕면	1	교월동	-
백구면	1	김산동	14
용지면	2	신풍동	5

〈그림 3-17〉 완주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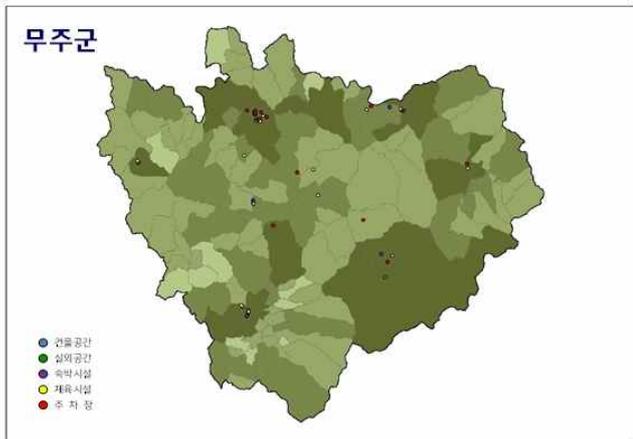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완주군 전체	69	구이면	2
삼례읍	10	고산면	15
봉동읍	13	비봉면	-
용진읍	4	운주면	2
상관면	1	화산면	3
이서면	15	동상면	1
소양면	-	경천면	3

〈그림 3-18〉 진안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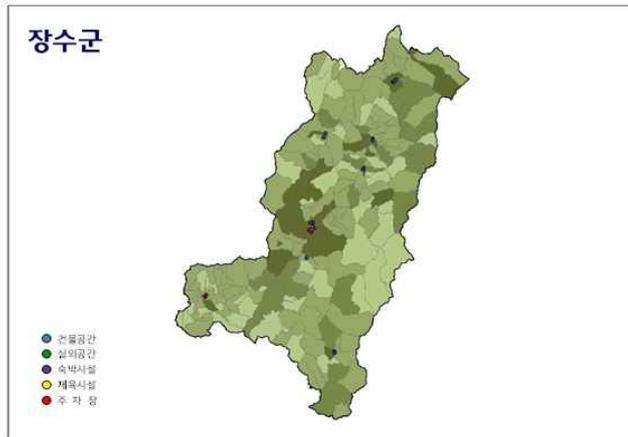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진안군 전체	39	백운면	-
진안읍	33	성수면	-
용담면	1	마령면	-
안천면	5	부귀면	-
동향면	-	정천면	-
상전면	-	주천면	-

〈그림 3-19〉 무주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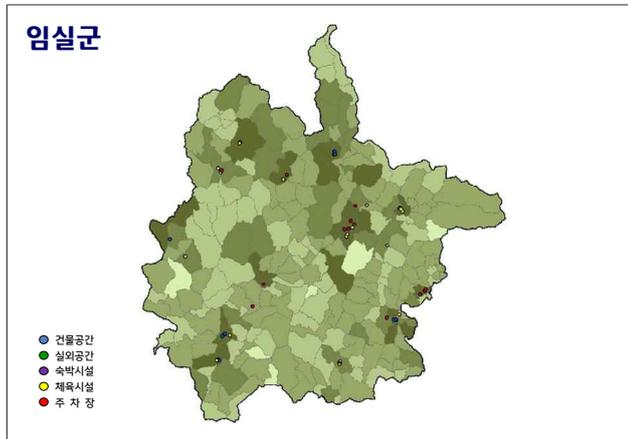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무주군 전체	121	적상면	18
무주읍	33	안성면	9
무풍면	4	부남면	11
설천면	46		

〈그림 3-20〉 장수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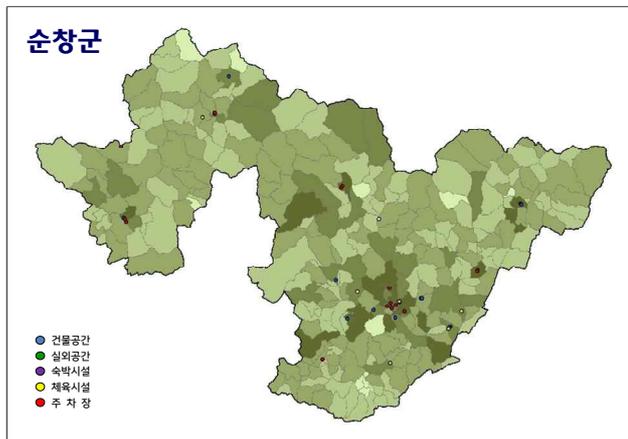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장수군 전체	35	장계면	2
장수읍	19	천천면	3
신서면	4	계남면	2
번암면	2	계북면	3

〈그림 3-21〉 임실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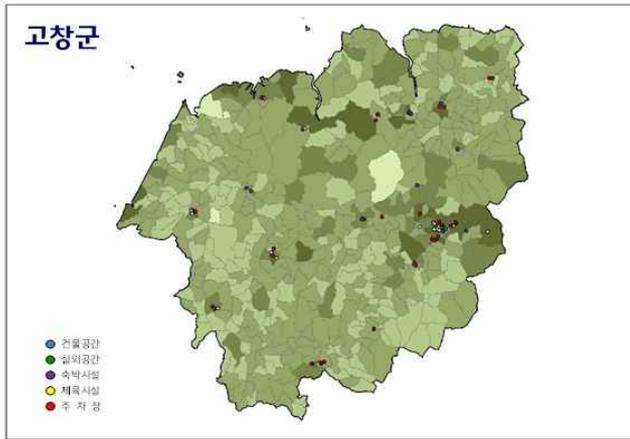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임실군 전체	90	신덕면	3
임실읍	10	삼계면	6
청용면	1	관촌면	4
운암면	18	강진면	15
신평면	2	덕치면	8
성수면	15	지사면	3
오수면	5		

〈그림 3-22〉 순창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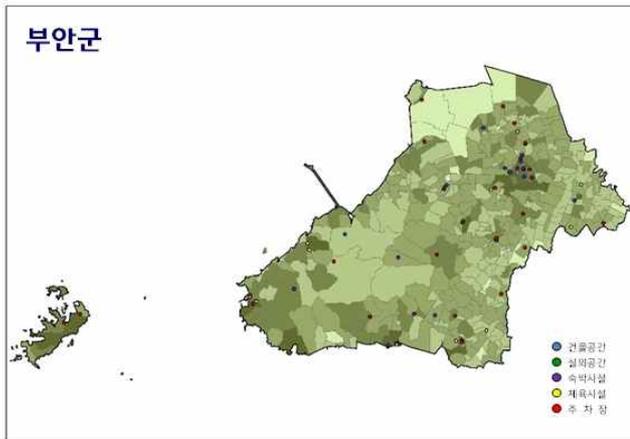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순창군 전체	84	팔덕면	5
순창읍	26	쌍치면	4
인계면	14	북흥면	6
동계면	2	적성면	4
풍산면	2	유등면	11
금과면	6	구림면	4

〈그림 3-23〉 고창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고창군 전체	161	성송면	6
고창읍	63	대산면	8
고수면	5	삼원면	12
아산면	9	홍덕면	5
무장면	10	성내면	5
공음면	6	신림면	2
상하면	10	부안면	18
해리면	2		

〈그림 3-24〉 부안군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분포



읍면동	자원수	읍면동	자원수
부안군 전체	82	변산면	13
부안읍	15	진서면	8
추산면	4	백산면	5
동진면	4	상서면	4
행안면	5	하서면	4
계화면	4	솔포면	7
보안면	5	위도면	4

〈그림 3-25〉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통합 DB

구분	시도	시도코드	시군구	시군구 코드	기관명	건물명	주소	자원유형	자원유형 코드	위치	개수	수용인원 (유지대량 1명/대량 4명)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이용유형	이용인원	운영명세서	연락처	소재지	구분	분류	
1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수면청사	주자청	06	분리형	1	55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수면	061-660-815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2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수읍지청	주자청	06	분리형	1	10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수면	061-660-815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3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경찰서(주자분서)	회합실	01	분리형	1	100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행안면	061-660-2477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차실	
4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청(주자청)	회의실	06	분리형	1	18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96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5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공공도서관	강의실	02	1층	1	40(회차)	0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855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강의실	
6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강의실	04	1~2층	1	63명	09:00~23:00	09:00~23:00	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8544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강당	
7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문화체육센터	주자청	06	연립	1	140명	09:00~22:00	09:00~22:00	0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2573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8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보육교사	체육시설	07	합동(합계:복합인실)	1	40명	09:00~22:00	09:00~22:00	0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8715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헬스	
9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보육교사	주자청	06	분리형	1	63명	09:00~22:00	09:00~22:00	0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8715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10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주자청	06	분리형	1	140명	09:00~22:00	09:00~22:00	0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2584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11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군청(주자청)	주자청	06	분리형	1	14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2495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12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시정수질개선사업	주자청	06	분리형	1	18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235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13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시정수질개선사업	체육시설	07	분리형	1	10명	09:00~21:00	09:00~21:00		주요	고창읍	061-660-235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기타	
14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21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113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15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농업기술센터	기타	99	연립(복합인실)	1	30	09:00~22:00	09:00~22:00	9:00~22:00	일 20:00명	주요	고창읍	061-660-80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여과차량
16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100명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17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21명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18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2	분리형	1	1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19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10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0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7	분리형	1	200명(10차)	09:00~22:00	09:00~22:00	0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기타	
21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50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2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4	분리형	1	100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237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강당	
23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78명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2373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4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2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62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5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3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6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3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7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4	분리형	1	15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82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8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6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29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4	분리형	1	20명	09:00~17:00			주요	고창읍	061-660-8344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강당	
30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7	분리형	1	100명	09:00~22: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73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1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20명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73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2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5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3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5	09:00~18:00	09:00~18: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40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4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7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6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5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15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61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6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99	연립(복합인실)	1	144명	09:00~22:00	09:00~22:00	9:00~22:00	주요	고창읍	061-660-8822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기타	
37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10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2396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8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6	분리형	1	150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377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39	2	전북	45	고창군	457900000	고창군	고창읍청사	회의실	01	분리형	1	100명	09:00~18:00			주요	고창읍	061-660-8217	행안면	주자청	실외주차장	회의실	

〈그림 3-26〉 공공기관 공유가능 자원 정보 예시



건물공간/회의실

- 기관명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주소 : 군산시 동장산2길 6
- 전화 : 472-2323
- 유형 : 건물공간(회의실)
- 위치 : 본관 3층 / 수용인원 : 180명
-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음향
- 이용 : 09:00~18:00(평일)
- 요금 : 2시간 61,600원(평일)



건물공간/강당

- 기관명 : (재)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 주소 :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558
- 전화 : 560-5113
- 유형 : 건물공간(강당)
- 위치 : 본관 2층 / 수용인원 : 80명
-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음향
- 이용 : 09:00~18:00(평일)
- 요금 : 4시간 200,000원(1일)



숙박시설/숙박형

- 기관명 : (재)임실치즈네마파크
- 주소 :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89
- 전화 : 643-3900
- 유형 : 숙박시설(숙박형)
- 위치 : 3층 / 수용인원 : 48명
- 부대시설 : 침대, 싱크대, TV, 에어컨, 냉장고 등
- 이용 : 15:00(입실), 11:00(퇴실)
- 요금 : 1층 3실(8평) 50,000원



체육시설/기타

- 기관명 : (재)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1길 111-18
- 유형 : 체육시설(기타, 다목적구장)
- 위치 : 다목적구장 / 수용인원 : 15명
- 이용 : 18:00~22:00(평일)
- 요금 : 2시간 22,000원(온라인등록)



체육시설/기타

- 기관명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 주소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 전화 : 653-8708
- 유형 : 체육시설(기타, 명상관)
- 위치 : 명상관 / 수용인원 : 30명
-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마이크
- 이용 : 09:00~18:00



주차장/실외주차

- 기관명 : 장수우체국
- 주소 :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5
- 전화 : 351-5505
- 유형 : 주차장(실외주차)
- 위치 : 우체국주차장 / 주차대수 : 12대
- 면적 : 163m²
- 이용 : 09:00~18:00(평일)
- 요금 : 무료



실외공간/기타

- 기관명 : (재)전주문화재단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전주전동로 20
- 전화 : 280-7009
- 유형 : 실외공간(기타, 이팝나무광장)
- 위치 : A,B동 야외 / 수용인원 : 100~200명
- 부대시설 : 의자, 테이블
- 이용 : 09:00~18:00(화~일요일)
- 요금 : 150,000원(평일, 주말 동일, 부가세별도)



실외공간/야외공연장

- 기관명 : (재)임실치즈네마파크
- 주소 :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89
- 전화 : 643-3900
- 유형 : 실외공간(야외공연장)
- 위치 : 야외공연장 / 수용인원 : 100명
- 부대시설 : 조명설치
- 이용 : 상시
- 요금 : 무료(임실군 협의)



주차장/실외주차

- 기관명 : 고창군 수협 본점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9
- 전화 : 561-2132
- 유형 : 주차장(실외주차)
- 위치 : 본점 건물 뒤 / 주차대수 : 30대
- 부대시설 : 의자, 테이블
- 이용 : 24시간(전화접수)
- 요금 : 무료



화장실(남/여)

- 기관명 :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 주소 :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17
- 전화 : 430-7681
- 유형 : 화장실(남, 여 분리)
- 위치 : 본관1층 / 수용인원 : 1명
- 이용 : 09:00~18:00(평일)
- 요금 : 무료



화장실(여)

- 기관명 : (재) 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 주소 :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558
- 전화 : 560-5113
- 유형 : 화장실(여)
- 위치 : 본관2층
- 이용 : 09:00~18:00(평일)
- 요금 : 무료



주차장/실외주차

- 기관명 : 고창군 수협 본점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9
- 전화 : 561-2132
- 유형 : 주차장(실외주차)
- 위치 : 본점 건물 뒤 / 주차대수 : 30대
- 면적 : 697m²
- 이용 : 24시간(전화접수)
- 요금 : 무료

5. 자원조사 시사점과 과제

□ 공공기관 공유자원의 다양화 필요

- 이번 공유가능 자원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자원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공유자원은 시설과 같은 유형 자원뿐만 아닌 무형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자원의 공유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시설 자원과 무형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미활용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공유자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발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정부24)'과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플러스'와 같이 시설자원을 위주로 공유자원을 구축하였고,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공유자원을 대상으로 조사와 DB구축이 진행되었음
-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매개하는 공유자산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닌 상품이나 지식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공유경제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기관 보유자원의 공유촉진 방안 필요

- 이 연구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공유자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미활용 유휴자원에 대한 공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공유경제와 공유자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공유인식이 있다고 해도 자원을 공유하는데 대해 있어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임
- 공공기관의 자원을 외부 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업무와 관리상의 문제 등이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공익성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산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행정 차원의 독려가 필요한 시점임
- 공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편리하게 해당 공유자원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보유기관이 추가적인 업무

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소화된 ICT 서비스 기술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공유자원 조사의 현행화 필요

- 공유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이용가능 공유가능 자원에 대한 정보가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현행화(update)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임
- 공유경제 대표 사례인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가능 숙박자원에 대한 현황정보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등록하여 변동 상황이 즉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핵심임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전안전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등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조사된 공유자산의 DB 구축 이후 이용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수집된 공유자원을 공간 DB로 구축한 상황임)
- 향후 공유자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공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가 플랫폼에 직접 공유의사가 있는 자원을 등록하는(upload) 현행화된 자원 조사체계가 필요함
- 즉, 공유경제 플랫폼에 등록된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이를 사용자가 이를 확인, 사용여부를 선택하는 등의 공유경제 기본 메커니즘이 실현되도록 공유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전라북도 공공부문 공유경제 플랫폼은 공유가능 자원의 등록, 공유자원 정보 갱신, 사용신청, 요금지불, 사용후기 등의 일련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제4장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조사

1. 도민 의식 조사 개요
2. 공유경제 여건 진단
3. 공유경제 인지 경험
4. 자원 보유 이용 실태
5. 자원 제공 이용 의향
6. 공유자원 중요도
7. 공유경제 기대 태도
8.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9.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

제4장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조사

1. 도민 의식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공유경제 관한 전북도민 의식을 파악하고,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에 필요한 여건을 분석하고자 함
- 공유경제 정책방향, 지역발전 여건에 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19. 9. 2. ~ 2019. 9. 30.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수행 후 조사표 수정·보완함 (예비조사 8.20.~8.25)
- 도민 의식조사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을 시·군 인구, 연령, 성별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 총 904명의 조사결과를 분석에 활용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원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함(면접 응답자가 직접 기입, 조사원 교육 8.29.~9.1. 수행)

□ 조사내용

- 공유경제 인지, 공유자원 이용 및 제공태도, 공유경제 기대태도, 공유경제 전략, 정책태도 등으로 구분됨
- 측정방법으로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으며, 평균값으로 분석 및 비교하였음

〈표 4-1〉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주요내용

조 사 내 용	문항 수	조 사 내 용	문항 수
응답자 현황특성	9	공유경제 부정기대	8
공유경제 인지정도	2	공유경제 정책사항	25
공유경제 경험유무	2	공유경제 작동요소	6
생활필요 자원소유	1	공유경제 작동체계	3
소유자원 이용정도	2	활용가능 자원분야	6
공유자원 이용의향	3	공유경제 작동방식	3
공유자원 제공의향	2	공유경제 거래형태	3
공유경제 긍정기대	12	중점추진 전략방향	7

□ 응답자 현황

- 조사에 응답 분석에 활용한 도민은 총 904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시 28.1%, 익산시(18.0%), 군산시(15.8%), 정읍시(7.4%), 김제시(5.9%) 등임
- 성별은 여성 54.5%, 남성 45.5%, 기혼 76.5%, 미혼 23.5%로 조사되었음
- 연령은 60대 이상이 25.2%로 가장 많고, 40대(20.5%), 50대(18.9%), 30대(17.6%), 20대(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거가족은 4인이 30.5%로 가장 많고, 3인(24.6%), 2인(24.6%), 1인(11.0%), 5인(7.9%), 6인 이상(1.4%) 순으로 집계됨

〈표 4-2〉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응답자 지역분포

지 역	응답자(명)	비중(%)	지 역	응답자(명)	비중(%)
전 주 시	254	28.1	무 주 군	13	1.4
군 산 시	143	15.8	장 수 군	12	1.3
익 산 시	163	18.0	임 실 군	15	1.7
정 읍 시	67	7.4	순 창 군	16	1.8
남 원 시	46	5.1	고 창 군	33	3.7
김 제 시	53	5.9	부 안 군	30	3.3
완 주 군	47	5.2			
진 안 군	12	1.3	합 계	904	100.0

- 직업별로는 주부 16.9%, 사무직 16.4%, 전문직 14.7%, 판매·서비스 9.2%, 농업 7.5%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이 24.4%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22.3%), 300~400만원(16.8%) 등의 순으로 확인됨
- SNS는 이용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4%,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33.9%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25.4%,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58.1%로 확인됨

〈표 4-3〉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1

구 분		응답자(명)	비중(%)	구 분		응답자(명)	비중(%)	
성 별	남 성	409	45.5	동거가족 (본인포함)	1명	92	11	
	여 성	490	54.5		2명	207	24.6	
	합 계	899	100		3명	207	24.6	
연 령	20대 이하	135	14.9		4명	256	30.5	
	30대	159	17.6		5명	66	7.9	
	40대	185	20.5		6명 이상	12	1.4	
	50대	171	18.9		합 계	840	100	
	60대	228	25.2		결혼여부	기 혼	659	76.5
	70대 이상	26	2.9			미 혼	203	23.5
	합 계	904	100			합 계	862	100

〈표 4-4〉 공유경제 도민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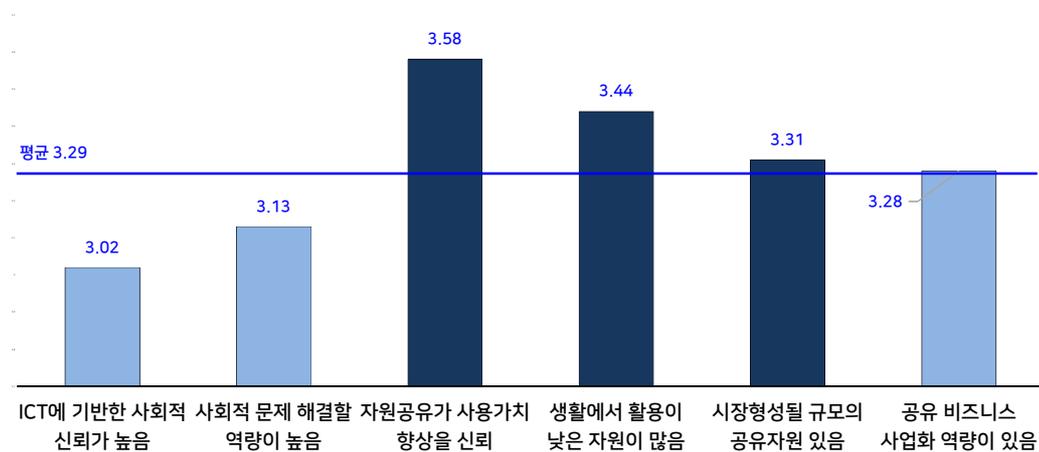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명)	비중(%)	구 분		응답자(명)	비중(%)
SNS 이용정도	이용안함	207	23.1	인터넷 이용정도	이용안함	110	12.3
	가끔이용	218	24.3		가끔이용	117	13.1
	보 통	168	18.7		보 통	147	16.5
	자주이용	199	22.2		자주이용	298	33.4
	적극이용	105	11.7		적극이용	220	24.7
	합 계	897	100		합 계	892	100
직 업	사무직	148	16.4	소 득	100만원 미만	58	6.6
	생산직	29	3.2		100~200만원	196	22.3
	판매서비스	83	9.2		200~300만원	215	24.4
	농 업	68	7.5		300~400만원	148	16.8
	공무원	63	7		400~500만원	107	12.2
	대학생	62	6.9		500만원 이상	156	17.7
	주 부	152	16.9		합 계	880	100
	전문직	132	14.7				
	기 타	164	18.2				
	합 계	901	100				

2. 공유경제 여건진단

□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진단

- 공유경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여건을 항목별로 평균하여 종합 진단한 결과 보통 이상(3.29)으로 평가됨
- 긍정적으로 진단된 항목으로는 ‘자원공유는 사용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신뢰가 있음(3.58), 생활의 미활용 자원 많음(3.44), 시장을 형성할 규모의 공유자원 있음(3.31)’으로 나타남
-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된 항목으로는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역량(3.28),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3.13), ICT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3.03)’로 나타남

〈그림 4-1〉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진단



□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집단 비교

- 응답자 유형별로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에 대하여 집단 비교결과, ‘지역, 결혼유무, 인터넷·SNS 이용정도’에 따라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군(농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혼자이며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성별, 연령, 동거가족, 직업, 월 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4-5〉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관련 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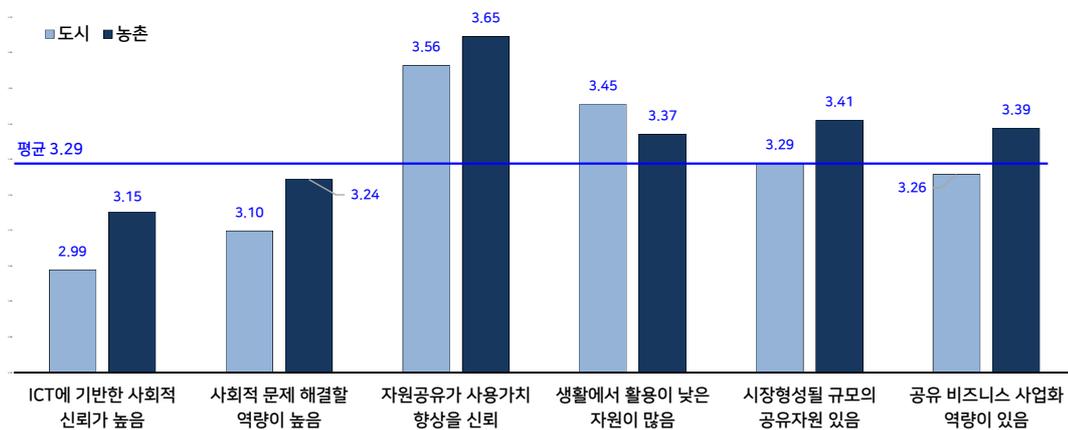
구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28	0.610	-1.833*	직업	사무직	3.23	0.580	1.344
	군 지역	3.37	0.610			생산직	3.55	0.470	
성별	남 성	3.32	0.610	0.973		판매서비스	3.33	0.610	
	여 성	3.28	0.620			농 업	3.37	0.700	
연령	20대	3.24	0.570	1.139		공무원	3.25	0.680	
	30대	3.34	0.640			대학생	3.35	0.650	
	40대	3.24	0.640			주 부	3.32	0.590	
	50대	3.33	0.600			전문직	3.30	0.600	
	60대 이상	3.31	0.600			기 타	3.22	0.610	
동거 가족	2명 이하	3.27	0.600	0.194		결혼 유무	기 혼	3.30	
	3명	3.30	0.620		미 혼		3.22	0.600	
	4명 이상	3.29	0.620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35	0.610	2.803***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33	0.610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하	3.24	0.610	
	200~400	3.27	0.620			평균 이상	3.29	0.570	
	400 이상	3.27	0.600		평균 이하	3.30	0.660		

p*(0.1, p**(0.05, p***)(0.01

□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관련 도시-농촌 비교

-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여건을 도시와 농촌에 따라 비교한 결과 군(농촌) 지역이 시(도시) 지역보다 ‘미활용 자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함
- 항목 간의 차이는 ‘ICT 기반 사회적 신뢰,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 비즈니스 사업역량, 시장이 형성될 공유자원의 규모’ 순으로 나타남

〈표 4-6〉 공유경제 ‘지역사회 여건’ 관련 도시-농촌 비교



□ ‘렌탈방식’ 사업에 대한 의견

- 기존 사업자의 렌탈(대여) 방식 사업(쏘카, 카카오택시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공유경제로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함
- 공유경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9.0%, 공유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0.6%, 응답을 유보한 경우가 30.3%로 나타남 (평균 3.29)
-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 인식이 적극적일수록 렌탈사업을 공유경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 렌탈방식 사업에 대한 의견의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05	1.027	-0.496	직업	사무직	3.01	0.979	1.178
	군 지역	3.08	0.904			생산직	3.33	0.784	
성별	남 성	3.06	1.012	0.077		판매서비스	3.08	1.015	
	여 성	3.05	1.000			농 업	2.97	0.797	
연령	20대	3.22	1.079	1.747		공무원	3.13	1.129	
	30대	3.12	1.046			대학생	3.10	1.155	
	40대	3.02	1.000			주 부	3.08	0.942	
	50대	3.05	1.002			전문직	3.18	1.045	
	60대 이상	2.95	0.930			기 타	2.89	1.040	
동거가족	2명 이하	3.00	1.010	1.21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13	
	3명	3.14	0.940		평균 이하		2.99	0.956	
	4명 이상	3.08	1.025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10	1.050	1.627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2.96	0.934	3.033**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00	0.943	
	200~400	3.02	1.000			평균 이상	3.16	0.997	2.851***
	400 이상	3.17	1.073			평균 이하	2.97	1.000	
결혼유무	기 혼	3.03	0.978	-0.871	p* < 0.1, p** < 0.05, p*** < 0.01				
	미 혼	3.11	1.096						

3. 공유경제 인지경험

□ 공유경제 ‘인지와 경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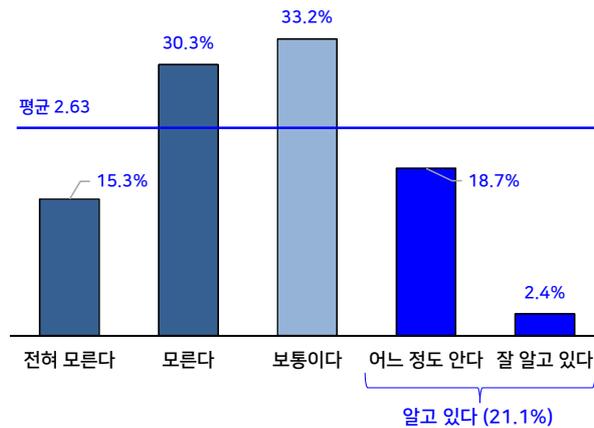
- 공유경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의견은 51.9%, 들어본 적 없다는 48.1%로 나타남
- 공유경제에 대해서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것(84.2%)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경우는 15.8%로 조사됨

〈표 4-8〉 공유경제 ‘인지여부’와 ‘경험여부’

구 분		응답 수(명)	비중(%)
인지여부	들어본 적 있음	469	51.9
	들어본 적 없음	434	48.1
	합 계	903	100.0
경험여부	경험 있음	142	15.8
	경험 없음	754	84.2
	합 계	896	100.0

- 공유경제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1.1%, 잘 모른다는 의견이 45.8%임 (평균 2.63)

〈그림 4-2〉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지정도’



□ 공유경제 ‘인지정도’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인지정도를 응답자 특성별 집단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직업, 소득, SNS·인터넷, 공유경제 이해정도’에 따라 공유경제 인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남성, 50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인지정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공무원·생산직, 인터넷·SNS 이용과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인지정도’가 높음

〈표 4-9〉 공유경제 ‘인지여부’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공유경제 인지여부(%)		구 분		공유경제 인지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 역	시 지역	51.6	48.4	직업***	사무직	58.1	41.9
	군 지역	53.4	46.6		생산직	69.0	31.0
성별***	남 성	58.2	41.8		판매서비스	47.6	52.4
	여 성	46.6	53.4		농 업	32.4	67.6
연령***	20대	48.9	51.1		공무원	71.4	28.6
	30대	57.9	42.1		대학생	50.0	50.0
	40대	55.7	44.3		주 부	47.4	52.6
	50대	64.3	35.7		전문직	58.3	41.7
	60대 이상	38.7	61.3		기 타	45.7	54.3
동거가족*	2명 이하	47.8	52.2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63.0
	3명	52.7	47.3	평균 이하		43.0	47.0
	4명 이상	57.1	42.9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85.3	14.7
월소득*** (만원)	200 미만	42.5	57.5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12.2	87.8
	200~400	51.0	49.0		평균 이상	50.5	49.5
	400 이상	62.2	37.8		평균 이하	53.6	46.4
결혼유무	기 혼	52.6	47.4	p* $<$ 0.1, p** $<$ 0.05, p*** $<$ 0.01			
	미 혼	50.7	49.3				

□ 공유경제 ‘이용경험’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이용경험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 집단 비교를 수행한 결과 ‘직업, 소득, SNS·인터넷, 공유경제 이해정도’에 따라 공유경제 인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월 소득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판매서비스·사무직 종사자·대학생, 인터넷·SNS 이용과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용경험’이 높음

〈표 4-10〉 공유경제 ‘이용경험’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공유경제 이용경험(%)		구 분		공유경제 이용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 역	시 지역	15.6	84.4	직업***	사무직	22.3	77.7
	군 지역	16.9	83.1		생산직	3.6	96.4
성 별	남 성	15.3	84.7		판매서비스	22.9	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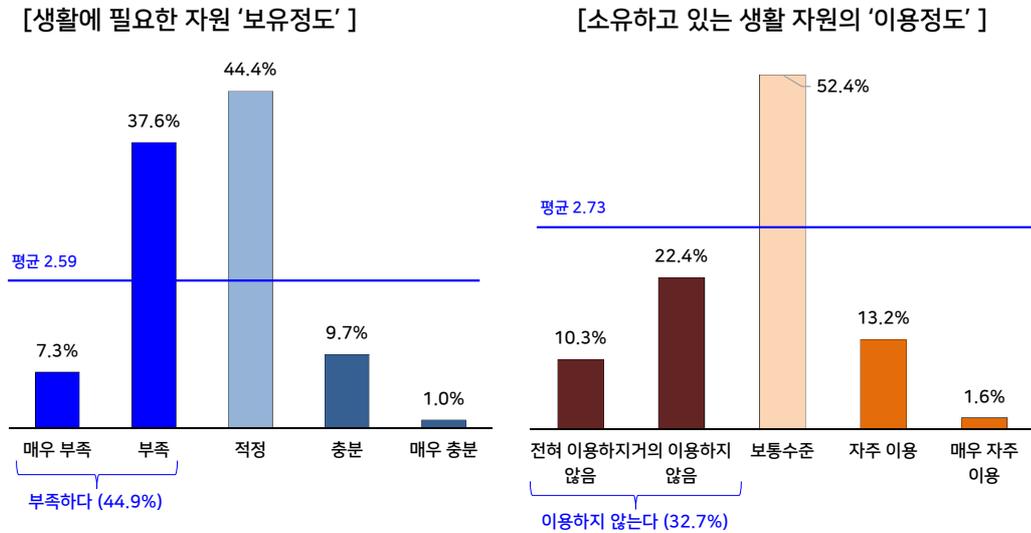
구 분		공유경제 이용경험(%)		구 분		공유경제 이용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여 성	16.5	83.5		농 업	7.6	92.4
연 령	20대	20.1	79.9		공무원	12.7	87.3
	30대	17.3	82.7		대학생	21.3	78.7
	40대	16.2	83.8		주 부	13.3	86.7
	50대	18.2	81.8		전문직	17.6	82.4
	60대 이상	10.8	89.2		기 타	12.3	87.7
	동거가족	2명 이하	12.8	87.2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20.1
3명		17.2	82.8	평균 이하		12.7	87.3
4명 이상		18.9	81.1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24.2	75.8
월소득*** (만원)	200 미만	12.4	87.6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5.7	94.3
	200~400	13.6	86.4		평균 이상	15.3	84.7
	400 이상	22.4	77.6	평균 이하	16.6	83.4	
결혼유무	기 혼	15.0	85.0	p* $<$ 0.1, p** $<$ 0.05, p*** $<$ 0.01			
	미 혼	19.2	80.8				

4. 자원보유 이용실태

□ 생활상 물건·정보·자원의 ‘보유정도-이용정도’

-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보유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2.59)’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보유 정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은 44.9%, 충분하다는 의견은 10.7%로 전반적으로 생활필수 자원에 대한 보유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소유한 물건·정보·자원의 이용정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용정도가 ‘보통 이하(2.73)’의 수준으로 나타남
- 이용 정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7%,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나 이용 정도 또한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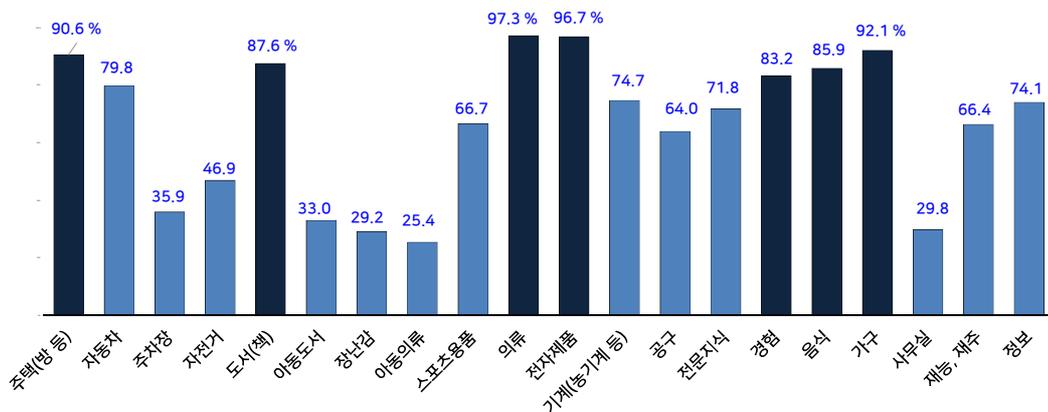
〈그림 4-3〉 생활상 필요 자원의 ‘보유정도’ 및 ‘이용정도’



□ 생활자원별 보유수준

- 생활 자원별로 보유수준을 살펴본 결과 8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의류, 전자제품, 가구, 주택, 도서, 음식, 경험 등으로 나타남
- 70% 수준이 보유하는 자원은 자동차, 기계(농기계), 정보, 전문지식 등이 있으며, 60% 수준의 경우 스포츠, 재능·재주, 공구 등이 있음
- 40% 수준의 경우 자전거, 30% 미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주차장, 아동도서, 사무실, 장난감, 아동의류 등으로 나타남

〈그림 4-4〉 생활자원 유형별 보유수준



□ 생활자원 ‘보유정도’에 관한 집단 비교

- 생활자원 보유정도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연령, 가족 수, 직업, 소득, SNS·인터넷, 공유경제 이해정도와 여건’에 따라 생활자원 보유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가족과 월 소득이 많을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사무직·공무원·전문직·대학생이 자원 ‘보유정도’가 높다고 평가됨

〈표 4-11〉 생활자원 ‘보유정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2.61	0.822	1.339	직업	사무직	2.72	0.729	4.237***
	군 지역	2.53	0.707			생산직	2.24	0.577	
성별	남 성	2.62	0.794	0.911		판매서비스	2.57	0.666	
	여 성	2.57	0.809			농 업	2.15	0.808	
연령	20대	2.71	0.658	3.537***		공무원	2.71	0.705	
	30대	2.69	0.779			대학생	2.68	0.742	
	40대	2.58	0.769			주 부	2.59	0.856	
	50대	2.64	0.795			전문직	2.68	0.835	
	60대 이상	2.45	0.889			기 타	2.59	0.864	
동거가족	2명 이하	2.52	0.826	4.308**		SNS, 인터넷이용 (평균 3.10)	평균 이상	2.72	
	3명	2.53	0.793		평균 이하		2.49	0.842	
	4명 이상	2.69	0.771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 2.63)	평균 이상	2.81	0.698	8.949***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2.32	0.816	25.232***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2.34	
	200~400	2.64	0.787		평균 이상		2.54	0.864	
	400 이상	2.80	0.735		평균 이하	2.65	0.736	-2.121**	
결혼유무	기 혼	2.60	0.827	-0.248	p* < 0.1, p** < 0.05, p*** < 0.01				
	미 혼	2.62	0.697						

□ 생활자원 ‘이용정도’에 관한 집단 비교

- 생활자원 이용정도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한 결과 ‘연령, 결혼, 직업, 소득, SNS·인터넷, 공유경제 이해정도와 여건’에 따라 생활자원 이용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20~30대·50대, 미혼자, 월 소득이 200~400만원, 대학생·사무직·전문직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생활자원의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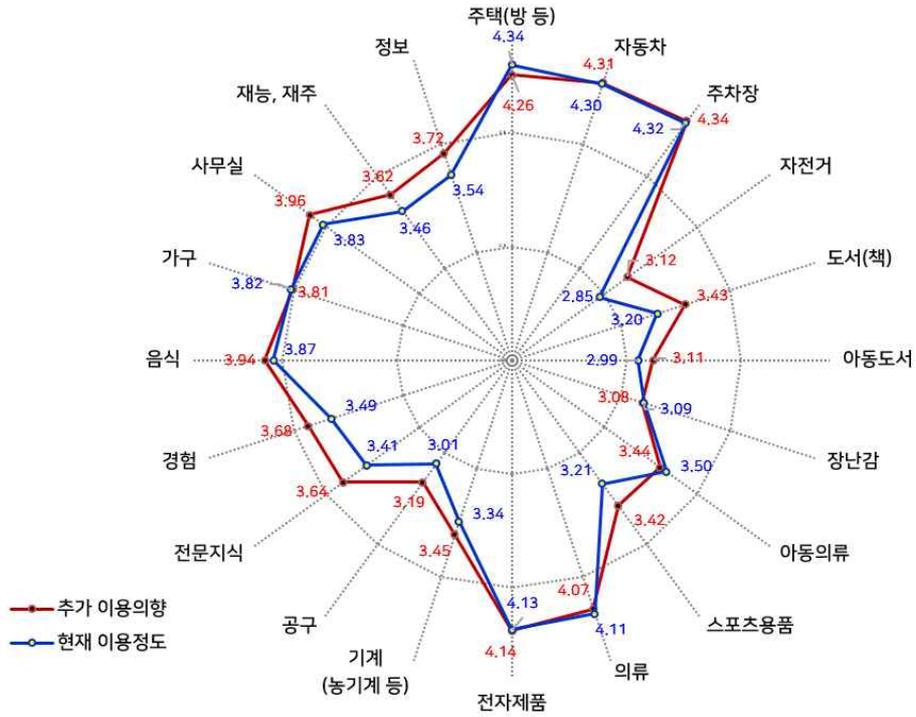
〈표 4-12〉 생활자원 ‘이용정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2.74	0.861	0.72	직업	사무직	2.90	0.850	3.756***	
	군 지역	2.69	0.914			생산직	2.59	0.907		
성별	남 성	2.75	0.865	0.658		판매서비스	2.62	0.870		4.874***
	여 성	2.71	0.878			농 업	2.53	0.881		
연령	20대	2.93	0.654	6.376***		공무원	2.68	0.758		5.737***
	30대	2.85	0.856			대학생	3.03	0.706		
	40대	2.68	0.874			주 부	2.56	0.878		
	50대	2.82	0.927			전문직	2.89	0.966		
	60대 이상	2.53	0.906			기 타	2.68	0.835		
동거 가족	2명 이하	2.69	0.897	0.647		SNS, 인터넷이용 (평균 3.10)	평균 이상	2.88		0.884
	3명	2.77	0.847		평균 이하		2.60	0.836		
	4명 이상	2.75	0.858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 2.63)	평균 이상	2.89	0.789	5.737***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2.58	0.857	5.372***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2.55	0.931		-2.044**
	200~400	2.81	0.852		평균 이상	2.67	0.907			
	400 이상	2.78	0.907		평균 이하	2.79	0.842			
결혼 유무	기 혼	2.71	0.885	-2.037**	p* < 0.1, p** < 0.05, p*** < 0.01					
	미 혼	2.85	0.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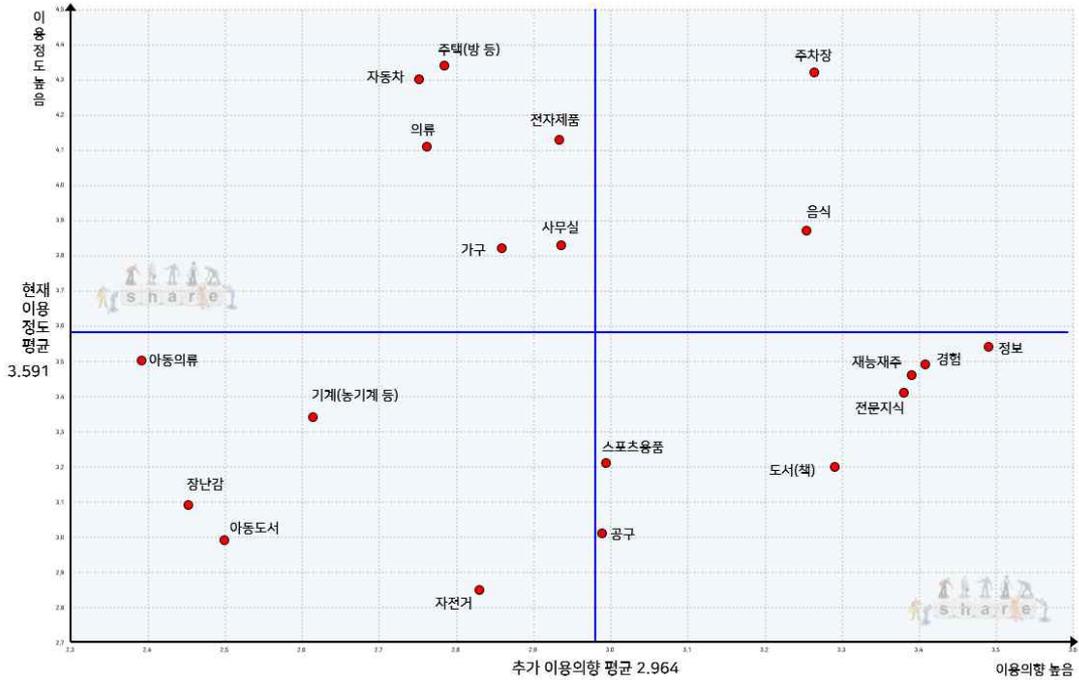
□ 생활자원 ‘현재 이용정도-추가 이용의향’

- 생활자원에 대한 현재 이용정도는 주택(4.34), 주차장(4.32), 자동차(4.30), 전자제품(4.13), 의류(4.11), 음식(3.87), 사무실(3.83), 가구(3.82), 정보(3.54), 아동의류(3.50) 순임
- 추가 이용의향이 있는 자원은 주차장(4.34), 자동차(4.31), 주택(4.26), 전자제품(4.14), 의류(4.07), 사무실(3.96), 음식(3.94), 가구(3.81), 정보(3.72), 경험(3.68) 순으로 확인됨

〈표 4-13〉 생활자원 ‘현재 이용정도’ 및 ‘추가 이용의향’



〈그림 4-5〉 현재 사용하는 자원의 ‘이용정도’ 및 ‘추가 사용의향’



5. 자원제공 이용의향

□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활용 태도’

- 생활에 필요한 물건·지식·경험·정보자원을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하기보다 이용되지 않는 ‘타인의 물건과 자원을 비용 지불로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55.8%, 평균 3.54로 나타남
 - 이러한 공유자원 활용태도는 2015년 도민인식조사 결과 ‘필요하다 43.6%(평균 3.29)’에 비해 높아진 결과임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 결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많을수록, 공유경제 이해와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사무직·생산직·공무원·주부, 50대가 타 연령층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표 4-14〉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활용 태도’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53	0.816	-0.437	직업	사무직	3.64	0.768	2.551***
	군 지역	3.56	0.707			생산직	3.68	0.476	
성별	남 성	3.56	0.773	0.871		판매서비스	3.41	0.884	
	여 성	3.51	0.814			농 업	3.21	0.729	
연령	20대	3.55	0.678	4.426***		공무원	3.60	0.853	
	30대	3.59	0.786			대학생	3.58	0.714	
	40대	3.53	0.741			주 부	3.60	0.775	
	50대	3.70	0.729			전문직	3.59	0.758	
	60대 이상	3.38	0.910			기 타	3.48	0.865	
동거가족	2명 이하	3.49	0.822	1.545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68	
	3명	3.61	0.749		평균 이하		3.42	0.801	
	4명 이상	3.57	0.792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69	0.730	6.467***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34	0.882	11.052***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66	0.796	4.448***
	200~400	3.58	0.745			평균 이하	3.42	0.781	
	400 이상	3.65	0.756						
결혼유무	기 혼	3.55	0.807	0.967	p*(<0.1, p**(<0.05, p***(<0.01				
	미 혼	3.49	0.728						

□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제공 의향’

- 공유경제 방식(소유자원에 대한 비용을 받음)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은 43.5%, 그렇지 않은 경우는 17.1%로 나타남 (평균 3.28)
 - 이러한 공유자원 제공의향은 2015년 도민인식조사 결과 ‘제공하겠다

38.7%(평균 3.15)'에 비해 높아진 결과임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많을수록, 공유경제 이해와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20대·50대가 타 연령층보다 '자원제공' 의향이 높음

〈표 4-15〉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제공 의향'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28	0.909	0.352	직업	사무직	3.33	0.878	1.314
	군 지역	3.25	0.852			생산직	3.39	0.832	
성별	남 성	3.28	0.930	0.207		판매서비스	3.33	0.944	
	여 성	3.27	0.874			농 업	3.05	0.991	
연령	20대	3.38	0.834	4.010***		공무원	3.3	0.733	
	30대	3.21	0.820			대학생	3.48	0.864	
	40대	3.22	0.933			주 부	3.27	0.765	
	50대	3.48	0.758			전문직	3.29	0.913	
	60대 이상	3.17	1.012			기 타	3.19	1.009	
동거가족	2명 이하	3.23	0.944	1.014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41	
	3명	3.26	0.758		평균 이하		3.18	0.946	
	4명 이상	3.33	0.937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43	0.811	-5.755***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11	0.930	6.939***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37	0.891	-3.124***
	200~400	3.34	0.855			평균 이하	3.09	0.960	
	400 이상	3.38	0.902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37	0.891	-3.124***
결혼유무	기 혼	3.28	0.906	0.231	p*〈0.1, p**〈0.05, p***〈0.01				
	미 혼	3.30	0.879						

□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이용 의향'

- 공유경제 방식으로 타인의 자원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44.3%, 그렇지 않은 경우가 16.1%로 나타남(평균 3.29)
 - 이러한 공유자원 자원이용 의향은 2015년 도민의식조사 결과 '사용하겠다' 36.2%(평균 3.13)'에 비해 높아진 결과임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많을수록, 공유경제 이해와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대학생·생산직·사무직·공무원, 20대·50대, 2명 이하의 가족이 '자원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 물건·정보·자원의 '제공의향-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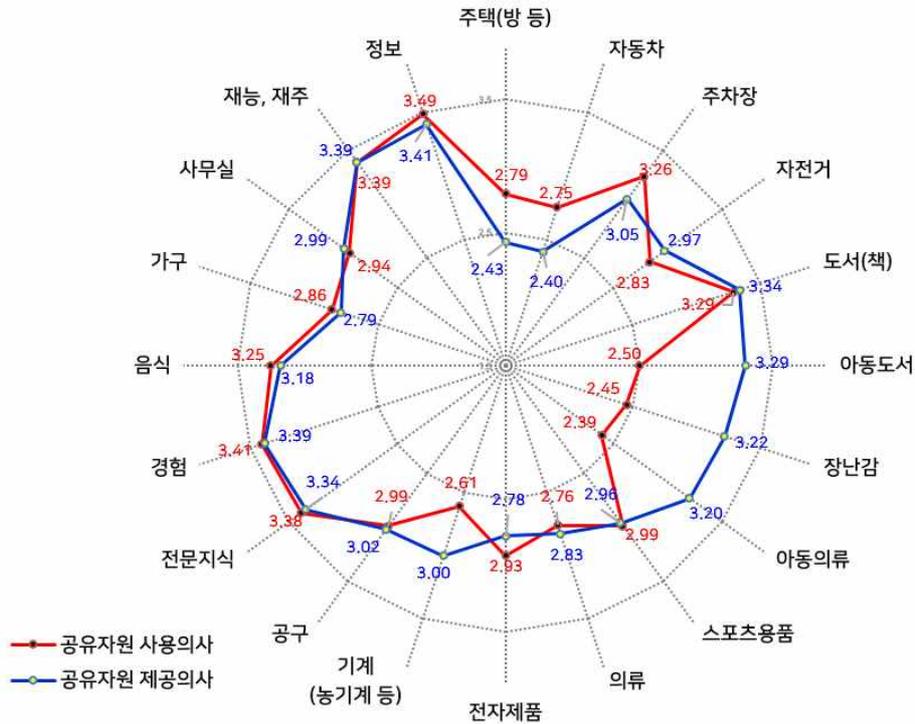
- 물건·정보·자원의 제공의향이 높은 자원은 정보(3.41), 재능·재주(3.39), 경험(3.39), 도서(책)(3.34), 전문지식(3.34), 아동도서(3.29), 장난감(3.22), 아

동의를(3.20), 음식(3.18) 순으로 나타남

〈표 4-16〉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이용 의향' 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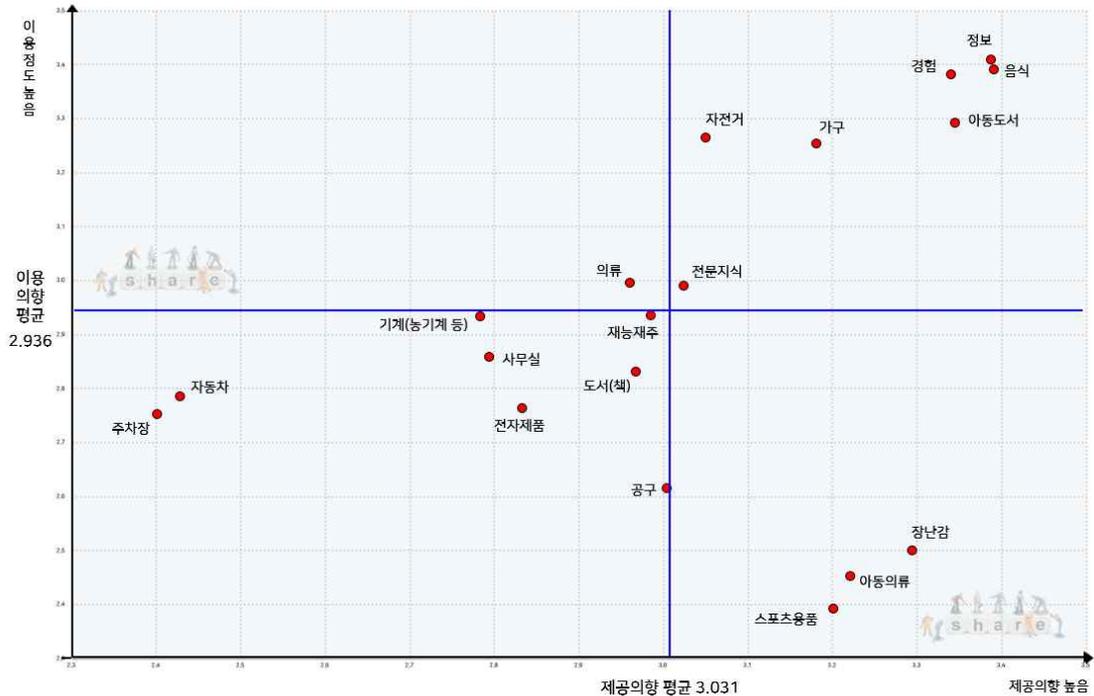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28	0.921	1.052	직업	사무직	3.41	0.824	2.361**
	군 지역	3.35	0.776			생산직	3.46	0.962	
성별	남 성	3.34	0.910	1.344		판매서비스	3.34	0.878	
	여 성	3.26	0.884			농 업	3.13	0.984	
연령	20대	3.41	0.746	4.891***		공무원	3.41	0.775	
	30대	3.22	0.854			대학생	3.52	0.766	
	40대	3.33	0.858			주 부	3.23	0.812	
	50대	3.48	0.766			전문직	3.35	0.869	
	60대 이상	3.13	1.057			기 타	3.12	1.039	
동거가족	2명 이하	3.21	0.963	2.512*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43	
	3명	3.34	0.832		평균 이하		3.19	0.923	
	4명 이상	3.36	0.877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48	0.934	-6.989***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09	0.921	10.155***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39	0.917	-2.929***
	200~400	3.36	0.884			평균 이하	3.07	0.817	
	400 이상	3.43	0.859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39	0.917	-2.929***
결혼유무	기 혼	3.29	0.927	0.245	p*(0.1, p**(0.05, p***0.01)				
	미 혼	3.30	0.820						

〈그림 4-6〉 물건·정보·자원의 '제공 의향' 및 '이용 의향'



- 사용의향이 높은 자원은 정보(3.49), 경험(3.41), 재능·재주(3.39), 전문지식(3.38), 도서(책)(3.29), 주차장(3.26), 음식(3.25), 스포츠 용품(2.99), 공구(2.99) 순으로 확인됨

〈그림 4-7〉 공유경제 방식의 물건·정보·자원 ‘제공 의향’ 및 ‘이용 의향’



□ 물건·정보·자원의 ‘제공의향’에 관한 집단 비교

- 물건·정보·자원에 대한 ‘제공의향’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연령, 월 소득, SNS·인터넷, 공유경제 이해도와 여건’에 따라 생활자원의 제공의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월 소득이 많을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여건의 적극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20대와 5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생활자원의 ‘제공의향’이 높다고 평가됨

〈그림 4-8〉 물건·정보·자원의 ‘제공 의향’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28	0.909	0.352	직업	사무직	3.33	0.878	1.314
	군 지역	3.25	0.852			생산직	3.39	0.832	
성별	남 성	3.28	0.930	0.207		판매서비스	3.33	0.944	
	여 성	3.27	0.874			농 업	3.05	0.991	
연령	20대	3.38	0.834	4.010***		공무원	3.30	0.733	
	30대	3.21	0.820			대학생	3.48	0.864	
	40대	3.22	0.933			주 부	3.27	0.765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50대	3.48	0.758			전문직	3.29	0.913	
	60대 이상	3.17	1.012			기 타	3.19	1.009	
동거 가족	2명 이하	3.23	0.944	1.014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41	0.824	-3.827***
	3명	3.26	0.758			평균 이하	3.18	0.946	
	4명 이상	3.33	0.937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43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11	0.930	6.939***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09	0.960	-5.755***
	200~400	3.34	0.855			평균 이상	3.37	0.891	
	400 이상	3.38	0.902			평균 이하	3.19	0.894	
결혼유무	기 혼	3.28	0.906	0.231	p* <0.1 , p** <0.05 , p*** <0.01				
	미 혼	3.30	0.879						

□ 물건·정보·자원의 ‘이용의향’에 관한 집단 비교

- 물건·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의향’을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연령, 가족 수, 월 소득, 직업, SNS·인터넷, 공유경제 이해정도와 여건’에 따라 생활자원의 이용의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가족이 많을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여건의 적극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50대인 경우, 월소득이 200~400만원인 경우, 대학생·생산직·공무원·사무직인 경우 생활자원의 ‘이용의향’이 높다고 평가됨

〈그림 4-9〉 물건·정보·자원의 ‘이용 의향’ 관련 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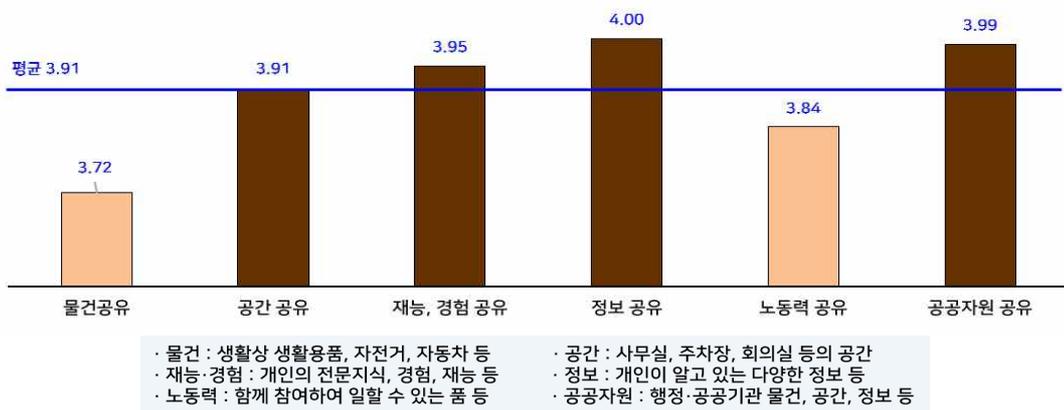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28	0.921	1.052		사무직	3.41	0.824	
	군 지역	3.35	0.776			생산직	3.46	0.962	
성별	남 성	3.34	0.910	1.344		판매서비스	3.34	0.878	
	여 성	3.26	0.884			농업	3.13	0.984	
연령	20대	3.41	0.746	4.891***	직업	공무원	3.41	0.775	2.361**
	30대	3.22	0.854			대학생	3.52	0.766	
	40대	3.33	0.858			주부	3.23	0.812	
	50대	3.48	0.766			전문직	3.35	0.869	
	60대 이상	3.13	1.057			기타	3.12	1.039	
동거 가족	2명 이하	3.21	0.963	2.512*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43	0.837	-4.023***
	3명	3.34	0.832			평균 이하	3.19	0.923	
	4명 이상	3.36	0.877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48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09	0.921	10.155***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07	0.817	-6.989***
	200~400	3.36	0.884			평균 이상	3.39	0.917	
	400 이상	3.43	0.859			평균 이하	3.21	0.868	
결혼유무	기 혼	3.29	0.927	0.245	p* <0.1 , p** <0.05 , p*** <0.01				
	미 혼	3.30	0.820						

6. 공유자원 이용 중요도

□ 공유경제 활용가능 자원 영역별 ‘이용 중요도’

- 공유자원의 이용 중요도는 정보공유(4.00), 공공자원 공유(3.99), 재능·경험 공유(3.95), 공간공유(3.91), 노동력 공유(3.84), 물건 공유(3.72) 순임
- 전체 평균(3.91)의 이상으로 점수를 받은 자원의 유형은 정보, 공공자원, 재능·경험, 공간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0〉 공유경제 활용가능 자원 영역별 ‘이용 중요도’



□ ‘물건 공유’ 이용 중요도에 관한 집단 비교

- ‘물건 공유’의 중요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 월 소득, 직업,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군(농촌) 지역일수록, 월 소득이 낮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생산직·농업 종사자가 물건 공유에 대한 중요도가 타 집단에 비해 높음

〈표 4-17〉 ‘물건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67	0.876	-3.676***	직업	사무직	3.80	0.836	1.863*
	군 지역	3.93	0.810			생산직	3.96	0.838	
성별	남 성	3.71	0.887	판매서비스		3.71	0.918		
	여 성	3.73	0.858	농 업		3.94	0.903		
연령	20대	3.77	0.866	공무원		3.53	0.918		
	30대	3.66	0.942	대학생		3.79	0.890		
	40대	3.72	0.910	주 부		3.70	0.807		
	50대	3.62	0.835	전문직		3.73	0.770		
	60대 이상	3.81	0.810	기 타		3.59	0.945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동거가족	2명 이하	3.75	0.863	1.362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75	0.872	0.778
	3명	3.79	0.826			평균 이하	3.70	0.860	
	4명 이상	3.67	0.911			평균 이상	3.72	0.829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84	0.919	4.093**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하	3.73	0.906	-0.111
	200~400	3.70	0.829			평균 이상	4.00	0.802	
	400 이상	3.63	0.869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47	
결혼유무	기 혼	3.74	0.869	1.045	p* $<$ 0.1, p** $<$ 0.05, p*** $<$ 0.01				
	미 혼	3.66	0.895						

□ ‘공간 공유’ 이용 중요도에 관한 집단 비교

- ‘공간 공유’의 중요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 인터넷·SNS이용,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간 공유경제 이용 중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농촌(군) 지역, 인터넷·SNS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생산직·농업 종사자·대학생이 공간 공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

〈표 4-18〉 ‘공간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89	0.837	-1.970**	직업	사무직	3.86	0.814	1.498		
	군 지역	4.02	0.816			생산직	4.21	0.630			
성별	남 성	3.90	0.849	-0.206		판매서비스	3.95	0.961			
	여 성	3.92	0.825			농업	4.13	0.851			
연령	20대	3.91	0.862	0.684		공무원	3.75	0.915			
	30대	3.97	0.821			대학생	3.94	0.847			
	40대	3.84	0.870			주부	3.89	0.784			
	50대	3.89	0.800			전문직	3.88	0.731			
	60대 이상	3.94	0.825			기타	3.90	0.881			
동거가족	2명 이하	3.90	0.894	1.661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98		0.806	2.303**
	3명	4.00	0.784				평균 이하	3.85		0.857	
	4명 이상	3.86	0.830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93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98	0.847	1.53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9	0.837	0.562		
	200~400	3.89	0.837			평균 이상	4.09	0.751			
	400 이상	3.86	0.847			평균 이하	3.75	0.876			
결혼유무	기 혼	3.92	0.842	0.346	p* $<$ 0.1, p** $<$ 0.05, p*** $<$ 0.01						
	미 혼	3.90	0.825								

□ ‘재능·경험 공유’ 이용 중요도에 관한 집단 비교

- ‘재능·경험 공유’의 중요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 인터넷

넷·SNS이용,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재능·경험 공유 중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농촌(군) 지역, 인터넷·SNS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재능·경험 공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19〉 '재능·경험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93	0.760	-1.845*	직업	사무직	3.92	0.769	1.065
	군 지역	4.06	0.835			생산직	4.00	0.544	
성별	남 성	3.97	0.803	0.7		판매서비스	4.05	0.825	
	여 성	3.94	0.757			농업	3.97	0.852	
연령	20대	4.01	0.832	1.104		공무원	3.84	0.937	
	30대	4.01	0.736			대학생	4.11	0.851	
	40대	3.86	0.788			주부	3.89	0.669	
	50대	3.94	0.727			전문직	4.03	0.653	
	60대 이상	3.97	0.795			기타	3.91	0.842	
동거가족	2명 이하	3.95	0.824	1.609		SNS, 인터넷이용 (평균 3.10)	평균 이상	4.03	
	3명	4.04	0.728		평균 이하		3.89	0.795	
	4명 이상	3.92	0.768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 2.63)	평균 이상	3.95	0.727	-0.364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4.02	0.788	1.938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97	0.833	
	200~400	3.89	0.768			평균 이상	4.19	0.675	9.442***
	400 이상	3.97	0.793			평균 이하	3.73	0.804	
결혼유무	기 혼	3.96	0.754	0.224	p* < 0.1, p** < 0.05, p*** < 0.01				
	미 혼	3.95	0.848						

□ '정보 공유' 이용 중요도에 관한 집단 비교

- '정보 공유'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라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인터넷·SNS이용,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정보 공유 중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인터넷·SNS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도가 타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20〉 '정보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4.00	0.777	0.16	직업	사무직	3.93	0.800	0.942
	군 지역	3.99	0.857			생산직	4.29	0.600	
성별	남 성	4.00	0.843	0.16		판매서비스	4.02	0.869	
	여 성	3.99	0.751			농업	3.97	0.887	
연령	20대	3.99	0.897	1.227		공무원	3.94	0.801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30대	4.11	0.740			대학생	4.10	0.900	
	40대	3.94	0.842			주부	3.95	0.671	
	50대	3.95	0.712			전문직	4.05	0.708	
	60대 이상	4.00	0.780			기타	4.00	0.851	
동거 가족	2명 이하	4.01	0.809	0.626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4.08	0.775	3.008***
	3명	4.06	0.769			평균 이하	3.92	0.802	
	4명 이상	3.98	0.808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4.01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4.00	0.796	0.368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99	0.817	0.345
	200~400	3.96	0.797			평균 이상	4.25	0.704	
	400 이상	4.01	0.793			평균 이하	3.76	0.805	
결혼 유무	기 혼	4.01	0.762	0.401	p*(<0.1, p**(<0.05, p***(<0.01				
	미 혼	3.98	0.875						

□ ‘노동력 공유’ 이용 중요도에 관한 집단 비교

- ‘노동력 공유’의 중요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 가족 수, 월 소득, 직업,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노동력 공유경제 이용 중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여성, 가족이 3명 이하, 월 소득이 낮을수록, 생산직·대학생·농업종사자,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노동력 공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

〈표 4-21〉 ‘노동력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85	0.812	0.796		사무직	3.78	0.772	
	군 지역	3.80	0.812			생산직	4.18	0.612	
성별	남 성	3.78	0.861	-1.899*		판매서비스	3.83	0.895	
	여 성	3.89	0.764			농 업	3.93	0.910	
연령	20대	3.79	0.876	0.954	직업	공무원	3.73	0.807	1.805*
	30대	3.89	0.782			대학생	3.94	0.990	
	40대	3.81	0.863			주 부	3.91	0.741	
	50대	3.78	0.725			전문직	3.89	0.702	
	60대 이상	3.91	0.811			기 타	3.71	0.842	
동거 가족	2명 이하	3.86	0.808	2.597*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88	0.797	1.098
	3명	3.94	0.815			평균 이하	3.82	0.825	
	4명 이상	3.77	0.818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81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92	0.801	2.591*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89	0.821	-1.432
	200~400	3.81	0.796			평균 이상	4.11	0.726	
	400 이상	3.76	0.838			평균 이하	3.59	0.812	
결혼 유무	기 혼	3.86	0.787	1.206	p*(<0.1, p**(<0.05, p***(<0.01				
	미 혼	3.77	0.874						

□ ‘공공자원 공유’ 이용 중요도에 관한 집단 비교

- ‘공공자원 공유’의 중요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결혼유무,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원공유 이용 중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기혼자,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공공기관의 자원공유에 대한 이용 중요도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22〉 ‘공공자원 공유’ 이용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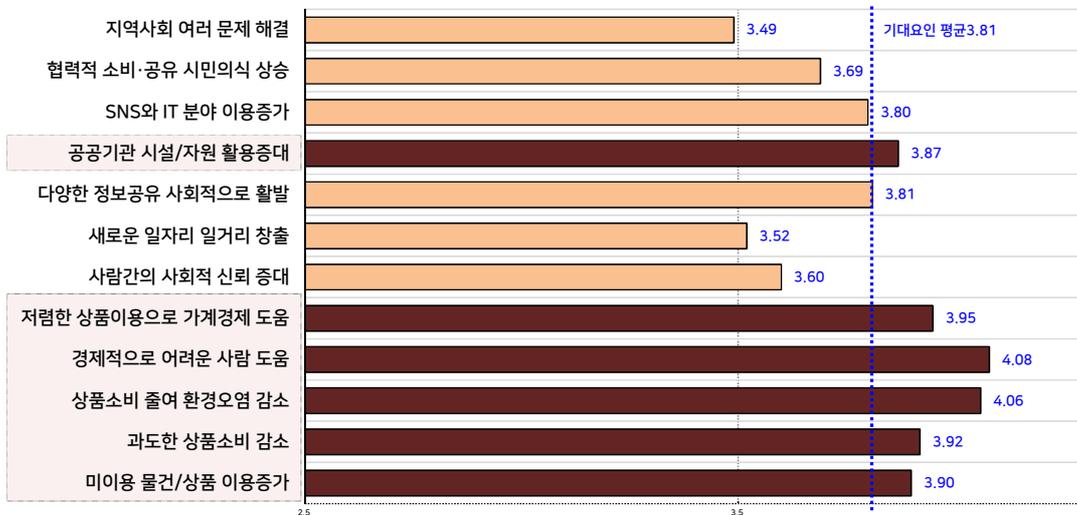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98	0.820	-0.567	직업	사무직	3.96	0.775	1.572
	군 지역	4.02	0.843			생산직	4.29	0.659	
성별	남 성	3.96	0.842	-1.060		판매서비스	4.01	0.930	
	여 성	4.01	0.809			농 업	4.03	0.937	
연령	20대	3.90	0.831	1.645		공무원	3.86	0.895	
	30대	4.01	0.832			대학생	3.92	0.795	
	40대	3.93	0.878			주 부	4.07	0.772	
	50대	3.95	0.752			전문직	4.08	0.710	
	60대 이상	4.09	0.817			기 타	3.87	0.883	
동거가족	2명 이하	3.99	0.823	1.235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4.05	
	3명	4.08	0.807		평균 이하		3.94	0.833	
	4명 이상	3.96	0.844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4.01	0.790	0.669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98	0.798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97	0.860	
	200~400	3.99	0.827		평균 이상	4.27	0.699	10.304***	
	400 이상	3.97	0.855		평균 이하	3.73	0.851		
결혼유무	기 혼	4.03	0.823	2.115**	p* \langle 0.1, p** \langle 0.05, p*** \langle 0.01				
	미 혼	3.89	0.818						

7. 공유경제 기대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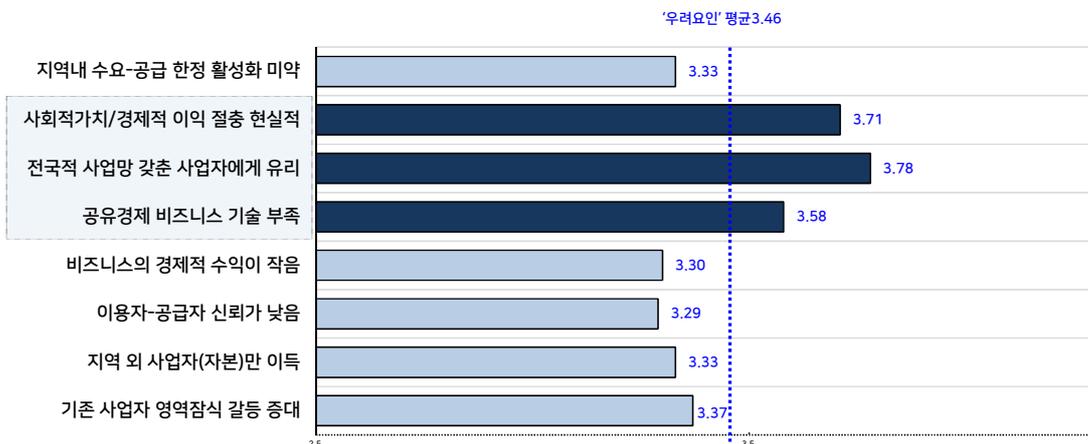
□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요인

-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요인으로 높은 기대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 도움(4.08), 환경오염 감소(4.06), 가계경제 기여(3.95), 과도한 상품소비 감소(3.92), 미이용 자원 이용증가(3.90), 공공기관 시설자원 활용 증대(3.87)’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게 기대하는 내용은 ‘지역사회 문제해결(3.49), 일자리·일거리 창출(3.52), 사회적 신뢰 증대(3.60), 협력적 소비 시민의식 상승(3.69), SNS·IT 이용증가(3.80)’ 등으로 확인됨

〈그림 4-11〉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요인



〈그림 4-12〉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우려요인



□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우려요인

-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우려요인으로는 ‘전국적 사업망 갖춘 사업자에게 유리(3.78),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현실적 절충(3.71)’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적 우려요인은 ‘이용자-공급자의 낮은 신뢰(3.29), 비즈니스 경제적 수익 작음(3.30), 지역외 사업자(자본)만 이득(3.33), 지역내 수요-공급 한정으로 활성화 미약(3.33), 기존 사업자 영역 잠식해 갈등 증대(3.37)’로 확인됨

□ 공유경제 ‘긍정적 기대’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긍정적 기대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직업, 결혼, 인터넷·SNS 이용정도,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의 긍정적 기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기혼자,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23〉 공유경제 ‘긍정적 기대’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79	0.540	-0.923	직업	사무직	3.73	0.510	3.424***	
	군 지역	3.83	0.570			생산직	4.09	0.450		
성별	남 성	3.78	0.560	-0.935		판매서비스	3.86	0.510		2.765***
	여 성	3.81	0.530			농 업	3.84	0.630		
연령	20대	3.73	0.550	1.343		공무원	3.70	0.560		1.705
	30대	3.80	0.500			대학생	3.85	0.580		
	40대	3.76	0.570			주 부	3.86	0.490		
	50대	3.85	0.530			전문직	3.86	0.520		
	60대 이상	3.83	0.550			기 타	3.67	0.580		
동거 가족	2명 이하	3.79	0.530	2.160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86		0.510
	3명	3.85	0.540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하	3.76	0.570		
	4명 이상	3.75	0.550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83	0.530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79	0.540	0.273	공유경제 여건	평균 이하	3.77	0.550	2.604***	
	200~400	3.81	0.560		공유경제 여건	평균 이상	4.05	0.460		
	400 이상	3.78	0.530		공유경제 여건	평균 이하	3.57	0.510		
결혼 유무	기 혼	3.81	0.530	2.604***	p* <0.1 , p** <0.05 , p*** <0.01					
	미 혼	3.70	0.570							

□ 공유경제 ‘부정적 우려’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부정적 우려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연령, 월 소

득, 직업, 결혼, 인터넷·SNS 이용정도,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의 부정적 우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월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 수록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24〉 공유경제 '부정적 우려'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43	0.540	1.031	직업	사무직	3.35	0.480	1.766*
	군 지역	3.39	0.550			생산직	3.59	0.510	
성별	남 성	3.41	0.550	-0.918		판매서비스	3.39	0.550	
	여 성	3.44	0.540			농 업	3.44	0.630	
연령	20대	3.54	0.490	3.743***		공무원	3.42	0.510	
	30대	3.50	0.560			대학생	3.59	0.520	
	40대	3.39	0.540			주 부	3.47	0.540	
	50대	3.34	0.500			전문직	3.44	0.570	
	60대 이상	3.39	0.580			기 타	3.37	0.550	
동거가족	2명 이하	3.42	0.550	0.298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46	
	3명	3.45	0.550		평균 이하		3.39	0.550	
	4명 이상	3.41	0.520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40	0.520	-1.359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45	0.580	3.158*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3.54	0.580	
	200~400	3.44	0.540		평균 이하	3.45	0.570		
	400 이상	3.34	0.490		평균 이하	3.33	0.480		
결혼유무	기 혼	3.54	0.490	-3.262***	p* \langle 0.1, p** \langle 0.05, p*** \langle 0.01				
	미 혼	3.50	0.560						

8.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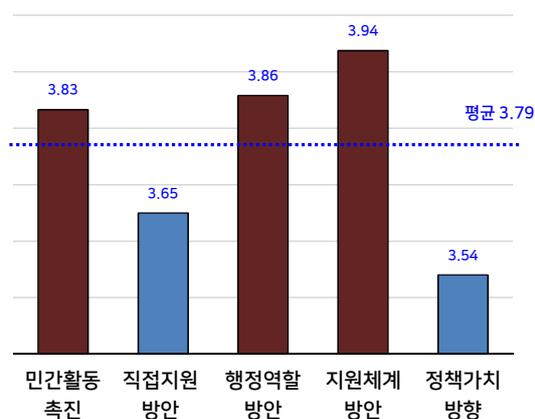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5개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여 분석을 수행함
- 5개의 영역은 ‘①정책가치 방향, ②행정역할 방안, ③직접지원 방안, ④지원체계 방안, ⑤민간활동 촉진’으로 구분하였음

〈표 4-25〉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

- ① 정책가치 방향 : 사회적가치, 공동체, 유희자원
- ② 행정역할 방안 : 조례마련, 제도개선, 행정역할, 공공기관 우선공유
- ③ 직접지원 방안 : 재정지원, 연결지원, 사업자 지원, 안전보험, 지역화폐
- ④ 지원체계 방안 : 플랫폼, 기술개발, 네트워킹, 지원조직
- ⑤ 민간활동 촉진 : 교육, 홍보, 혁신 아이디어 발굴, 혁신기양성, 창업보육, 비즈니스 촉진, 사업자 지정과 관리, 갈등 최소화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세부방안에 대해서 보통 이상 수준(3.79)으로 적극적인 동의를 보임
-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원체계 방안(3.94점), 행정역할 방안(3.86), 민간활동 촉진(3.83), 직접지원 방안(3.65), 정책가치 방향(3.54) 순으로 분석됨

〈그림 4-13〉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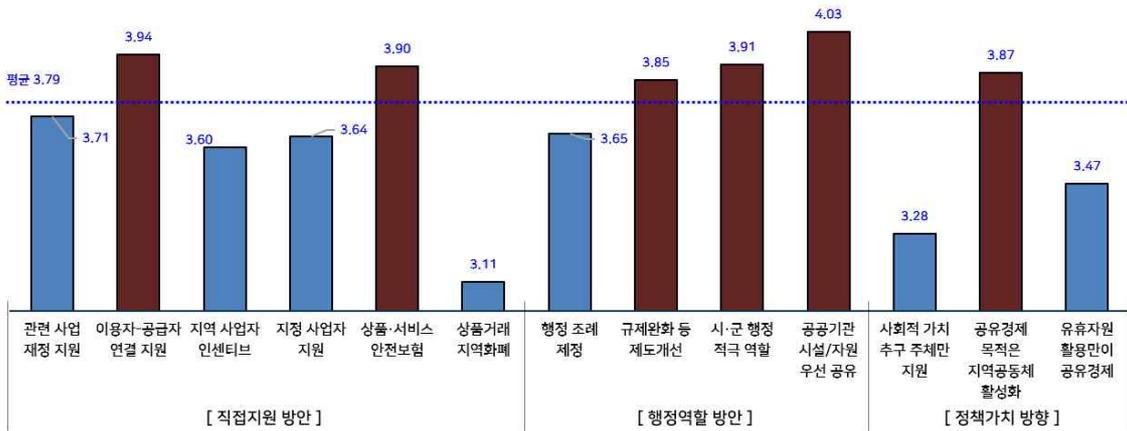


□ ‘정책가치-행정역할-직접지원’ 방안 의견

- 정책가치 방향의 의견은 ‘지역공동체 활성화(3.87), 사회적 가치 추구(3.28), 유희자원 활용만이 공유경제(3.47)’ 순으로 나타남

- 행정역할 방안의 의견은 ‘공공기관 시설 우선공유(4.03), 시군 행정의 적극적 역할(3.91),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3.85), 조례제정(3.65)’ 순으로 분석됨
- 직접지원 방안의 의견은 ‘이용자-공급자연결 지원정책(3.94), 공유경제 상품 안전보험(3.90), 관련 사업 재정지원(3.71), 지정사업자 지원(3.64), 지역사업자 인센티브(3.60), 상품거래 지역화폐(3.1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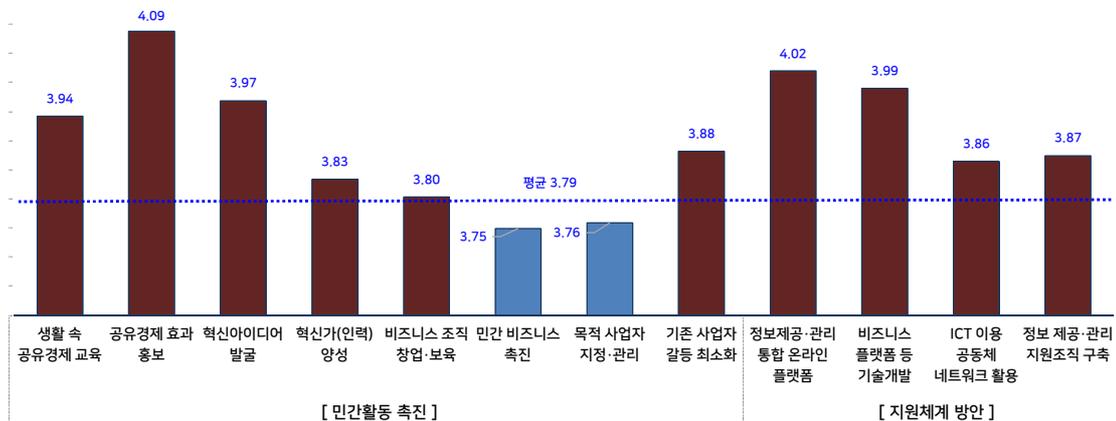
〈표 4-26〉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별 의견 1



□ ‘지원체계-민간활동 촉진’ 방안 의견

- 지원체계 방안 의견은 ‘정보제공 관리 온라인 통합 플랫폼(4.02), 비즈니스 플랫폼 기술 개발(3.99), 정보제공 관리 지원조직 구축(3.87), ICT이용 지역 네트워크 활용(3.86)’ 순으로 나타남
- 민간활동 촉진 의견은 ‘공유경제 효과 홍보(4.09), 혁신 아이디어 발굴(3.97), 생활 속 공유경제 교육(3.94), 기존 사업자와 갈등 최소화(3.88), 혁신가(인력) 양성(3.83), 비즈니스 조직의 창업·보육(3.80), 공유경제 목적에 맞는 사업자의 지정·관리(3.76), 민간 비즈니스 촉진(3.75)’ 순으로 분석됨

〈표 4-27〉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별 의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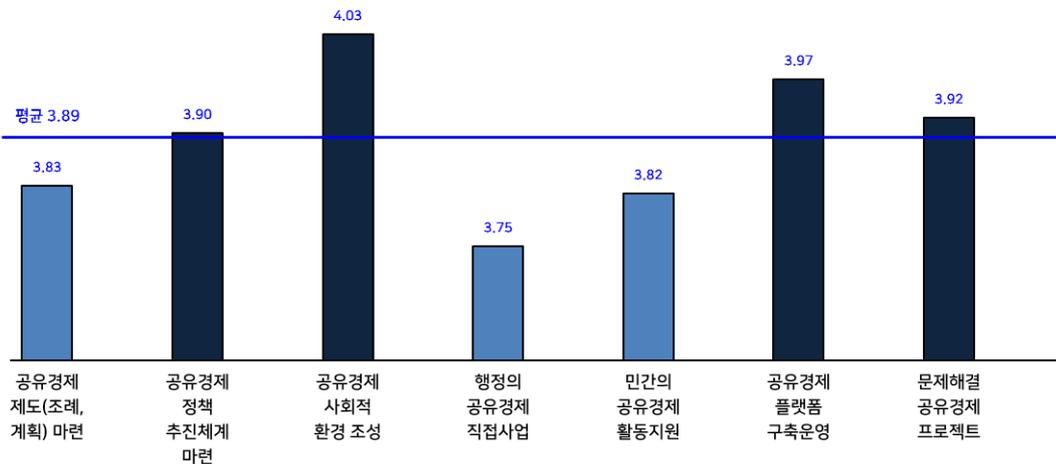


9.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

□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

-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에 대해 우선추진 의견으로는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 조성(4.03점)’을 꼽았음
- 다음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3.97), 문제해결 공유경제 프로젝트(3.92),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 마련(3.90) 순임
- 후속 추진 정책영역으로는 공유경제 제도 마련(3.83),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지원(3.82), 행정의 공유경제 직접사업(3.7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4〉 공유경제 ‘정책 중요도’



□ ‘제도마련’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제도마련’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직업,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 제도마련에 관한 정책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남성, 20대·5~60대,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생산직·농업 종사자·대학생이 공유경제 제도마련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표 4-28〉 공유경제 ‘제도마련’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82	0.772	-1.254	직업	사무직	3.75	0.824	2.173**
	군 지역	3.90	0.858			생산직	4.14	0.591	
성별	남 성	3.89	0.813	1.975**		판매서비스	3.73	0.885	
	여 성	3.78	0.768			농 업	4.04	0.806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연령	20대	3.84	0.714	1.989*		공무원	3.76	0.797	
	30대	3.77	0.821			대학생	3.95	0.777	
	40대	3.74	0.889			주 부	3.73	0.739	
	50대	3.82	0.756			전문직	3.89	0.748	
	60대 이상	3.94	0.747			기 타	3.84	0.785	
동거 가족	2명 이하	3.82	0.773	1.103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86	0.774	0.986
	3명	3.90	0.742			평균 이하	3.80	0.798	
	4명 이상	3.80	0.833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86	0.755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87	0.772	1.532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81	0.830	12.213***
	200~400	3.85	0.776			평균 이상	4.14	0.674	
	400 이상	3.75	0.831			평균 이하	3.55	0.780	
결혼유무	기 혼	3.83	0.791	0.735	p* $<$ 0.1, p** $<$ 0.05, p*** $<$ 0.01				
	미 혼	3.79	0.804						

□ ‘추진체계’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추진체계’ 정책을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직업,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생산직·대학생·농업 종사자·전문직이 공유경제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29〉 공유경제 ‘제도마련’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89	0.761	-0.820	직업	사무직	3.81	0.759	1.900*	
	군 지역	3.94	0.821			생산직	4.18	0.612		
성별	남 성	3.94	0.780	0.119		판매서비스	3.84	0.890		
	여 성	3.86	0.766			농 업	4.03	0.834		
연령	20대	3.84	0.754	1.641		공무원	3.78	0.812		1.476
	30대	3.91	0.788			대학생	4.08	0.795		
	40대	3.86	0.820			주 부	3.83	0.764		
	50대	3.84	0.743			전문직	3.96	0.714		
	60대 이상	4.00	0.754			기 타	3.90	0.732		
동거 가족	2명 이하	3.90	0.780	0.258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94		0.746
	3명	3.91	0.750		평균 이하		3.86	0.791		
	4명 이상	3.86	0.808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93	0.722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90	0.780	0.258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87	0.830	11.243***	
	200~400	3.91	0.750			평균 이상	4.18	0.659		
	400 이상	3.86	0.808			평균 이하	3.64	0.777		
결혼유무	기 혼	3.92	0.775	1.591	p* $<$ 0.1, p** $<$ 0.05, p*** $<$ 0.01					
	미 혼	3.82	0.771							

□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성별, 인터넷·SNS 이용정도, 공유경제 이해정도와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남성,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30〉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4.02	0.731	-0.833	직업	사무직	3.99	0.765	1.429
	군 지역	4.07	0.784			생산직	4.32	0.548	
성별	남 성	4.08	0.752	1.868*		판매서비스	3.96	0.818	
	여 성	3.99	0.733			농 업	3.98	0.832	
연령	20대	4.06	0.792	0.917		공무원	4.10	0.734	
	30대	4.09	0.717			대학생	4.23	0.756	
	40대	3.95	0.805			주 부	3.98	0.700	
	50대	4.01	0.659			전문직	4.03	0.698	
	60대 이상	4.05	0.734			기 타	4.01	0.731	
동거가족	2명 이하	4.05	0.745	1.176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4.13	
	3명	4.09	0.682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하	3.94	0.774	
	4명 이상	3.99	0.776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4.10	0.691	3.116***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98	0.765	0.663	공유경제 여건	평균 이상	4.29	0.598	
	200~400	4.03	0.709		평균 이하	3.95	0.786		
	400 이상	4.05	0.768		평균 이하	3.79	0.780		
결혼유무	기 혼	4.03	0.730	0.071	p* <0.1 , p** <0.05 , p*** <0.01				
	미 혼	4.02	0.782						

□ ‘행정의 직접사업’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의 ‘행정의 직접사업’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연령, 인터넷·SNS 이용정도,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행정 직접사업에 관한 정책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30대/60대 이상,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공유경제의 행정 직접사업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31〉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74	0.841	-0.691	직업	사무직	3.64	0.849	1.316
	군 지역	3.79	0.821			생산직	4.07	0.663	
성별	남 성	3.77	0.868	0.613		판매서비스	3.76	0.892	
	여 성	3.74	0.812			농 업	3.81	0.839	
연령	20대	3.69	0.843	3.168**		공무원	3.57	0.837	
	30대	3.89	0.881			대학생	3.77	0.818	
	40대	3.65	0.933			주 부	3.79	0.762	
	50대	3.66	0.714			전문직	3.77	0.806	
	60대 이상	3.84	0.791			기 타	3.77	0.902	
동거가족	2명 이하	3.76	0.815	2.3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3.83	
	3명	3.85	0.785		평균 이하		3.68	0.848	
	4명 이상	3.69	0.883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73	0.822	-0.863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80	0.842	1.766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78	0.854	
	200~400	3.75	0.788		평균 이상	4.07	0.707	11.412***	
	400 이상	3.67	0.888		평균 이하	3.47	0.840		
결혼유무	기 혼	3.75	0.827	0.399	p*(<0.1, p**(<0.05, p***(<0.01				
	미 혼	3.73	0.870						

□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지원’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지원’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결과 ‘동거가족, 결혼유무,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지원에 관한 정책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동거가족 3명, 기혼자일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민간 공유 경제 활동지원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32〉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지원’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80	0.798	-1.373	직업	사무직	3.84	0.800	0.567
	군 지역	3.89	0.720			생산직	3.71	1.049	
성별	남 성	3.8	0.818	-0.694		판매서비스	3.73	0.898	
	여 성	3.83	0.754			농 업	3.81	0.821	
연령	20대	3.72	0.772	4.924		공무원	3.70	0.816	
	30대	3.97	0.804			대학생	3.81	0.765	
	40대	3.68	0.909			주 부	3.88	0.694	
	50대	3.76	0.701			전문직	3.87	0.717	
	60대 이상	3.92	0.700			기 타	3.82	0.761	
동거가족	2명 이하	3.80	0.766	2.917*		SNS, 인터넷이용	평균 이상	3.92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월 소득 (만원)	3명	3.93	0.739	0.000	(평균3.10)	평균 이하	3.73	0.787	-0.199
	4명 이상	3.76	0.826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82	0.746	
	200 미만	3.81	0.804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83	0.826	10.813***
	200~400	3.81	0.765			평균 이상	4.10	0.680	
	400 이상	3.81	0.802			평균 이하	3.56	0.789	
결혼유무	기 혼	3.84	0.775	1.803*	p*(<0.1, p**(<0.05, p***(<0.01				
	미 혼	3.73	0.798						

□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인터넷·SNS 이용정도, 공유경제 이해정도,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공유경제의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정책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은 적극적일수록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33〉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95	0.764	-1.569	직업	사무직	3.95	0.777	1.235
	군 지역	4.06	0.845			생산직	4.36	0.621	
성별	남 성	4.03	0.779	1.885		판매서비스	3.89	0.797	
	여 성	3.93	0.784			농 업	4.07	0.926	
연령	20대	3.90	0.812	1.447		공무원	3.92	0.867	
	30대	4.08	0.776			대학생	4.00	0.810	
	40대	3.91	0.845			주 부	3.98	0.744	
	50대	3.96	0.753			전문직	3.97	0.723	
	60대 이상	4.00	0.733			기 타	3.93	0.764	
동거 가족	2명 이하	3.94	0.791	0.676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4.06	
	3명	4.02	0.755		평균 이하		3.89	0.809	
	4명 이상	3.97	0.785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4.02	0.745	2.044**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94	0.831	0.286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하	3.92	0.818	
	200~400	3.96	0.742			평균 이상	4.26	0.663	11.279***
	400 이상	4.00	0.800			평균 이하	3.71	0.793	
결혼유무	기 혼	4.00	0.767	1.441	p*(<0.1, p**(<0.05, p***(<0.01				
	미 혼	3.90	0.829						

□ ‘문제해결형 공유경제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집단 비교

- ‘문제해결형 공유경제 프로젝트’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연령, 결혼, 인터넷·SNS 이용정도, 공유경제 여건인식’에 따라 문제해결형 공유경제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30대·60대 이상, 기혼자일수록, 인터넷·SNS 이용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여건인식이 적극적일수록 문제해결형 공유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4-34〉 공유경제 ‘사회적 환경조성’ 정책 중요도 관련 집단 비교

구 분		Mean	S.D	T/F	구 분		Mean	S.D	T/F
지역	시 지역	3.92	0.784	1.441	직업	사무직	3.88	0.799	1.189
	군 지역	3.93	0.756			생산직	4.21	0.63	
성별	남 성	3.94	0.772	0.667		판매서비스	3.82	0.814	
	여 성	3.9	0.785			농 업	3.96	0.806	
연령	20대	3.84	0.824	2.170*		공무원	3.79	0.883	
	30대	4.01	0.759			대학생	3.85	0.884	
	40대	3.81	0.904			주 부	3.93	0.718	
	50대	3.95	0.699			전문직	4.00	0.713	
	60대 이상	3.97	0.705			기 타	3.93	0.764	
동거 가족	2명 이하	3.84	0.786	1.98		SNS, 인터넷이용 (평균3.10)	평균 이상	4.01	
	3명	3.98	0.762		평균 이하		3.84	0.800	
	4명 이상	3.93	0.783		공유경제 이해정도 (평균2.63)	평균 이상	3.96	0.734	1.639
월 소득 (만원)	200 미만	3.88	0.819	0.403		공유경제 여건 (평균 3.29)	평균 이상	4.21	
	200~400	3.92	0.758		평균 이하		3.87	0.828	
	400 이상	3.94	0.783		평균 이하		3.65	0.803	
결혼유무	기 혼	3.94	0.750	1.842*	p*〈0.1, p**〈0.05, p***〈0.01				
	미 혼	3.82	0.859						

□ 공유경제 ‘제공과 이용’ 참여 영향요인

- 공유경제 ‘제공과 이용’에 대한 참여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제공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함
- 종속변수는 ‘제공의향’과 ‘사용의향’이며, 독립변수는 ‘공유경제 이해정도’, ‘공유경제 필요성’, ‘공유경제 사용경험’, ‘긍정적 기대’, ‘부정적 우려’, ‘지역(도시, 농촌)’, ‘성별’, ‘나이’, ‘결혼유무’, ‘가계소득’로 구성함

- 분석결과, ‘공유자원 제공-사용’의 참여 영향요인으로 ‘이해정도’, ‘필요인지’, ‘긍정적 기대’가 정(+)의 영향을 끼치며, ‘부정적 우려’는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유경제 경험여부, 인구통계특성(지역, 성별, 나이, 소득, 결혼 등)은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응활동(교육, 홍보, 사회적 여건 등)이 대응과제로 판단됨

〈표 4-35〉 공유경제 ‘제공과 이용’ 참여 영향요인 분석결과

공유경제 제공의향					공유경제 사용의향						
division		Marginal effect(y=Pr[5])				division		Marginal effect(y=Pr[5])			
		dy/dx	S.E	z	P> z			dy/dx	S.E	z	P> z
x1	공유경제 이해정도	0.01	0.004	2.60***	0.009	x1	공유경제 이해정도	0.015	0.004	3.72***	0
x2	공유경제 필요성	0.063	0.009	7.30***	0	x2	공유경제 필요성	0.068	0.009	7.70***	0
x3	공유경제 경험유무	0.01	0.01	0.97	0.332	x3	공유경제 경험유무	0.008	0.01	0.75	0.454
x4	긍정적 기대	0.057	0.01	5.72***	0	x4	긍정적 기대	0.06	0.01	6.09***	0
x5	부정적 우려	-0.039	0.008	-4.65***	0	x5	부정적 우려	-0.041	0.008	-4.92***	0
x6	지역	0.012	0.009	1.32	0.186	x6	지역	0.001	0.009	0.08	0.937
x7	성별	0.005	0.007	0.75	0.453	x7	성별	-0.004	0.007	-0.58	0.562
x8	나이	0	0	-0.78	0.436	x8	나이	0	0	-1.33	0.185
x9	결혼유무	-0.017	0.011	-1.51	0.13	x9	결혼유무	-0.011	0.011	-1.01	0.311
x10	가계소득	0.002	0.002	0.78	0.438	x10	가계소득	0.003	0.002	1.22	0.222

제5장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체계

1. 조 건 검 토
2. 정 책 가 치
3. 정 책 구 성
4. 비전과 목적
5. 방향과 전략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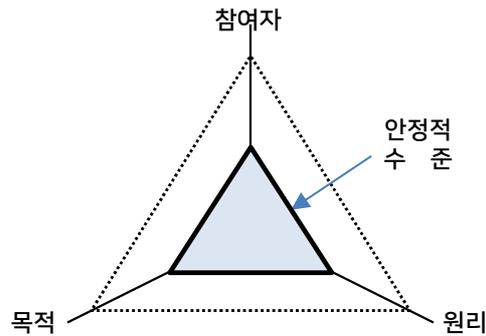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1. 조건검토

- 공유경제 정책은 공유경제의 활동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공유자원의 제공자(대여자), 공유자원의 이용자(수요자), 공유자원을 연결하는 수단(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공유경제 정책의 중점 기준은 ‘정책목적, 자원동원, 참여주체, 작동방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공유경제 정책은 해당 지역의 현실에서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공공영역이 의지이어야 함 → 공공성과 지역사회 혁신의 관점
- 둘째,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을 위한 유희·미활용 자원을 어느 영역에서부터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자원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으로 확장
- 셋째,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의 범위를 정책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를 정해야 함 → 개인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까지 포함
- 넷째, 공유경제 방식의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작동방식으로 플랫폼 형태와 공유경제 중점을 기준으로 정책개발의 패턴을 정해야 함 → 다양한 플랫폼의 보편화를 유도
- 공유경제는 사회혁신과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희·미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유경제 정책은 공공정책으로 성격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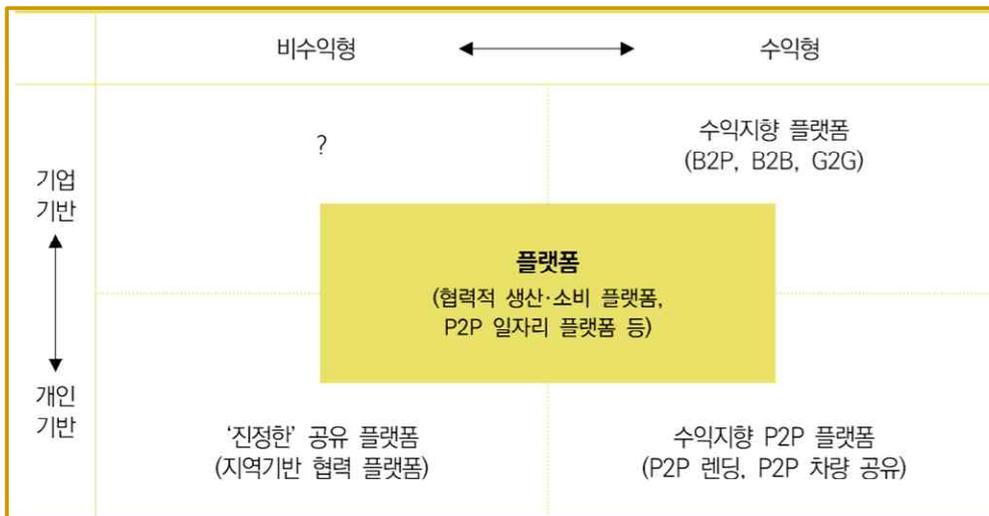
- 공공정책으로서 공유경제 정책은 공유경제의 목적, 원리,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의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

〈그림 5-1〉 공유경제 정책의 수준



자료 : 황영모 외(2015)

〈그림 5-2〉 공유경제 정책개발 영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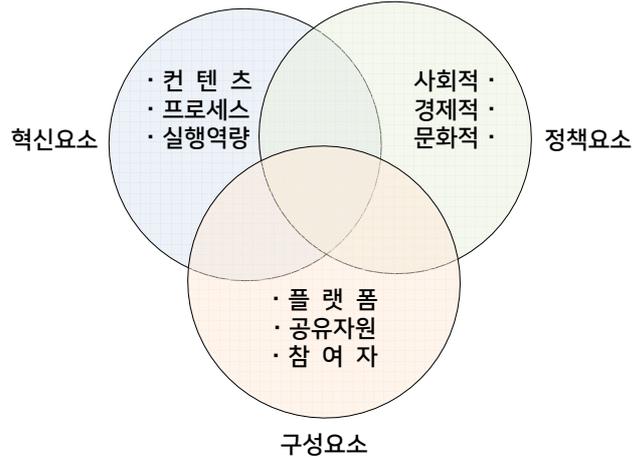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6); : 박건철 외(2016)에서 재인용

- 공유경제의 가치와 목적에 충실하여 지역사회와 개인간의 거래에 기반한 P2P(또는 C2C) 방식으로 협력적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공유 플랫폼이 작동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책을 우선 개발해 나가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촉진하는 B2P, B2B, B2G, G2G 영역으로 확장시켜나가는 혁신적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함

2. 정책가치

- 공유경제 정책은 ‘①공유경제의 본원적인 가치와 목적에 기반하고, ②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하여, ③생활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정책가치로 제안

〈그림 5-3〉 정책개발의 프레임



□ 혁신성

- 혁신성(innovation)은 관행화된 것을 고쳐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기반의 혁신, 문제해결 능력의 혁신, 지역발전 신규 기회요소의 혁신’ 등이 해당
-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를 예리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생활경제에서의 다양한 혁신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회요소로 활용

□ 효율성

- 효율성(efficiency)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척도로 공유가능 자원의 동원과 이용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둠
- 공유가능 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유자원의 이용특성을 살릴 수 있는 비즈니스 방식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 간 여건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방법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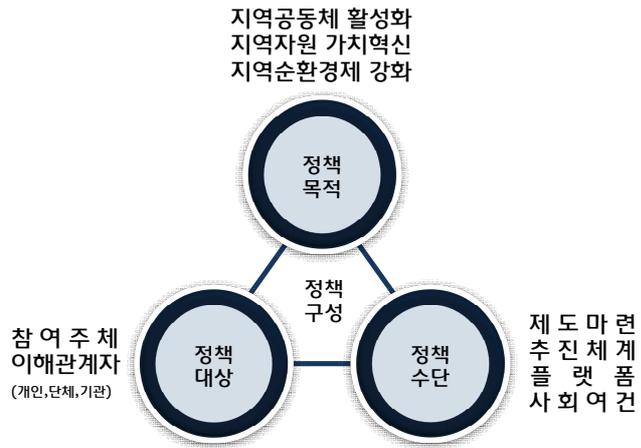
□ 공익성

- 공익성(public interest)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의 공동이익으로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목표·이익·동기를 추구하는 정책여부에 중점
-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원 이용과 개발,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면서 특정한 영리기업(주체)의 수익치증은 지양

3. 정책구성

- 정책은 ‘정책목적, 정책대상, 정책수단’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공유경제 정책요소의 세부내용을 제시

〈그림 5-4〉 공유경제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적

-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
- 공유경제 정책은 ‘지역자원의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설정
- 정책의 목적에서 지역사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 공유활동을 통한 ‘가치의 외부유출’이라는 부작용이 우려

□ 정책수단

-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정책사업’으로 구체화
- 공유경제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마련, 추진체계, 플랫폼, 사회여건’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실효적 수단
- 공공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등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의 참여주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여 참여 유도를 병행

□ 정책대상

- 정책수단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므로 정책대상을 분명히 설정
- 공유경제 정책의 대상은 공유가능 자원의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공유자원의 ‘이용권 이전’을 촉진
-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개인, 단체, 기업 등)의 자원공유를 촉진하는 주체를 정책대상으로 설정

4. 비전과 목적

□ 비전

- 공유사회 ‘작동원리’, 공유경제 ‘정책목적’이 지역사회에 구현되는 그랜드 이미지를 통한 ‘의미발신’을 구체적으로 표현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천년 전복”

- 공유사회 작동원리 : 공유가능 자원의 ‘공유와 협력적 소비’라는 공유경제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공유경제 정책목적 : 공유자원의 이용은 새로운 지역자원의 ‘이용가치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을 반영
- 지역사회 발신의미 : 공유경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이 반영된 ‘공동체’를 표현

□ 목적

- ‘지역사회’에 근거한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공유와 협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발현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자원 가치창출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정보자원의 공유로 자원이용의 가치를 창출함을 제시
- 지역순환경제 확산 : 자원공유의 이용가치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반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사회 구성원 및 전체에서 신뢰에 기반한 공유가치 확산의 시작과 마무리가 ‘지역공동체’임을 명시



5. 방향과 전략

□ 정책방향

● 방향 ①.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 공공기관의 공유 가능한 자원을 우선 공유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정책영역에서 선도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가능 자산의 우선공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와 통계정보 등의 공유,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사업 촉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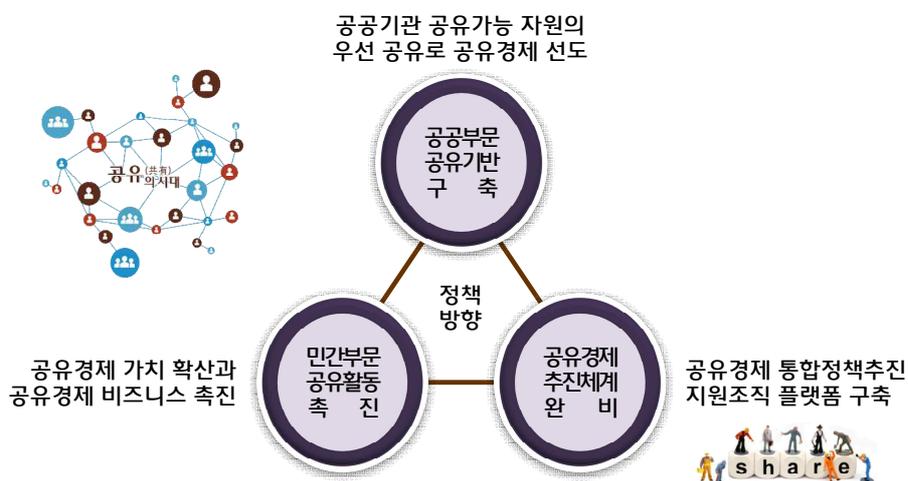
● 방향 ②.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 일상 생활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촉진하고 지원
- 생활 속에 공유경제 가치의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창업·보육 촉진,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의 지정 관리

● 방향 ③.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 공유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담당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평가개선 등

〈그림 5-5〉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



□ 추진전략

방향 ①.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3대 전략)

● 전략 1.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 사회적으로 자원공유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부터 자원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선도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자원은 도민 모두의 공공재이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낮아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이용에 적합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가능한 공간자원 등을 우선 개발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별로 대표적인 공유자원화 사업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

● 전략 2.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정책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정책자료는 대표적인 공유자원으로 사회적 필요도 높아지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책자료와 통계 등의 공공데이터는 도민의 생활경제 상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원으로 성격을 가짐
-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등의 정보자원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경제 방식의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

● 전략 3.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 공유경제의 비즈니스는 공유자원의 제공 및 사용여건은 물론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주체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역의 현실에 기반해야 함
- 지역, 계층, 부문의 필요에 의한 창의적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지역에 특화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공공이 주도해 나가야 함
- 현장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지역(시·군)이 주도성과 창의성을 살려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방향 ②.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3대 전략)

● 전략 4. 생활 속의 공유가치 확산

-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부족하고 상이한 여건에서 생활 속에서 우호적인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 노력이 핵심

- 공유경제의 사회인식 제고와 사회적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층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
- 개인의 다양한 공유경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직화된 학습동아리와 사회 실험실 프로젝트(리빙랩)를 통해 참여형 학습의 장을 마련

● 전략 5.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과 활동(비즈니스)을 통해 목적과 가치가 실현되므로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촉진이 관건
-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 안전과 신뢰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통합적인 공유경제 스타트업과 패키지 지원으로 기획창업을 유도
- 민간부문의 기업주체가 공유자원을 지역사회에게 개방하는 경영전략을 촉진하고, 산업분야의 다양한 공유가능 자원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전략

● 전략 6.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 육성

- 공유경제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면서 혁신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을 공공영역에서 평가와 선발을 통해 지정 육성
-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의 지정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의 공익적 효과를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촉진하는 기준선으로서 기능
- 지정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의 적극적인 사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주체간의 네트워킹을 지원

방향 ③.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3대 전략)

● 전략 7.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운영

- 공유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공유경제 작동체계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의 구축에 성패가 달림
- 다양한 공유자원 정보가 탑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경제의 주체가 상시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포럼을 운영
-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 방식, 내용, 주체를 연결하는 거점이자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수행

● 전략 8. 공유경제 전담조직 안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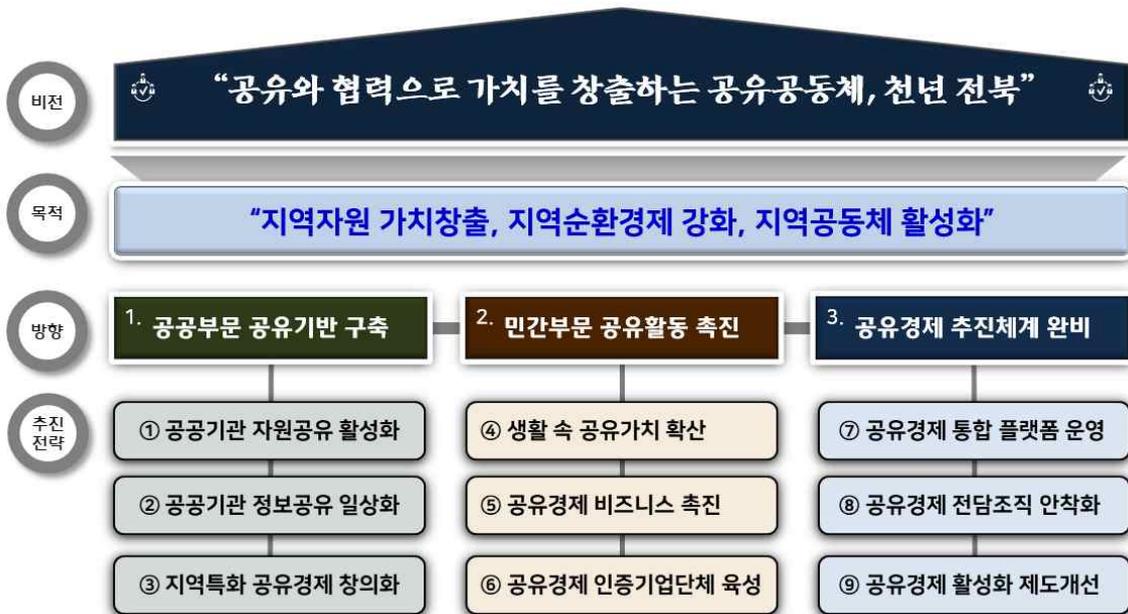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공유경제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을 구축
-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련 정책을 담당할 행정체계(전담부서)의 마련과 인력의 배치로 책임있는 추진체계를 갖추
- 공공부문의 공유기반과 민간부문의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안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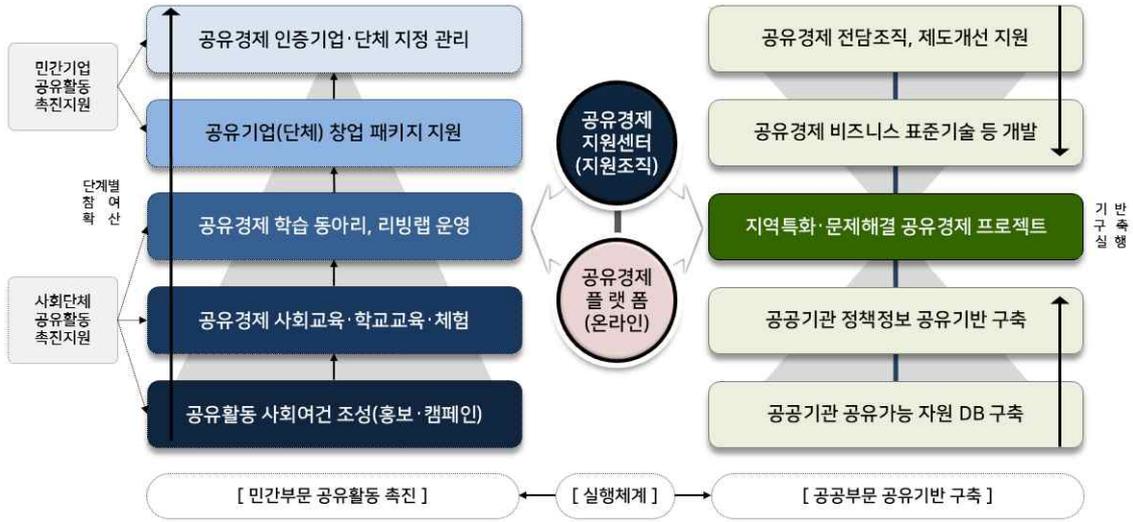
● **전략 9.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 기존의 경제활동의 체계(제도)에서 혁신성을 갖춘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이해관계자의 상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개선이 중요
- 공유경제에 친화적인 제도개선은 다양한 영역의 관련된 주체로부터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포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관건
- 공유경제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책영역에서의 정기적인 개선과 보완 대책을 정책체계 내에서 마련

〈그림 5-6〉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종합)



〈그림 5-7〉 공유경제 정책의 실행구조



제6장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1.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2.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3.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4. 생활 속의 공유가치 확산
5.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6. 공유경제 기업단체 육성
7.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운영
8. 공유경제 전담조직 안착화
9.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 추진목적

- 사회적으로 자원공유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부터 자원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선도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자원은 도민 모두의 공공재이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낮아 공유경제 방식의 자원이용에 적합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가능한 공간자원 등을 우선 개발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별로 대표적인 공유자원화 사업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

□ 세부사업

1-1.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경제 자원화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도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소모임, 세미나,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공유경제 활동의 토대를 마련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가능 자원 (주차장, 회의실, 문화공간, 체육시설, 장비 및 공구)의 개방과 공유

1-2. 공공자원 이용 모니터링 및 현행화

-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및 자원 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
- 공공자원의 DB구축과 공유자원화 사업의 실효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현행화

1-3. 공공기관 '대표 공유자원화' 지원

- 공공기관별 대표 공유자원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 공유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 공공기관 대상으로 ‘대표 공유자원화 프로젝트’ 공모-심사-선정-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1-4. 도 사업부서 ‘공유자원 대표사업’

- 전라북도 정책실행을 담당하는 부서(과) 단위로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자원공유 대표사업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사업부서 단위에서 특색 있는 자원공유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직접(또는 간접) 시행

□ 추진일정

- “단기추진”
- (‘20년) 사업준비 → (‘21년) 사업시행 → (‘22년) 사업확대 및 지속관리

구분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자원화 사업	유형
1-1		신규

1.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관공서)의 자원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여 열린 행정을 체감하게 하고 공공기관 공간을 공유하여 공유자원화 활동의 사회적 여건을 조성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도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소모임, 세미나,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공유경제 활동의 토대를 마련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개년)
- 총사업비 : 2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자원개방 및 공유경제 자원화 사업
- 사업주체 : 전라북도(성과관리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가능 자원 (주차장, 회의실, 문화공간, 체육시설, 장비 및 공구)의 개방과 공유
- (1단계) '미활용 및 한시활용' 되는 공공자원을 발굴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유자원 정보와 이용정보를 제공
- (2단계) '전라북도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에 기관별로 발굴된 공유가능 자원을 업로드하여 공유자원화 사업으로 확장
- (3단계)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 공유자원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을 지정하여 운영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행정관서,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

- 특기사항 : 공공기관 및 부서별 공공자원 공유활동을 BSC 평가에 반영
- 추진단계 : (2020년)비예산 사업으로 공공기관 대상 공공자원화 발굴 유도
→ (2021년부터)공공자원 발굴 경상비 연간 5백만원 반영
- 연계사업 : ‘공유자원 DB 현행화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공유자원의 갱신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5	5	5	5	2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5	5	5	5	20

구분 1-2	공공자원 이용 모니터링 및 현행화 사업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및 자원 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
- 공공자원의 DB구축과 공유자원화 사업의 실효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현행화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68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공자원 이용 모니터링 및 현행화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발굴한 공유가능 자원의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DB 상시적 현행화
 - 데이터 현행화 : 업데이트(update)가 이루어져야 할 데이터가 정체되어 있어 현재와 맞지 않을 때 맞춰주는 작업
- ‘공유자원 모니터링단’이 이용자 관점에서 정기적(반기) 공유자원 이용실태 진단과 업데이트
- 공유자원 DB 수정·보완 이용개선 중점, 새로운 공유자원 수요파악, 현실적 이용개선 도모
- 공유자원 모니터링단 : 70명 규모(시·군별 2~5명) 구성하여 운영, 모니터링단 활동 매뉴얼에 따른 활동 전개
- 추진단계 : 기관별 공유자원 담당자 → 전북 공유경제지원센터 → 공유자원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 공공자원 현행화 → DB 업데이트 및 이용개선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행정관서,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의 공유자원

○ 연계사업 :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자원화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42	42	42	42	168
시·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42	42	42	42	168

구분 1-3	공공기관 ‘대표 공유자원화’ 지원 사업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및 자원의 공유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 공유자원 발굴과 함께 대표 공유자원화를 촉진하여 활성화 모델 구축이 필요
-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대표 공유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모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80백만원 (도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공공기관 ‘대표 공유자원화’ 지원 사업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공공기관별 대표 공유자원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 공유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 공공기관 대상으로 ‘대표 공유자원화 프로젝트’ 공모-심사-선정-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 공공기관별 공공자원의 대표 공유자원화에 필요한 예산 일부(1천만원 이하) 지원(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추진방법 : (2020년) 사업준비 → (2021년) 3개소 → (2022년) 5개소 (이후 매년 5개소)
- 사업예시
 - 전북연구원 ‘도서관 공유 프로젝트’ : 연구원이 보유한 다양한 정책연구 보고서의 주민 공유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구내식당 공유 프로젝트' : 주말 주방기구 활용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 전주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로컬푸드 마켓' : 경매 이후 낮시간 공간을 활용한 직거래 장터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행정관서,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27	45	45	45	162
시·군비	-	-	-	-	-	-
자부담	-	3	5	5	5	18
기 타	-	-	-	-	-	-
합 계	-	30	42	42	42	180

구분	전라북도 사업부서 ‘공유자원 대표사업’	유형
1-4		신규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해 전라북도 사업부서별로 추진 되는 관련 사업 내에서의 공유자원화 사업이 실효적임
- 전라북도 사업부서별 관련 업무에 기반하여 실행 가능한 공유자원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동기를 적극 부여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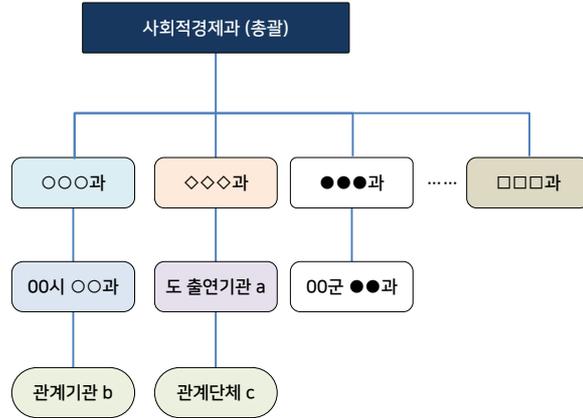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해당 부서 사업비에 별도 계상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사업부서 ‘공유자원 대표사업’
- 사업주체 : 전라북도(사회적경제과)

4. 사업내용

- 도정의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과) 단위로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자원공유 대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사업부서 단위에서 특색 있는 자원공유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직접(또는 간접) 시행
- ‘도 해당부서(과)-시·군 해당부서-유관기관-유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공유자원을 이용한 대표사업 (총괄, 공유경제 정책 사업부서-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매년 해당 사업부서의 자원공유 대표사업의 추진현황을 집계하고, 해당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 도 부서별 공유자원 대표사업 분야 예시
 - 총무과(공공데이터), 정보화총괄과(통계), 도로교통과(자동차), 회계과(공유자산), 체육과(체육시설), 농촌활력과(농촌시설), 농식품산업과(가공시설), 농산

유통과(유통시설), 문화예술과(문화시설), 관광총괄과(관광시설), 산림녹지과(산림시설), 사회복지과(복지시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시설), 보건의료과(보건시설), 해양수산정책과(어촌시설), 기업지원과(기업지원시설), 투자금융과(크라우드펀딩), 법무행정과(교육시설), 자연생태과(생태자원), 주택건축과(건축물) 등



* 사업부서별 공유자원 대표사업 추진 시행, '사회적경제과' 사업추진 총괄

○ 행정(사업부서)-유관기관 연계사업 예시

-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체험휴양마을 시설 공유 프로젝트
-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 전주시(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농식품 가공시설 공유 프로젝트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타	-	-	-	-	-	-
합계	-	-	-	-	-	-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정책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정책자료는 대표적인 공유자원으로 사회적 필요도 높아지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책자료·통계 등의 공공데이터는 도민의 생활경제 상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원으로 성격을 가짐
-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등의 정보자원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경제 방식의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

□ 세부사업

2-1.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정책 및 자료는 공유경제 방식의 대표 자원으로 도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정책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웹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자원을 공유

2-2. 공공기관 '정보공유 행정 시스템' 수립 시행

- 전라북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공통의 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관별 정보공유의 혼선을 줄이고 기준에 입각한 투명한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
-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의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 공통의 정보공유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

□ 추진일정

- “단기추진” 사업
- (‘20년) 사업준비 → (‘21년) 사업시행 → (‘22년) 사업확대 및 지속관리

구분 2-1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설치 운영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정책 및 자료는 공유경제 방식의 대표 자원으로 도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정책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웹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자원을 공유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24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정보공유 소통광장(웹)' 설치 운영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4. 사업내용

- 전라북도·시·군·출자·출연기관 정책정보 공개·공유하기 위한 '정보공유 소통광장(웹)'을 개설·운영하고 오픈 API
- 공공데이터, 정책자료, 회의정보, 연구자료 등 결재문서(원문) 공개 (등급별 공개범위 설정)
- 정책 실명제를 통한 해당사업의 결재문서 공개로 공공기관 정보공유와 투명행정의 일상화
- 방식 1 :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검색 웹의 DB 연결
- 방식 2 : 개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행정관서,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
- 추진단계 : (2020년)공공데이터 정보공개 기준 마련 → (2021년)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공동데이터 공유시범사업 → (2022년)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운영
- 사례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의회 결재문서, 정책정보, 회의정보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 전용웹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50	30	30	30	24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50	30	30	30	240

구분 2-2	공공기관 '정보공유 행정 시스템' 수립 시행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정책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전라북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공통의 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관별 정보공유의 혼선을 줄이고 기준에 입각한 투명한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개년)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정보공유 행정 시스템' 수립과 시행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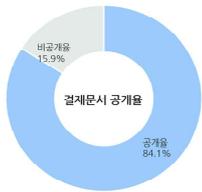
4. 사업내용

-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공통의 정보공유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
- 전라북도 및 시·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한 기준 마련
- 도, 시·군, 산하기관 별 행정문서 및 정책정보의 공개대상(부서/직급), 공개범위(완전/부분공개, 비공개), 정책실명 등의 기준 마련
-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의 콘텐츠인 '맥락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주요 공개정보 서비스' 등을 위한 기관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보자원을 관리 공유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행정관서,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
- 추진단계 : ('20년)공공기관 정보공유 행정 시스템 마련 → ('21년)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운영에 따른 시범운영 → ('22년)모든 기관 일괄 시행

○ 정보공개 주제(예시) : 정보공개 원칙, 개인에 관한 사항, 공무원 관련 정보, 회의 관련 정보, 업무추진비, 사업관련 정보, 부존재 정보,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정보의 공개방법, 시험관련 정보 등

○ 정보공유 기준(예시)

- 정보공개 원칙, 개인에 관한 사항, 공무원 관련 정보, 회의 관련 정보, 업무추진비, 사업관련 정보, 부존재 정보,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정보의 공개방법, 시험관련 정보 등



연도	연도별예산	회계			비율
		연말잔액	연말잔액	연말잔액	
2019년	2,571,000	484,334	1,586,666	38,292	86.707
1월	175,700	30,000	145,700	17.19	9.733
2월	161,000	30,000	131,000	18.63	7.231
3월	159,000	30,000	129,000	18.87	8.197
4월	169,000	30,000	139,000	17.75	8.158
5월	168,000	30,000	138,000	17.86	8.238
6월	165,000	30,000	135,000	18.18	7.716
7월	167,000	30,000	137,000	17.96	8.366
8월	166,000	30,000	136,000	18.13	7.711
9월	167,000	30,000	137,000	17.96	8.366
10월	167,000	30,000	137,000	17.96	8.366
11월	169,000	30,000	139,000	17.75	8.337
12월	170	30	140	17.65	-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타	-	-	-	-	-	-
합계	-	-	-	-	-	-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 추진목적

- 공유경제의 비즈니스는 공유자원의 제공 및 사용여건은 물론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주체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역의 현실에 기반해야 함
- 지역, 계층, 부문의 필요에 의한 창의적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지역에 특화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공공이 주도해 나가야 함
- 현장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지역(시·군)이 주도성과 창의성을 살려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 세부사업

3-1. '지역특화 공유경제' 프로젝트

-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공유경제 자원과 실행역량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이 주도하는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시·군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이 실효적
- 도 매칭사업을 통해 시군이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실행여건에 맞는 대표사업 발굴 추진하도록 공모 지원

3-2. '사회혁신 공유경제' 프로젝트

- 현장 필요와 요청에 의해 사업 및 활동이 되도록 유도, 관련 주체의 참여 통한 공모방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실질적 비즈니스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문제를 계층·부문·지역별 유형화, 창의적 공유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하여 매년 일정 건 선정하여 지원

□ 추진일정

- “단기추진” 사업
- (‘20년) 사업준비 → (‘21년) 사업시행 → (‘22년) 사업확대 및 지속관리

구분 3-1	‘지역특화 공유경제’ 프로젝트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의 현실에 기반한 지역특화 공유경제 관련 사업과 활동이 필요
-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공유경제 자원과 실행역량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이 주도하는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시·군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이 실효적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총 1,05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선도 지역특화 공유경제 선도 프로젝트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²²⁾

- 기본개념
 -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수준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특화’의 공유활동 협업 프로젝트
-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계층·부문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창의적인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비즈니스)가 이뤄지도록 ‘지역특화 공유경제 비즈니스 프로젝트’ 운영
- 도 매칭사업을 통해 시·군의 창의적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역사회 공유경제 관련 주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유도(30:70)
- 해당 시·군이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실행여건에 맞는 대표 사업을 발굴해

22) 황영모 외(2015)를 참고하였음

추진하도록 지원

○ 예시

- 전주시 '청년교류공간 프로젝트' :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공유를 위한 베이스캠프
- 익산시 '공간쉐어링 프로젝트' : 잠자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시설 공유하는 프로그램
-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프로젝트' : 주민자치센터에 장난감 대여 및 새싹놀이터 운영

[공유자원별 비즈니스 이용 전략]

- 민간의 다양한 창의적 이용방식을 추동하면서 공공자원 중심으로 공유를 확대
- 정책영역이 주도, 특정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유경제 특성화 이용전략' 필요
- 물건 공유영역
카셰어링, 자전거 쉐어링, 공유서가, 공유도서관, 아이웃·장난감 공유, 의류공유, 공구공유, 기계공유, 농기계공동이용, 가공시설공유, 의료장비 공동활용 등
- 공간 공유영역
주차장 공유, 쉐어 하우스, 도시민박·농촌민박, 공개공지 프로젝트, 대학생 주거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
- 지식 공유영역
맞춤형강의배달제, 사회적경제조직 정보공유 시스템, 도농상생 농업일자리지원센터, 도시인력, 역사공유, 문화공유, 예술공유, 휴먼라이브러리, 품앗이은행, 소셜다이닝
- 정보 공유영역
정책정보 공유, 정책통계 공유, 사진은행, 영상자료 아카이브 등 정부 3.0 해당영역

- 사업량 : 매년 3개소 (2개년간 지원, 개소당 1억원)
- 사업대상 : 시·군,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 (지역의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동참여 가능)
- 추진단계 : 사업지침 마련(~1월) → 사업 설명회(2월) → 공모 및 선정(3월) → 1차년도 사업시행(~12월) → 실적보고 및 컨설팅(12월) → 2차년도 사업시행(~익년 11월)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익년 6월) → 실적보고 및 평가(~익년 11월) → 성과보고 및 확산(익년 12월~)
- 연관사업 : '사회혁신 공유경제' 프로젝트 (사회혁신 활동에 초점)

공유경제 비즈니스 전략 예시- '일반형 전략과 특화형 전략'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45	90	90	90	315
사·군비	-	105	210	210	210	735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50	300	300	300	1,050

구분 3-2	‘사회혁신 공유경제’ 프로젝트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가 갖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와 직결되므로 사회혁신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촉진이 필요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방향 속에서 전라북도가 시·군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이 실효적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총 1,75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을 위한 공유경제 프로젝트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기본개념
 - 네트워크 정보경제를 통해 사회인식의 방법을 개선하고, 열린 행동의 범위와 그 행동을 통해 가능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협업 프로젝트
 - 사회혁신 공유활동의 효과는 ①지역경제의 활성화, ②다양한 도시 및 사회의 문제해결에 관한 실질적 대안으로 꼽힘
 - 사회혁신 공유경제 사례 : 뉴욕(Trees for Cars), 로테르담(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프라이부르크 보방(자동차 없는 마을), 메테인(Sharing without Sharing), 런던(밀레니엄 프로젝트-테이트 모던 미술관), 갈다카오(연대 냉장고), 로스앤젤레스(The Summer Night Light Program)
- 현장 필요와 요청에 의해 사업 및 활동이 되도록 유도, 관련 주체의 참여 통한 공모방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실질적 비즈니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황영모 외, 2015)
- 지역사회 문제를 계층·부문·지역별 유형화, 창의적 공유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스 모델을 공모하여 매년 일정 건 선정하여 지원

- 사업량 : 매년 3개소 이내 (2개년간 지원, 개소당 1억원)
- 사업대상 : 시·군,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준공공기관 등 (지역의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동참여 가능)
- 추진단계 : 사업지침 마련(~1월) → 사업 설명회(2월) → 공모 및 선정(3월) → 1차년도 사업시행(~12월) → 실적보고 및 컨설팅(12월) → 2차년도 사업시행(~익년 11월)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익년 6월) → 실적보고 및 평가(~익년 11월) → 성과보고 및 확산(익년 12월~)
- 연관사업 : ‘지역특화 공유경제’ 프로젝트 (공유활성화 활동에 초점)

분 야	주 요 내 용	사 례
일자리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일자리 제공	MobileWorks, Samasource, Jana
재난대응	인력, 숙박, 자원 등의 공유를 통한 재난 대응	Mission 4636, 에어비앤비의 재난 대응 프로그램, 우샤히다, Tech-In Disaster
펀 디ン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Cardarse, Idea.me, Kangu.org, Ketto.org
교 육	지식·경험·재능 공유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비용감소	Wikipedia Zero, Zaya Education, Micro Cloud
도시혁신	IC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사회 기반 도시혁신	Creative Currency, OpenIDEO, World Bank Health and Sanitation Hackthons
시민참여 도시문제 해결	디지털 플랫폼 공유를 통한 시민 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Code for, Wikimapa, CG Net Swara

자료 : 박건철 외(2016)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75	150	150	150	525
사군비	-	175	350	350	350	1,225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250	500	500	500	1,750

생활 속의 공유가치 확산

□ 추진목적

-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부족하고 상이한 여건에서 생활 속에서 우호적인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 노력이 핵심
- 공유경제의 사회인식 제고와 사회적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층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
- 개개인의 다양한 공유경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직화된 학습 동아리와 사회 실험실 프로젝트(리빙랩)를 통해 참여형 학습의 장을 마련

□ 세부사업

4-1. 공유경제 ‘교육과 공유체험 프로그램’

- 공유경제의 가치와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은 공유경제 활성화의 사회적 인프라 마련의 핵심요소
-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마련하여 도민 모두의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4-2. 공유경제 ‘홍보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

- 생활 속에서의 공유경제를 친숙하게 인식하고 참여 또는 따라할 수 있는 정보, 공간,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실천 프로그램 제공
- 생활 속에서 공유경제 의미를 알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유경제 시민 캠페인 프로그램 진행

4-3. 공유경제 활성화 ‘혁신 아이디어’ 발굴

- 공유를 통한 사회·경제·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방안, 공공과 민간자원의 활용

을 높이는 공유방안을 창의적으로 개발 촉진

- 도민을 대상으로 유희자원과 미활용 자원을 이용하는 공유사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

4-4.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및 리빙랩’ 운영

- 공유경제 방식의 생활과 사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기 위한 학습의 장 마련
- 지역주민 참여형 학습의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여 생활 속에서의 공유경제 역량과 비즈니스 준비의 사회적 실천토대를 마련

4-5.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

- 공유와 소통을 통해 개인주의와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희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도모
- 공유자원이 밀집한 공유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실질 체험을 통해서 개인 소유와 소비중심의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

□ 추진일정

- “우선추진” 사업
- (‘20년) 사업시행 → (‘21년) 사업확대 → (‘22년~) 사업확대 지속관리

구분 4-1	공유경제 ‘교육과 공유체험 프로그램’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의 가치와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은 공유경제 활성화의 사회적 인프라 마련의 핵심요소
-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마련하여 도민 모두의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1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총 72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공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공유경제 기반은 누구나 생활 필요를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활동으로 할 사회적 인식 조성
- 도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전면 시행
- 세부사업
 - ① 성인교육 프로그램
 -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 스쿨’과 ‘공유경제 체험 프로그램’ 등
 - 공유경제 스쿨 개설 운영 (분기별 1기 총 4기 과정, 과정별 30명)
 - 공유경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기별 총 4회 공유경제 체험 한마당 개최)
 - 운영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 사업비 : 공유경제 스쿨 40백만원, 체험 프로그램 40백만원(도비 100%)
 - ② 학교교육 프로그램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 교육’ 등
-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교과과정(사회과)에 공유경제 교육 내용 반영
- 학생 대상 공유경제 교재개발 및 담당교사 연찬회 개최 등
- 운영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과 도 교육청 협업사업
- 사업비 : 매년 100백만원(도비 70%, 교육청 30%)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150	150	150	150	6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타	-	30	30	30	30	120
합계	-	180	180	180	180	720

구분 4-2	공유경제 ‘홍보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지원이 필요
- 생활 속에서의 공유경제를 친숙하게 인식하고 참여 또는 따라할 수 있는 정보, 공간,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실천 프로그램 제공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제1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총 4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홍보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생활 속에서 공유경제 의미를 알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송 언론 홍보, 공보물 홍보 등)
- 지역 시민사회단체(소비자, 환경, 시민 등)와 공동으로 공유경제 시민 캠페인 프로그램 진행
- 세부사업
 - ① 공유경제 홍보 기획 프로젝트
 - 공유경제 따라하기, 공유씨의 하루, 우리지역 공유자원 알아보기 등
 - 공유경제 효과, 도민의 실천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기획에 초점
 - 운영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 사업비 : 매년 50백만원(도비 100%)
 - ② 공유경제 시민 캠페인

- 시민사회단체의 공모를 통한 ‘이달의 공유경제 캠페인(이벤트)’ 활동
-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초점
- 운영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지역언론과의 공동 캠페인
- 사업비 : 매년 50백만원(도비 100%)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100	100	100	100	4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타	-	-	-	-	-	-
합계	-	100	100	100	100	400

구분 4-3	공유경제 활성화 ‘혁신 아이디어’ 발굴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로 공유경제 생활과 정책화를 위한 홍보와 도민참여 효과 도모
- 공유를 통한 사회·경제·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방안, 공공과 민간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공유방안을 창의적으로 개발 촉진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8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도민을 대상으로 유휴자원과 미활용 자원을 이용하는 공유사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
- 공유경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로 공유경제 생활과 정책화를 위한 홍보와 도민참여 효과 도모
- 시상내역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매년 7개 내외 선정
- 세부내용
 - 주제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합, 사업화 가능한 공유경제 아이디어
 - 공간·물품·경험·재능 등 공유를 통해 경제, 환경, 사회 등 도시문제의 해결방안
 - 공공과 민간의 유휴자원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공간 공유에 관한 활성화 방안
 - 전라북도만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유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시행중인 공유사업의 활성화 방안

- 추진절차 : 도민공고(2월) → 공모접수(~4월) → 심사·평가(5월) → 발표 및 시상(6월) → 결과 공유 및 확산(7월~)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20	20	20	20	8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20	20	20	20	80

구분 4-4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및 리빙랩' 운영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 방식의 생활과 사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기 위한 학습의 장 마련
- 지역주민의 참여형 학습의 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여 생활 속에서의 공유경제 역량과 비즈니스 준비의 사회적 실천토대를 마련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36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및 리빙랩 운영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①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 공유방식 사회혁신·비즈니스 발굴 위한 학습 프로그램
 - '공유경제 학습동아리'란,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유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모임
 - 입문 학습동아리 : 공유경제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거나 공유경제 비즈니스 조직의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5인 이상의 모임
 - 기업 학습동아리 :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과 단체의 실무자 및 임원 업종별·분야별 사회적경제 기업 연합인 등 5인 이상의 모임.
 - 학습동아리 매년 20개팀, 동아리 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20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
- ② 공유경제 리빙랩 : 공유생활 현장 연구실, 사용자·전문가·공공·민간 공동참여
 - '공유경제 리빙랩'이란 생활 속 실험실로 생활현장에서 사용자 주도로 공유

- 경제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
- 청년학생,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공유경제 비즈니스 방식의 사업과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모임
 - 매년 5개 리빙랩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천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
- 사업대상 : 도민(개인, 단체, 조직, 학교, 기업) 대상 공모심사 방식
 - 지원내역 : 교육비, 사업진행비, 탐방비, 업무진행비 등
 - 추진절차 : 사업공고(2월) → 활동계획 평가선정(3월) → 1차 지원금 지원(4월) → 학습동아리 운영(~8월) → 활동점검(9월) → 2차 지원금 지원(10월) → 성과발표·결과보고(12월) → 성과 공유·확산(1월)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90	90	90	90	36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90	90	90	90	360

구분 4-5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	유형 계속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와 소통을 통해 개인주의와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희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도모
- 공유자원이 밀집한 공유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실질 체험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소유 방식의 생활개선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6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2개년)
- 총사업비 : 48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
- 사업주체 : 전라북도

4. 사업내용

- 기본개념 : 마을단위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 마을과 소지역 단위에서 유희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경제 방식은 공유경제의 목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역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생활경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사업대상 :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 지원내역 : 공유공간 조성, 시설 리모델링, 장비, 물품구입, 운영비 등
- 사업비 : 개소당 160백만원 이내, 총 5개소 (기 조성 1개소)
- 추진절차
 - 1단계(사업준비, 2018년) : 사업 도입방안 검토

- 2단계(시범조성, 2019년) : 시범마을 지정(1개소), 지역별 여건, 사업내용 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한 시범마을 조성, 컨설팅과 사업평가를 통한 환류 및 인식 확산
- 3단계(확대조성, 2020년 이후) : 시범마을 지정(매년 1개소), 공유 인프라 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48	48	48	-	-	144
사·군비	112	112	112	-	-	336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60	160	160	-	-	480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 추진목적

-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과 활동(비즈니스)을 통해 목적과 가치가 실현되므로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촉진이 관건
-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 안전과 신뢰의 위협요인(리스크)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통합적인 공유경제 스타트업과 패키지 지원으로 기획창업을 유도
- 민간부문의 기업주체가 공유자원을 지역사회에게 개방하는 경영전략을 촉진 하고, 산업분야의 다양한 공유가능 자원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전략

□ 세부사업

5-1. 공유경제 ‘비즈니스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 공유경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예비)창업팀의 개별역량을 높이고 공유경제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통합적인 스타트업 정책을 지원
- 통합적 공유경제 스타트업 지원, 공유경제 비즈니스 창업을 위한 6단계 패키지 지원

5-2. 공유경제 ‘비즈니스 표준기술’ 개발 지원

- 민간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창업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원
-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쌍방향 정보제공, 결제 시스템 등) 표준기술을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보급

5-3.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상품’ 개발 지원

- 플랫폼을 통한 공유자원 이용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거래를

지원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보험’ 제도를 마련

-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법을 통해 보호 적용의 기준을 마련(Gig Economy 문제시정), 플랫폼으로 이용권 거래 시 안전보험 상품 적용 등

5-4. ‘민간기업 공유가치 창출 자원공유’ 촉진

- 민간기업이 보유한 공유가능 자원의 생활속 도민공유로 촉진·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민간기업의 공유가능 자원을 도민이용 개방에 초점을 두어 참여 지원, 인센티브 부여

5-5. 산업(농공)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도내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자원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생과 협력하는 공유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공동 브랜드, 공동 R&D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

5-6. 공유경제 팝업 팩토리 구축

- 스타트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초기 상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를 기존의 유희시설 및 설비 등과 연계하는 공유 시스템 구축
- 유희 시설 및 생산공간을 공유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비즈니스 기반과 성장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우선추진” 사업
- (‘20년) 사업시행 → (‘21년) 사업확대 → (‘22년~) 사업확대 지속관리

구분 5-1	공유경제 '비즈니스 스타트 업 패키지' 지원	유형 계속
-----------	---------------------------------	----------

1. 목적 및 필요성

- 선도적 공유경제 비즈니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민들의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실질적 공유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필요
- 공유경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예비)창업팀의 개별역량을 높이고 공유경제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통합적인 스타트업 정책을 지원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개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비즈니스 창업을 위한 6단계 패키지 지원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1단계) 창업교육 : 공유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아카데미 (30명)
- (2단계) 창업파일럿 : 창업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창업실습 프로그램 지원 (20명)
- (3단계) 심화멘토링 : 창업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주체에 대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전문가의 1:1 멘토링 컨설팅 지원 (20명)
- (4단계) 유망업체 선발 : 창업파일럿과 심화멘토링을 통해 공유경제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은 사업조직을 선발 지원 (10명, 조직당 3천만원)
- (5단계) 성장지원 : 유망업체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 컨설팅과 정책사업 연계 지원 (10명)
- (6단계) 간접지원 :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의

지원 (희망기업)

- 사 업 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매년 2억원)
- 사업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대학생, 청년 등
- 추진절차 : 사업공고(3월) → 창업교육(~4월) → 창업파일럿(~7월) → 심화멘토링(~8월) → 유망업체 선정지원(~8월) → 성장지원(~11월) → 성과발표(12월) → 성과 공유·확산(1월)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160	160	160	160	160	800
도 비	40	40	40	40	40	2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구분 5-2	공유경제 ‘비즈니스 표준기술’ 개발 지원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민간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창업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원
- 공유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쌍방향 정보제공, 결제시스템 등) 표준기술을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보급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사업량 : 온라인 플랫폼 표준기술 개발 공모선정 (매년 3개 프로그램)
- 사업비 : 프로그램 당 5천만원~1억원, 개발자 1차 선정 후 프로그램 완성도(평가)에 따른 2차 차등지급
- 사업대상 : 도내 프로그램 기술개발자(개인, 기업, 단체, 대학 등)
 - ※ 도외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우 도내 관련 주체와 협약(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대상 : 도내 프로그램 기술개발자(개인, 기업, 단체, 대학 등)
- 추진절차 : 공모(1월) → 프로그램 개발자 1차 선정(2월) → 프로그램 개발 협약(2월) → 프로그램 개발비 1차 지급(3월) → 프로그램 개발(~11월) → 프로그램 개발평가 → 프로그램 개발비 2차 지급(12월) → 성과 발표(1월) → 성과 공유·확산(2월)

○ 오픈소스(open source) : 무상으로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만든 것
-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는 해당 플랫폼이나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한 앱을 만들 때 공개하여 개발 툴과 API 등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300	300	300	300	1,2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300	300	300	300	1,200

구분 5-3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상품’ 개발 지원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안고 있는 제공자-사용자 간의 비즈니스 신뢰에 관한 리스크 관리와 안전망 마련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주목되고 있음
-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망을 보험의 방식으로 마련하여 공유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공유경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음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2개년)
- 총사업비 : 180백만원 (도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보험 상품개발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기본배경
 - 제공자 입장 : 서비스나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의 위험은 공유하는 재산에 대한 도난, 손괴 등,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교해서 허술한 계약조건과 고객에 관한 잠재적 책임 등도 리스크 요인
 - 소비자 입장 : 보수에 대해서 보장성이 부족, 개인의 안전과 이용시설 유지가 미흡으로 사고 발생 시 기존의 전통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위험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등
- 플랫폼을 통한 공유자원 이용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거래를 지원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보험’ 제도를 마련
-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법을 통해 보호 적용의 기준을 마련(Gig Economy 문제시정), 플랫폼으로 이용권 거래 시 안전보험 상품 적용 등

- 적정 사업주체를 선정하여 비즈니스 안전 상품개발에 관한 협의를 통해 전라북도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사업량 : 공유경제 안전보험 상품 개발비 (2년간 매년 3개 프로그램)
- 사업비 : 우선협상 적정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 당 3천만원
- 사업대상 : 보험관련 사업주체 (도내 지역 금융기관 포함)
- 추진절차 : 공모(1월) → 우선협상 조직 선정(3월) → 프로그램 개발 협약(3월) → 프로그램 개발비 1차 지급(4월) → 프로그램 개발(~11월) → 프로그램 개발평가 → 프로그램 개발비 2차 지급(12월) → 성과발표(1월) → 성과공유·확산(2월)
- 관련사례
 - 영국 로이즈보험, 스위스 취리히보험, 미국 보험사 무소(ISO)는 홈쉐어링 위험 대비한 보험 상품을 개발 판매 중
 - 일본 미쓰이스미토모해상(三井住友海上)은 도난, 화재, 파손 등에 대비한 민박전용 보험을 출시
 -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이 '1일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1일 자동차보험은 기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과 다르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타인의 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 가능)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81	81	-	162
사군비	-	-	-	-	-	-
자부담	-	-	9	9	-	18
기타	-	-	-	-	-	-
합계	-	-	90	90	-	180

구분 5-4	‘민간기업 공유가치 창출 자원공유’ 촉진사업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민간기업이 보유한 공유가능 자원의 생활속 도민공유로 촉진·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2.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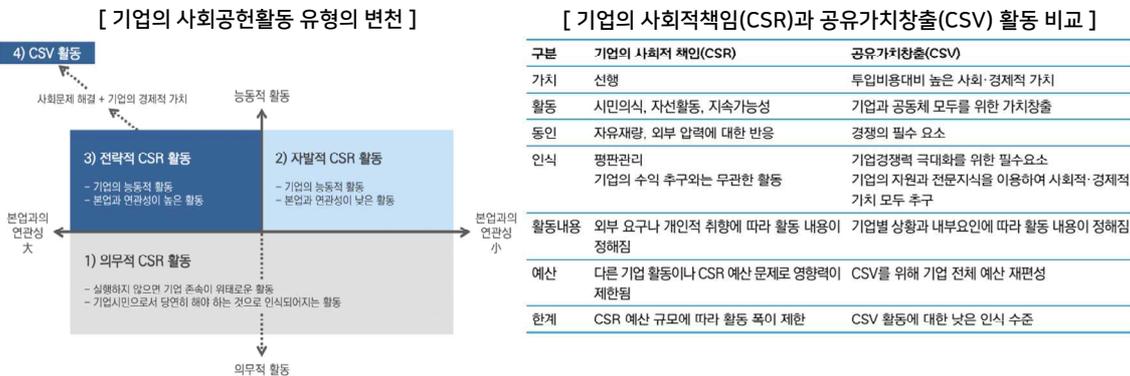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해당 기업 공유자원의 도민 이용개방 초점,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유도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기본개념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유도
- 지원내역 : 자원공유 실적(6개월 이상), 계획심사, 필요사업 지원,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탑재 등 홍보의 인센티브 부여



- 사 업 량 : 민간 기업 자원공유 프로그램 (매년 10개소)
- 사 업 비 : 기업당 3천만원~5천만원 (프로그램에 따른 차등지원)
- 사업대상 : 도내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등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50	150	150	150	600
사군비	-	300	300	300	300	1,200
자부담	-	50	50	50	50	200
기 타	-	-	-	-	-	-
합 계	-	500	500	500	500	2,000

구분	산업(농공)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유형
5-5		신규

1.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자원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생과 협력하는 공유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공동 브랜드, 공동 R&D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산업(농공)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내 입지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²³⁾
- 사업대상 :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탁기관, 주 사무소 도내 위치 중소기업협동조합, 도내 중소기업 협의체 등
 - ※ 일반 기업이나 단체는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중소기업협의체와 협업하면 사업에 참여 가능
- 지원내역 :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간 공동협업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지원
 - 개소당 5천만원~1억원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23) 도내 시·군별 농공단지 현황 : 총 59개 단지, 935개 업체, 13,832명 고용종사('19. 1/4분기) 고창군 4개(71), 군산시 4개(124), 김제시 7(185), 남원시 7개(89), 무주군 3(24), 부안군 4(53), 순창군 5(30), 완주군 2(5), 익산시 5(107), 임실군 4(30), 장수군 3(30), 정읍시 8(114), 진안군 3(73)

○ 사업량 : 매년 3개소 공모선정

○ 추진절차 : 모집공고(1월) → 산업단지 지원단체 선정(협약체결)(2월) → 단체별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12월) → 중간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8월) → 사업추진 성과 발표(1월) → 성과 공유·확산(2월)

○ 사업예시

- 임실군 '공동작업장 이용 플랫폼 구축' : 농공단지 입주기업 필요한 장비, 공간의 공유 사업 지원
- 익산시 '노동자 공동주거 공간쉐어 프로젝트' : 산업단지 취업 노동자 위한 (한시)공동주거 공간
- 군산시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프로젝트'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첨단장비의 공유 사업

구 분		사 업 예 시
내부 공유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기업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추진 기반 신규 구축 (예시)공동브랜드, 공동R&D, 공동컨설팅(신규조합 설립 관련 운영규약, 공동사업개발) 등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기업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 구축한 공유 플랫폼 활성화 지원 (예시) 공동시험센터, 물류센터, 판매전시장 등 운영 활성화 • 노동자 업무효율 증대 및 근무여건 개선, 기업활동 용이 등을 위한 유·무형 자원 공유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 휴게실, 편의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 공유 - 물품 : 각종 생활용품,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공유 - 차량 : 출퇴근·출장 차량, 트럭·지게차 등 공동 이용 - 인력 : 법률·특허·노무·금융 등 전문가 공동활용, 공동교육 등 - 재능 : 근로자간 경험·지식 공유, 재능기부 활동 등 <p>※ 기 보유한 공유자원 활용, 신규 공유자원 임차 사업구상은 가능하지만, 공유자원 자산취득은 불가</p>
외부 공유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인프라 및 플랫폼 활용 (예시)공공건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 추진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과 협업 (예시)제품 홍보·수출 전문플랫폼 활용 공동마케팅 추진, 산업단지 노동자 출퇴근 문제 개선을 위한 카풀 플랫폼 활용 등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19)를 참고로 작성함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300	300	300	300	1,2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300	300	300	300	1,200

구분 5-6	공유경제 팝업 팩토리 구축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스타트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초기 상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를 기존의 유희시설 및 설비 등과 연계하는 공유 시스템 구축
- 유희 시설 및 생산공간을 공유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비즈니스 기반과 성장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 제8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도비 80%, 시·군비 20%)
- 사업내용 : 팝업 팩토리(Pop-up Factory) 구축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²⁴⁾

- 기본개념
 - 팝업 팩토리란, 팝업의 개념을 생산시설인 공장에 적용하여 기존의 생산 및 기타 공간·시설을 공유하는 형태, 비교적 단기에 기업입지 공간 및 생산시설 등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입지형태
 - 산업입지 공간의 소형화, 유연화, 복합화의 전략으로 기존 공장 및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목
- 사업량 : 4가지 유형(초단기 임대형, 생산공간 공유형, 생산설비 공유형, 학교시설 활용형)에 대한 공모, 유형별 2억원 이내
 - 초 단 기 임대형 : 미분양 또는 공실 공장 / 매년 3개소 이내
 - 생산공간 공유형 : 유희공간이 발생한 공장 / 매년 3개소 이내

24) 본 내용은 서봉만 외(2019)에서 일부내용을 발췌해서 작성함

- 생산설비 공유형 : 유휴설비가 발생한 공장 / 매년 3개소 이내
- 학교시설 공유형 : 제조시설을 갖춘 대학교 / 매년 3개소 이내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 공장 및 대학교 등의 유휴시설 및 공간

○ 추진절차 : 모집공고(1월) → 유형별 사업계획 심사(2월) → 공간 및 시설 이용계획 협약(3월) → 사업시행 컨설팅(~5월) → 사업비 지원(6월) → 평가·확산(12월)

구분	초단기 임대형	생산공간 공유형	생산설비 공유형	학교시설 활용형
형태	기존 임대공장에 비해 단기 공급	일감이 떨어진 공장 내 공간공유	일감이 떨어진 공장 내 생산설비 공유	대학 내 연구시설 및 유휴시설 활용
수요 대상	창업준비자 및 초기 창업기업	기존 공장 내 제조업과 융복합 및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창업기업(업종간 융복합)	초기 창업기업, 시제품 생산이 필요한 창업기업 (동종업종 시너지)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연구개발이 필요한 창업기업
공급 대상	미분양 및 공실 공장	일감이 줄어들어 유휴공간이 발생한 공장, 산업단지 등	일감이 줄어들어 유휴설비가 발생한 공장, 산업단지 등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업전용 공간
공공 역할	미분양공실 공장의 재임대,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 입주업종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등	수요자공급자 매칭 플랫폼 구축, 시설 사용료 보조 등	대학 제조시설 설치 규제완화,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유사 사례	공유사무실 등 WeWork FastFive	서울 디지털 대장간, 에플42 공간활용 등	메이커스 스페이스 FabLab 등	강원대 스타트업큐브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등

자료 : 하정석(2019)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640	640	640	1,920	1,200
사군비	-	160	160	160	480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800	800	800	2,400	1,200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 육성

□ 추진목적

- 공유경제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면서 혁신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을 공공영역에서 평가와 선발을 통해 지정 육성
-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의 지정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의 공익적 효과를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촉진하는 기준선으로서 기능
- 지정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의 적극적인 사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주체간의 네트워킹을 지원

□ 세부사업

6-1. 전라북도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 지정

- 지역사회의 문제(일자리·청년·고령·주거·공동체·문화·교통·관광·숙박 등)를 해결하는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기업과 단체를 일정 요건에 의해 지정하고 관리
- 공유로 사회문제 해결 기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민간기업 등을 심사 선발 지정

6-2. '공유경제 기업·단체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공유(共有)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기업을 공유경제 기업(단체)으로 지정한 후, 행정·재정적인 지원으로 민간 공유활동을 촉진
-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경제 기업·단체로 지정된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여 공유경제의 실천기반을 강화

6-3.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 및 관리

- 공유경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목적을 담은 전라북도 공유경제를 상징하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하여 공유경제의 사회적 인식에 기여
-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와 정책사업 등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필요

6-4. 공유경제 ‘주체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지정된 ‘공유경제 단체·기업’과 공유경제의 다양한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상시적 공유경제 비즈니스·활동 등의 정보교류 연계를 도모
-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관련 다양한 주체(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어 공유경제 정책추진의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

□ 추진일정

- “단기추진” 사업
- (‘20년) 사업준비 → (‘21년) 사업시행 → (‘22년~) 사업확대 관리

구분 6-1	전라북도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 지정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의 사회적 확산과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주체(기업 및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핵심 관건
-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를 심사평가·지정하여 공유경제 비즈니스 실행의 주체로 적극 육성하고 있음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7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4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전라북도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 지정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지역사회 문제(일자리·청년·고령·주거·공동체·문화·교통·관광·숙박 등)를 해결하는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기업과 단체를 일정 요건에 의해 지정·관리 지정대상
- 공유단체 : 공유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 전북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 : 공유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전북도지사 지정한 기업
- 지정요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 사회문제에 관한 공유사업 실적이 6개월 이상 있을 것 : 공공자원 활용, 경제문제(실업·은퇴 등), 복지문제(고령자·청년·공동체·1인가구), 문화문제(문화소의·관광숙박 등), 환경문제(과잉소비·자원낭비·에너지), 교통문제(교통·주

차장 등), 기타 사항

- 심사기준 : 공유 확산성(3항목, 40%), 지속 가능성(4항목, 30%), 사회연관성(3항목, 30%)
- 지원내용 : 전북도 공유경제 BI 사용권 부여, 홍보지원, 공유경제 촉진사업(심사) 지원 등, 3년간 지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0	10	10	10	4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0	10	10	10	40

구분 6-2	‘공유경제 기업·단체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共有)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기업을 공유경제 기업(단체)으로 지정한 후, 행정·재정적인 지원으로 민간 공유활동을 촉진
-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경제 기업·단체로 지정된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여 공유경제의 실천기반을 강화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7조, 제9조, 제10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도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동 지원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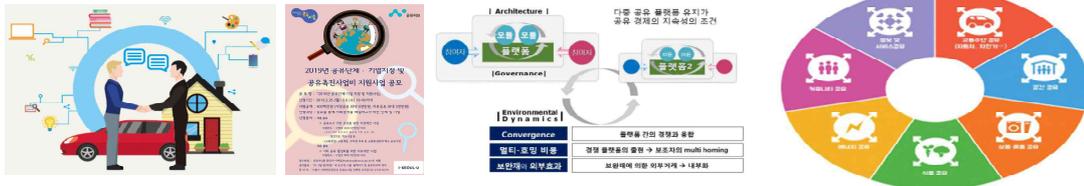
4. 사업내용²⁵⁾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공유경제 기업·단체로 지정된 조직
- 사업량 : 매년 10개소, 조직당 1천만원 이내 (심사에 의한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행사비, 홍보비,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자부담 10% 이상 필수)
 - 지원제외 : 해당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등
- 추진절차 : 사업공고(2월) → 사업계획 심사·평가(3월) → 협약체결(4월) → 사업비 교부(5월~) → 사업시행(~11월) → 모니터링 및 평가(10월) →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12월) → 사업평가 및 공유·확산(익년 1월)

25) 부산경제진흥원(2018)에서 인용하여 작성함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20%) : 인력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
- 사업계획 운영계획 타당성(30%) :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일정의 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효과성,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유촉진 효과(50%) : 사업의 공유경제 촉진 효과,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90	90	90	90	360
사군비	-	10	10	10	10	40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00	100	100	100	400

구분 6-3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 및 관리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목적을 담은 전라북도 공유경제를 상징하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하여 공유경제의 사회적 인식에 기여
-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와 정책사업 등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필요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1년 (1개년)
- 총사업비 : 2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 및 관리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민
- ① 전라북도 공유경제 BI와 슬로건 공모
 - 공유경제 BI·슬로건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5개 작품 선정 시상
- ②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관리기준 마련
 - 공유경제 BI는 공유경제 인증기업·단체로 지정된 조직에게만 사용권 부여
 - 공유경제 플랫폼 및 지원센터, 시민사회의 홍보·교육 등 활동에 사용
- 추진절차 : 도민공고(2월) → 공모접수(~8월) → 심사·평가(9월) → 발표 및 시상(10월) → 관리기준 마련(~10월) → BI 및 슬로건 공식사용(11월~)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20	-	-	-	2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20	-	-	-	20

구분 6-4	공유경제 '주체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지정된 '공유경제 단체·기업'과 공유경제의 다양한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상시적 공유경제 비즈니스·활동 등의 정보교류 연계를 도모
-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관련 다양한 주체(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어 공유경제 정책추진의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8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주체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① '전북 공유경제 네트워크' 활동지원
 - 공유경제 관련 조직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조직을 결성을 지원하고, 공동의 정보교류, 학습활동, 공동사업 등을 지원
 - 공유경제 단체·기업, 공유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NPO·사회적경제 조직 등
- ② '전북 공유경제 네트워킹 파티' 개최
 - 공유경제 실천 조직·단체, 공유경제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하는 성과 교류회
 - 1년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와 활동의 성과와 실적을 발표하고 정리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20	20	20	20	8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20	20	20	20	80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운영

□ 추진목적

- 공유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공유경제 작동체계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의 구축에 성패가 달림
- 다양한 공유자원 정보가 탑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경제의 주체가 상시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포럼을 운영
-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 방식, 내용, 주체를 연결하는 거점이자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수행

□ 세부사업

7-1.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많은 사람들이 공유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공유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정보를 소개하는 매거진, 공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 공유자원 정보(DB)가 탑재되고, 다양한 공유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우리동네 공유지도 등 웹과 앱 등을 운영

7-2. 공유경제 웹진 및 도서 발간

- 공유허브의 다양한 공유정보, 활동소식, 우수사례 등을 온라인 웹진과 책자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의 작동 방식
- 공유허브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공유경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는 온라인 웹진과 오프라인 책자를 통해 다양한 공유경제 정보와 활동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

7-3. 공유경제 포럼 운영

- 다양한 공유경제 정보와 이슈를 중심으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프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방식의 장으로서 포럼을 운영
-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이슈 등에 대해 상설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전략을 위한 협력적 지식공유의 장

□ 추진일정

- “단기추진” 사업
- (‘20년) 사업준비 → (‘21년) 사업시행 → (‘22년~) 사업확대 지속관리

구분 7-1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손쉽게 공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
- 온라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공유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 영역의 많은 공유경제 사업 및 활동, 공유정보 등이 탑재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공간 조성이 중요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3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전라북도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4. 사업내용

- 기본개념
 - 많은 사람들이 공유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공유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정보를 소개하는 매거진이며, 공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 공유자원 정보(DB)가 탑재되고, 다양한 공유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우리동네 공유지도 등 웹과 앱 등을 운영
- 주요 콘텐츠 (www.jbshare.com)
 - 공유 스토리 : 공유경제 관련 정책정보, 행정정보, 행사정보, 공유소식 등을 다양한 정보
 - 공유 아카이브 : 공유경제 자료실, 공유경제 관련 정책, 생활속 공유경제 사용설명서 등

- 공유기업·단체 : 공유경제 기업단체로 지정된 조직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소개 및 연결
- 공유 지도(map) : 공유가능 다양한 자원을 누구나 쉽게 검색, 이용할 지도 정보 서비스
- 공유기술 소스 : 공유경제 비즈니스 플랫폼 표준기술 등 제공 (오픈소스 등)

○ 연계내용

- 공유자원 모니터링단(공유자원 현행화), 공유경제 담당자(공유활동, 자원발굴), 공유경제 스쿨(교육정보), 공유경제 홍보(기대효과, 사례소개 등),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공공데이터 및 정책정보)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50	50	50	50	3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50	50	50	50	300

구분 7-2	공유경제 웹진 및 도서 발간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통해 손에 잡히고 생활에서 접근 가능한 실체가 중요
- 공유허브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공유경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는 온라인 웹진과 오프라인 책자를 통해 다양한 공유경제 정보와 활동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30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웹진 및 책자 발간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4. 사업내용

- 기본개념
 - 공유허브의 다양한 공유정보, 활동소식, 우수사례 등을 온라인 웹진과 책자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의 작동 방식
- ① 공유경제 웹진 ‘전북 공유 뉴스레터’ (월간)
 -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유정보(정책정보, 행정정보, 행사정보, 공유소식 등)를 월간 웹진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월간 전라북도 공유소식’을 제호로 공유허브 회원, 공유경제 관계자, 일반도민 등 대상으로 한 웹진 제공
 - 추진방식 : 공유경제지원센터 내 공유소식 전담팀을 설치(공유자원 모니터링단, 기업·단체 관계자 등과 협업), 연간 12백만원
- ② 공유경제 도서 ‘전라북도 공유경제’ (계간)

-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유정보(정책정보, 행정정보, 행사정보, 공유소식 등)를 오프라인 도서로 제작하여 발간
- '계간 전라북도 공유경제'를 제호로 공공기관, 공유경제 관계자, 공유기업·단체 등에게 제공
- 추진방식 : 공유경제지원센터 내 공유소식 전담팀에서 기획 제작, 연간 60백만원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50	50	50	50	30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50	50	50	50	300

구분 7-3	공유경제 포럼 운영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고, 실천적 사업과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상설적 공론의 장이 필요
- 다양한 공유경제 정보와 이슈를 중심으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프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방식의 장으로서 포럼을 운영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44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포럼 운영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4. 사업내용

- 기본개념
 -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이슈 등을 상설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전략을 위한 협력적 지식공유의 장
- 운영주체 : 공유경제지원센터와 공유경제 기업·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공동으로 운영
- 운영방식 : 매월 정례 월레포럼, 2~3개의 세션으로 구성 (기조강연, 토크콘서트, 공유혁신 사례 등 발표)
- 참여주체 : 공유경제 활동가, 공유경제 기업·단체,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 등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36	36	36	36	144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36	36	36	36	144

공유경제 전담조직 강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공유경제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을 구축
-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련 정책을 담당할 행정체계(전담부서)의 마련과 인력의 배치로 책임있는 추진체계를 갖추
- 공공부문의 공유기반과 민간부문의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거버넌스(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안착화

□ 세부사업

8-1.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행정의 공유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공유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 사업과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

8-2.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전라북도와 시·군 행정에 공유경제 정책과 공유활동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책임 있는 행정의 추진체계를 구축
- 공유경제 전담부서는 공유경제 정책추진을 담당하되, 사회혁신 관점에서 공유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관련 사업을 담당

8-3. '전라북도 공유경제 위원회' 운영

-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추진을 총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 공유

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

- 공유경제 위원회는 공유경제 정책방향, 정책사업, 지원수단 등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하는 정책 결정기구로 운영

□ 추진일정

- “우선추진” 사업
- ('20년) 사업시행 → ('21년) 사업확대 → ('22년~) 사업강화 지속관리

구분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유형
8-1		신규

1. 목적 및 필요성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책임있게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
- 공유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직접 사업과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144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유경제지원센터)

4. 사업내용

- 행정과 민간의 활발한 공유경제 사업과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전문조직 설립과 운영이 필요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행정의 공유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주요기능 : 전북도와 시군의 공유정책 지원·위탁,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공유경제 교육수행, 공유경제 홍보,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관리, 공유경제 모니터링단 운영, 오픈소스 기술개발과 보급 등
- 조직구성 : 담당역할 고려 팀을 배치 운영(총괄기획팀, 사업지원팀, 교육협력팀, 기술개발팀, 출판팀)을 우선 배치 운영
- 설치방안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내 설치 운영 (전라북도 지정위탁 방식)
- 운영사례 : 서울특별시(사단법인 코드(주)쏘시오재단법인 통합밸리/ANT 홀

딩스 위탁운영), 부산광역시(부산경제진흥원 지정 운영), 서울 은평구(은평e 품앗이위탁운영) 등



온라인 역할		
공유경제지원 연계 • 공유경제지원 수요처에 공유자 연결 • 기업과 유동자만 공유 • 개인이 아닌 법인/공인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공유경제 정보 제공 • 공유/제공/수요처 정보 및 지원 • 온라인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정부 공유 • 오픈API 공유경제지원 정보 공유 • 공유/제공/수요처간 데이터/정보 • 행정/시장/공공 • 공유경제/공공/공공/공공
오프라인 역할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경제 지원 제도 • 지식/정보 공유/제공/수요처 지원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공유경제의 인식 확산 • 공유경제 인식 제고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공유경제의 신뢰 강화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36	36	36	36	144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36	36	36	36	144

구분 8-2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행정의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고 책임있는 정책실행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함
- 공유경제의 사회적 여건과 정책수준을 고려할 때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하는 팀과 담당인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각 시군

4. 사업내용

- 공유경제의 사회적 여건 조성 과 사업·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공유기반을 우선하여 구축
- 공공부문 공유기반과 실행역량은 공유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전담부서는 필수
- 전라북도와 시군 행정에 공유경제 정책과 공유활동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책임있는 행정의 추진체계를 구축
- 공유경제 전담부서는 공유경제 정책추진을 담당하되, 사회혁신 관점에서 공유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관련 사업을 담당
- 전라북도 : 사회적경제과 내 협동경제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협동경제 정책연계 유리)
- 시군 : 전담팀 신설 제약 여건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 정책 담당팀 내 전

담인력 지정 배치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	-	-	-	-

구분 8-3	‘전라북도 공유경제 위원회’ 운영	유형 계속
-----------	---------------------------	----------

1.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정책추진을 총괄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공유경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
- 공유경제 위원회는 공유경제 정책방향, 정책사업, 지원수단 등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하는 정책 결정기구로 운영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25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4. 사업내용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의거하여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
- 전라북도 공유경제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공유기반과 민간부문의 공유활동을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법정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
- 주요기능
 - 공유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위원구성 : 공유경제에 관한 전문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공유경제 업무담당 공무원(당연직), 민간영역에서 공유와 관련된 관계자 등 (위원장 당연직, 정무부지사)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5	5	5	5	5	25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5	5	5	5	5	25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 추진목적

- 기존의 경제활동의 체계(제도)에서 혁신성을 갖춘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이해관계자의 상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개선이 중요
- 공유경제에 친화적인 제도개선은 다양한 영역의 관련된 주체로부터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포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관건
- 공유경제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책영역에서의 정기적인 개선과 보완 대책을 정책체계 내에서 마련

□ 세부사업

9-1.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 현행 규정과 상충하는 제도·규정 등 내용개선,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 개별 공유경제 사업주체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파악 수집

9-2. 공유정책 평가 및 연차보고서

- 매년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평가와 연차보고서 발간을 규정화
- 공유경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평가와 개선과제까지 포함한 공유경제 관련 사업과 활동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완비

□ **추진일정**

- “지속추진” 사업
- ('20년) 사업준비 ('21년) 사업시행 ('22년) 사업확대 및 지속관리

구분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유형
9-1		신규

1. 목적 및 필요성

-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비즈니스 모델과 활동은 기존 제도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혁신적 영역이 많음
- 개별 공유경제 사업주체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파악 수집해 나가야 함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4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유경제지원센터)

4. 사업내용

- 공유경제 비즈니스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적 기반(법규)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여건을 마련
- 교통, 관광, 문화, 주차장, 세제, 보험, 건축, 식품업 등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출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규정으로 상충하는 제도·규정 등 내용개선
- 지자체(도·시·군) 차원, 정부, 국회 등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건의 시행
- 운영방안 : 공유경제 지원센터 내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전문가, 행정, 공유단체 등)

○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 과제 예시

‘제도기반’ 관련 제도개선 과제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스트 관련 규제 (내국인 사용 허가 고려) · 호스트 관련 규제 (사업자등록증 절차 간소화, 주인이 반드시 일정기간 있어야 하는 지 등 기타 의무의 최소화) · 에어비앤비등과의 공정경쟁, 기존 기득권과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조정 필요 	
차량	차량승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관련 렌터카와 차별화된 규제 제시 · 예약소설치가 불필요하도록 규제 개선, 예약소 신고 서류 간소화,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등록처리 · 장기 렌트에 적용되는 차고지 감면조항을 무인대여시스템에도 적용 · 지자체공영주차장 차량공유 주차요금 감면 고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주차수익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구조적 기준 마련 · 읍지주차장의 양성화, 요금 책정 방침 마련, 주차장 공유에 대한 혜택 홍보
공간	일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유형별로 합법적인 운영절차와 규모 등을 명확히 설정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공유는 임대차계약 안에서 보장된 사업권 영역의 문제로 해석하는 방향 · 보다 폭넓게는 물리적 장소(location)에 기반한 사업자등록 제도에 변화 필요
재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공급자 자영업자로 해석, 재능공유 플랫폼은 노동력 증가가 아닌 정보 중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 · 재능공급자 위해 정보제공 서포트플랫폼 지원고려, 시장 활성화 위해 초기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과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스트 관련 규제 (내국인 사용 허가 고려) · 호스트 관련 규제 (사업자등록증 절차 간소화, 주인이 반드시 일정기간 있어야 하는 지 등 기타 의무의 최소화) · 에어비앤비 등과의 공정경쟁, 기존 기득권과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조정 필요 	
차량	차량승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공동이용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 사항을 각 지자체에 추가하도록 권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차장 주차수익 범위 마련, 사업자 신고와 주차장 수 등 정보마련 필요, 카드결제 회피 따른 투명성 필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공급자가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이거나 영세한 점주일 가능성이 높아 일정수준 이하의 공간공유 수입에 대해 세금부담 최소화 · 향후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문제가 이슈화되면 공유플랫폼 통한 결제만 제한, 원천징수 방법도 가능 	
재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공급자 자영업자로 해석, 재능공유 플랫폼은 노동력 증가가 아닌 정보 중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 · 재능공급자 위해 정보제공 서포트 플랫폼 지원고려, 시장 활성화 위해 초기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거래상 위험’ 관련 제도개선 과제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에 숙박공유에따른 제도 마련 권고, 호스트-게스트의 신분확인 관련 방안 마련 (예, 범죄기록 조회 등)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경찰청 관리하는 운전면허에 따른 주민번호 및 주소지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 	
차량	차량승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ine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등에서 면허 확인 시 정지여부, 갱신기간 등 검증범위 확대 및 정식 연동 · 해당 사이트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시스템 구축등 주차장 관련 정확한 정보시스템 필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공유업체들 간에 협회나 조합을 형성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 · 거래에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법도 가능 	
재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과정 안정성 확보(escrow 등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될 가능성 있음) · 영세 공유 플랫폼들이 단체로 상조회사 형태의 보험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 · 협회나 씽크탱크 형성 보조 가능하나, 사업 초기 현재 플랫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15)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0	10	10	10	4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0	10	10	10	40

구분 9-2	공유정책 평가 및 연차보고서	유형 신규
-----------	------------------------	----------

1.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성과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매년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평가와 연차보고서 발간을 규정화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총사업비 : 40백만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공유정책 평가 및 연차보고서
- 사업주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유경제지원센터)

4. 사업내용

- 공유경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공유경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평가와 개선과제까지 포함한 공유경제 관련 사업과 활동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완비
- 공유경제 정책평가 기준 및 매뉴얼 마련 (공유경제 정책목표 고려)
- 공유경제 정책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진행(양적 평가, 질적 평가 등)
-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작 발간
- 추진방식 : (1단계)사업부서(지원센터) 평가자료 마련 → (2단계)공유경제위원회 전문가 중심 평가소위 구성 평가 → (3단계)평가결과 토대로 연차보고서 작성 → (4단계)공유경제 위원회 보고 및 심의

○ 매년 전북연구원 평가연구를 통한 정책평가 지원

5.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10	10	10	10	40
사·군비	-	-	-	-	-	-
자부담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10	10	10	10	40

제7장

예산계획 및 평가관리

1. 예산계획
2. 평가관리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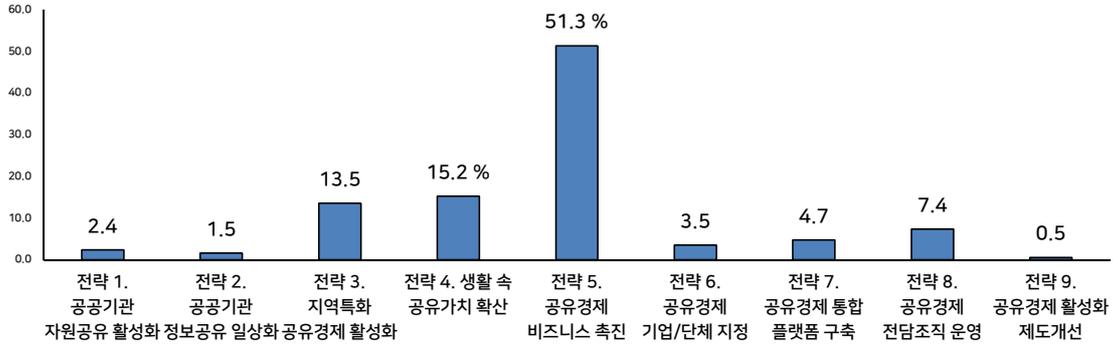
예산계획 및 평가관리

1. 예산계획

□ 총괄 예산계획(안)

- 계획기간(5개년, '20년~'24년) : 총 15,545백만원 (3대 방향, 9대 전략, 31개 세부사업)
- 방향 1.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17.4%) : 총 2,708백만원 (3대 전략, 8개 세부사업)
 - 전략 1.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2.4%) : 총 368백만원 (4개 세부사업)
 - 전략 2.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1.5%) : 총 240백만원 (2개 세부사업)
 - 전략 3.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13.5%) : 총 2,100백만원 (2개 세부사업)
- 방향 2.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70.0%) : 총 10,880백만원 (3대 전략, 15개 세부사업)
 - 전략 4. 생활 속 공유가치 확산 (15.2%) : 총 2,360백만원 (5개 세부사업)
 - 전략 5.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51.3%) : 총 7,980백만원 (6개 세부사업)
 - 전략 6. 공유경제 기업·단체 육성 (3.5%) : 총 540백만원 (4개 세부사업)
- 방향 3.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12.6%) : 총 1,957백만원 (3대 전략, 8개 세부사업)
 - 전략 7.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4.7%) : 총 732백만원 (3개 세부사업)
 - 전략 8. 공유경제 전담조직 운영 (7.4%) : 총 1,145백만원 (3개 세부사업)
 - 전략 9.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0.5%) : 총 80백만원 (2개 세부사업)

〈그림 7-1〉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별 예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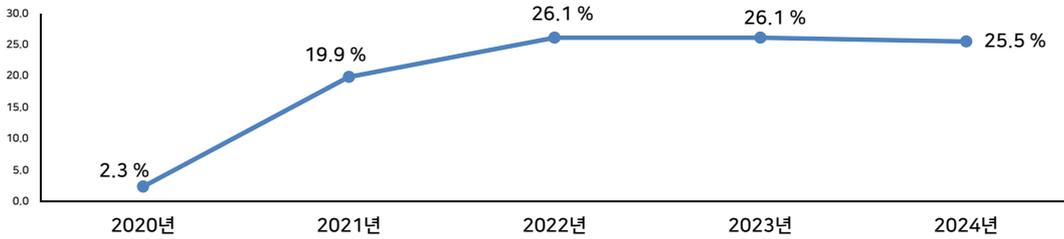


□ **년도별·재원별 예산계획(안)**

○ **년도별 예산계획**

- 20년 2.3% → '21년 19.9% → '22년 26.1% → '23년 26.1% → '24년 25.5%

〈그림 7-2〉 공유경제 활성화 년도별 예산계획



○ **재원별 예산계획(안)**

- 국비 5.1%, 도비 63.0%, 시군비 28.8%, 자부담 2.3%, 기타 0.8%

〈표 7-1〉 공유경제 활성화 재원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비중)
국 비	160	160	160	160	160	800	5.1%
도 비	93	2,005	2,594	2,594	2,513	9,799	63.0%
시군비	112	812	1,182	1,182	1,182	4,470	28.8%
자부담	-	83	94	94	85	356	2.3%
기 타	-	30	30	30	30	120	0.8%
합 계	365	3,090	4,060	4,060	3,970	15,545	
(비중)	2.3%	19.9%	26.1%	26.1%	25.5%		100.0%

□ 세부사업별 예산계획(안)

〈표 7-2〉 공유경제 활성화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방향	전략	no	세 부 사 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공공부분 기반 구축	공공기관 자원공유	1-1	공공자원 개발 및 공유자원화	-	5	5	5	5	20	
		1-2	공공자원 이용 모니터링 및 현행화	-	42	42	42	42	168	
		1-3	공공기관 대표 공유자원화 지원 사업	-	30	50	50	50	180	
		1-4	도 사업부서 '공유자원 대표사업'	-	-	-	-	-	-	
	공공기관 정보공유	2-1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공유광장(웹) 운영	-	150	30	30	30	240	
		2-2	공공기관 정보공유 행정 시스템 수립 시행	-	-	-	-	-	-	
	지역특화 공유경제	3-1	지역특화 공유경제 프로젝트	-	150	300	300	300	1,050	
		3-2	사회혁신 공유경제 프로젝트	-	150	300	300	300	1,050	
민간부분 활동진 촉진	생활속 공유가치 확산	4-1	공유경제 교육과 공유체험 프로그램	-	180	180	180	180	720	
		4-2	공유경제 홍보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	-	100	100	100	100	400	
		4-3	공유경제 활성화 혁신 아이디어 발굴	-	20	20	20	20	80	
		4-4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및 리빙랩 운영	-	90	90	90	90	360	
		4-5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	-	160	160	160	160	800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5-1	공유경제 비즈니스 패키지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5-2	공유경제 비즈니스 표준기술 개발 지원	-	300	300	300	300	1,200	
		5-3	공유경제 비즈니스 안전상품 개발 지원	-	-	90	90	-	180	
		5-4	민간기업 공유가치 창출 자원공유 촉진	-	500	500	500	500	2,000	
		5-5	산업(농공)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300	300	300	300	1,200	
		5-6	공유경제 팝업 팩토리 구축	-	-	800	800	800	2,400	
	공유경제 기업단체 육성	6-1	전라북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	10	10	10	10	40	
		6-2	공유경제 기업·단체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100	100	100	100	400	
		6-3	전라북도 공유경제 BI 개발	-	20	-	-	-	20	
		6-4	공유경제 주체 네트워킹 지원	-	20	20	20	20	80	
	추진 체계 완비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7-1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150	50	50	50	300
			7-2	공유경제 웹진 및 도서 발간	-	72	72	72	72	288
			7-3	공유경제 포럼 운영	-	36	36	36	36	144
		공유경제 전담조직 강화	8-1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280	280	280	280	1,120
			8-2	공유경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	-	-	-	-
8-3			전라북도 공유경제위원회 운영	5	5	5	5	5	25	
공유경제 제도개선		9-1	공유경제 제도 개선단 운영	-	10	10	10	10	40	
		9-2	공유정책 평가 및 연차보고서	-	10	10	10	10	40	

2. 평가관리

□ 추진단계

- '20년-추진준비, '21년-사업시작, '22년-사업확장, '23년-사업안정, '24년-사업관리
 - 조속추진('20년~) : 생활 속 공유가치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전담 조직 운영
 - 단기추진('21년~) : 공공기관 자원 및 정보공유, 지역특화 공유사업,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지속추진('22년~) : 제도개선

〈표 7-3〉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별 추진단계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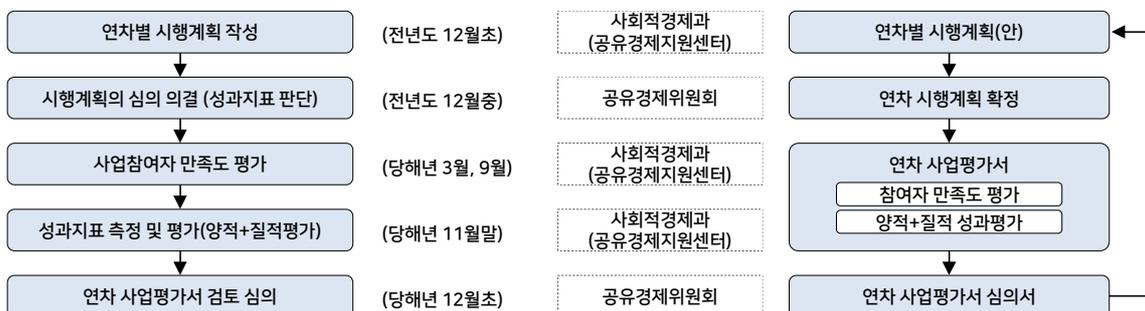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비고
전략 1.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	77	97	97	97	368	단기
전략 2. 공공기관 정보공유 일상화	-	150	30	30	30	240	단기
전략 3. 지역특화 공유경제 창의화	-	300	600	600	600	2,100	단기
전략 4. 생활 속 공유가치 확산	160	550	550	550	550	2,360	조속
전략 5.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200	1,300	2,190	2,190	2,100	7,980	조속
전략 6.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	150	130	130	130	540	단기
전략 7.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	258	158	158	158	732	단기
전략 8. 공유경제 전담조직 운영	5	285	285	285	285	1,145	조속
전략 9.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	20	20	20	20	80	지속

□ 관리와 평가

- 성과관리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임무, 중장기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그림 7-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관리 및 평가체계



- 성과평가 : 정책계획에 기반해 설정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점검하여 정책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활동

□ 성과지표(안)

- 공유경제 기본계획(안)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정책효과를 대표하는 지표 설정
 -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 공공기관 자원공유, 공공기관 정보공유, 지역특화 공유비즈니스
 -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 지정 공유기업단체, 공유경제 도민참여, 공유활동참여 기업단체
 -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경제지원센터 구축 운영

정책방향	성 과 지 표(안)	세 부 내 용
공공부문 공유기반 구축	1. 공공기관 자원공유 참여율	('21)10% → ('22)40% → ('24)70%
	2. 공공기관 정보공유 공개율	('21) 5% → ('22)30% → ('24)60%
	3. 지역특화 공유경제 비즈니스	('21) 5개 → ('22)10개 → ('24)20개
	4. 도 사업부서 공유사업 수	('21)10개 → ('22)15개 → ('24)30개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5. 공유경제 지정 기업단체	('21)10개 → ('22)30개 → ('24)50개
	6. 공유활성화 참여 단체·기업	('21)10개 → ('22)30개 → ('24)50개
	7. 도민 공유경제 이용(경험)률	('20)16% → ('21)30% → ('24)50%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8.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	('20~) 구축 운영
	9. 공유경제지원센터 구축 운영	('20~) 구축 운영

〈그림 7-4〉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전략체계(안) 종합



참고자료

- 강철구·전소영,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7.
-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2013.
- 권애라, '소유를 넘어 공유로', 세계와 도시 1&2, 201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모집 공고', 2019.
- 김점산,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134, 경기개발연구원, 2014.
- 김형균 외, '도시재생 소프트 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3.
-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 방안', BDI 포커스 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
- 박건철 외,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2016.
- 반정화 외,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숙박공유 중심', 서울연구원, 2015.
- 부산경제진흥원, '2018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촉진지원 사업 공모', 2018.
- 서봉만 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천연구원, 2019.
- 설홍수, '지속가능한 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7.
- 성영조 외,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2016.
- 송미경, '공유도시 서울', 세계와 도시 1&2, 2013.
-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한빛비즈, 2012.
- 이성규, '소셜웹과 공유-개인주도 비영리 SNS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2(1), 2014.
- 이승환, '혁신형 창업 활성화의 비결', 플랫폼, CEO Information 909, 삼성경제연구소, 2013.
- 이장우 외,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 이재민, '제4섹터 공유경제의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 한국지역사회학회 27(3), 2019.
- 이화령 외,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정다예, '공유도시의 진화', 세계와 도시 1&2, 2013.
- 정지훈, '세계의 공유기업', 세계와 도시 1&2, 2013.
- 최창욱 외, '플랫폼의 경제-비즈니스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 이슈&진단 103, 경기개발연구원, 2013.
- 클라우드산업연구소·위즈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연구보고서, 2013.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유하게 하라-소유에서 공유로', 2014 TREND CODE, 2014.
-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아시아에서의 공유경제 확산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3(33), 2014.
-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거꾸로 보는 경제학-공유경제 뽑아보기', 2013.

황영모·신동훈,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2015.
황영모·신동훈, '나눠쓰는 공유경제 도민의식과 지역사회 대응방향',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16.

레이첼 보츠먼, 루 로저스 외, 「위 제너레이션」, 이은진 옮김, 모멘텀, 2011.
로렌스 레식, 「아이디어의 미래」 이원기 옮김, 민음사, 2012.
로렌스 레식, 「코드 2.0」, 김정오 옮김, 나남, 2009.
로나 골드, 「공유경제」, 안명옥 옮김, 조운커뮤니케이션, 2012.
애너레이드,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김승진 옮김, 김영사, 2011.
엘리너 오스트롬, 「지식의 공유」, 김민주·송희령 옮김, 2010.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2010.
찰스 리드비터,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이순희 옮김, 21세기북스, 2009.
히라노 아쓰시 칼, 안드레이 학주, 「플랫폼 전략」, 천재경 옮김, 더숲, 2010.
한국개발연구원,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5

관계부처 합동,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II', 2019.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 '공유문화도시 조성 계획', 2015.
광주광역시, '공동체 주택건설 추진계획', TF 회의자료, 2014.
광주광역시 공유광주포털 <http://공유광주.kr/>
부산광역시, '부산형 공유경제 사업발굴 회의 자료', 2014.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 2015.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정보센터 www.sharabusan.kr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2015.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공유서울 추진계획', 2013.
서울특별시, '2014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2014.
서울특별시,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2.
서울특별시, '공유제도개선 컨퍼런스', 2014 스마트클라우드쇼, 2014.
서울특별시, '예비 공유경제 기업인 활동가를 위한 공유경제 시작학교 교재', 2013.
서울특별시 공유허브 <http://sharehub.kr/>
행정안전부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service/publicResrceOpn>
기획재정부 알리오플러스 <http://www.alioplus.go.kr/>

Benkler, Yochai (2002). "Coase's Penguin, or, Linux and The Nature of the Firm". The Yale Law Journal 112. Retrieved 13 June 2013.
Benkler, Yochai (2004).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The Yale Law Journal 114. Retrieved 9 July 2014.
Benkler, Yochai, "Coase's Penguin, or, Linux and The Nature of the

- Firm", The Yale Law Journal 112, 2002.
- Benkler, Yochai,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The Yale Law Journal 114, 2004.
- Botsman, R., The Futher of Collaborative Consumption-Dancing with Disruption, 스마트클라우드쇼 2013 국제컨퍼런스 기조강연, 2013.
- Felson, Marcus and Joe L. Spaeth, "Community Structure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1 (March-April), 1978.
- Hamari, Juho; Sjöklint, Mimmi; Ukkonen, Antti. "The Sharing Economy: Why People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5
- Harris, M. & N. Gorenflo(eds.), Share or Die, new society publishers, 2012.
- <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
- J. Owyang, The Collaborative Economy, ALTIMETER, 2013.
- Lessig, Lawrence,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Books, 2009.
- Putnam. R.D.,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0.
- Putnam. R.D.,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achel Botsman and Roo Rogers, What's Mine Is Yours, 2010.
- SHAREABLE &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도시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번역, 2013.
- William McDonough and Michael Braungart, 2002.

〈참고 1〉

공유경제 국외 벤치마킹 보고

(1) Observatoire de l'Ubérisation (프랑스 공유경제관측소)²⁶⁾

□ 공유경제관측소 개요

- '관측소'의 의미는 공유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국가, 기업, 시장 등의 문제해결과 균형을 위해 중재자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약 8만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프랑스공유경제관측소는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단체나 경영체,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과 지원 등을 협력해가는 조직으로 구성
-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유경제를 함께 이해하고, 전망하며, 제안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네트워킹을 추진
- 소비자와 공급자를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해주는 공유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사회금융시스템, 사회적 중재자 역할, 세금제도의 조정, 노동법 개혁, 경제모델의 진화(기업의 협력시스템)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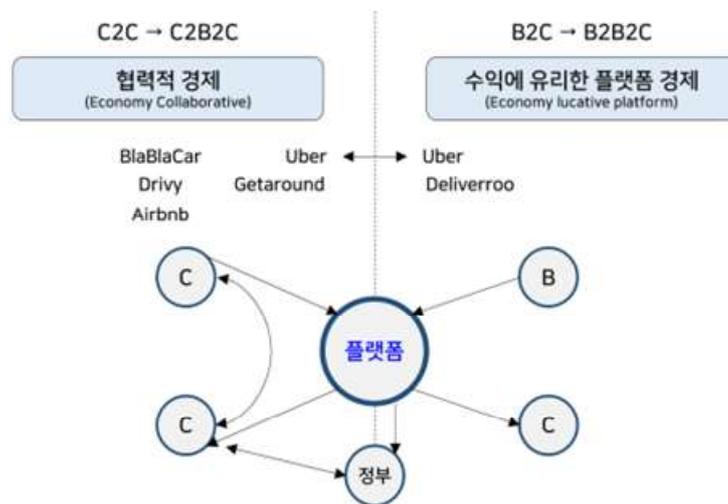
www.uberisation.org



26) 인터뷰 : Observatoire de l'Uberisation Gregoire Leclerc(그레고아르 르클레르크) 회장

□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

- 2009년 오투앙투프로레(프리랜서보다 광의적 개념) 형태의 직업군이 도입되어 당시 4천명 정도에서 현재는 167만명(프랑스 경제활동인구 2,700만 명의 6.9%)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공유경제가 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협력적 경제(Economy Collaborative)’와 ‘수익을 내기 유리한 플랫폼 경제(Economy lucrative platform)’로 이원화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
- 협력적 경제(C2C) : 우버(Uber), 블라블라카(BlaBlaCar), 드라이비(Drivy), 겐터라운드(Getaround), 에어비엔비(Airbnb) 등
- 수익형 모델(B2C) : 우버(Uber), 음식배송앱(Deliveroo) 등
- C2C 방식의 경우 물물교환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소비활동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공유경제관측소는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의 수익형 모델에 집중
- 일반적으로 ‘C2C’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C2B2C’로 이뤄지고 있으며, ‘B2C’ 역시 ‘B2B2C’로 중간단계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로 과거에는 택시가 전화를 받아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터미디어라는 중간매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유경제 플랫폼의 3단계

- (1단계 : 시장분석) 종합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문제와 과제를 도출 : 택시의 경우 위치, 대기시간, 짐, 반려견 추가요금 등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복

- 잡하지만, 우버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함으로써 편리함을 추구하는 구조로 전환
- (2단계 : 개발단계) 플랫폼 기술개발 단계 :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기술적으로 구축
 - (3단계 : 시장진입) 시장에서 관계 맺기, 수요와 공급 균형 조정 등 : 상품·서비스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우버의 경우 대기시간을 3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 플랫폼 비즈니스는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역에서 가능(경험적 판단), 인구가 적거나 거리가 멀어 시장형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극복방안 필요
- 거리에 따른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메뉴를 통일하거나 고려해야할 요인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극복해야함
-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점유율을 확장시켜 독과점 형태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 B2B2C의 성공모델인 부킹닷컴의 20년전 시장에 진입할 당시 점유율은 20% 정도였으나 현재 70%로 성장하여 독과점으로 변화
- 부킹닷컴의 가격조절은 AI가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호텔은 과거에 비해 수익률이 20% 정도 하락한 상황
- 공유경제관측소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장의 이익보다도 시장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유기적인 건전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최근 프랑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경쟁, 재정, 사회보장, 데이터, 노조·기업·정부의 관계, 정보공개 문제, 거품경제의 위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노동자(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나 복지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붕괴할 경우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됨

□ 공유경제 정책의 고려사항

- 공유경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기보다 장래성이 있는 플랫폼 발굴해서 지원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
- 공유경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초기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며, 플

랫폼이 성장하면 다른 기업들과 구획을 지키며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이 중요

- 공유경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시장잠식을 위한 출혈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거대 플랫폼이 철수할 경우 시장자체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음

□ 주요 시사점

- 프랑스의 공유경제는 우버(Uber)에서 파생된 'Uberisation(우버화)'이라는 단어로 대별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인식되고 있음
- 프랑스의 공유경제 이용률은 유럽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며, 사업분야가 기존의 숙박·차량뿐만 아니라 식품·의류·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고객층도 개인에서 소형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어
-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는 공유경제가 2025년까지 약 3,350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연간 평균 성장률이 약 36.4% 수준임을 의미함(KOTRA 파리무역관 자료, 2018)
- 공유경제를 개인들 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비영리 목적의 협력적 소비(C2B2C), 수익형 공유경제(B2B2C)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수익성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유경제관측소는 공유경제를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하여 관련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지원기능을 전문화한 것이 특징임
-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의 공유경제 모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장치나 지원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수익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잠재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Le Centquartre-Paris (파리 상카르트 104)²⁷⁾

□ 추진과정

- 1874년 건립된 상카르트는 장례용품을 만드는 공간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장례식장으로 운영되다 1997년부터 방치되었던 공간을 2008년에 지자체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7년, 1억2천만유로 투입)
- 건물 2동(면적 37,000㎡, 축구장 6배)에 창작 아틀리에(atelier)와 공연, 전시, 패션쇼를 위한 2개의 컨벤션홀 등을 갖추
- 상시전시나 공연활동을 통해 교류협력과 지식공유가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경제적 효과까지 내고 있는 공유거점 장소로 변화
- 약 300~350명 규모의 예술가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50만명 정도가 방문
- 공연이 없을 때에는 연습공간으로 활용되며, 자유롭게 자격제한 없이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

□ 운영구조

- 시의 공공자산으로 전기·가스 등 기본적인 것은 공공이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아티스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대신
- 개별 민영법인으로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이사장은 저명인사)에 시에서 파견된 인원이 참여하는 형태
- 직원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으며, 디렉터만 시장이 임명하고 있음
- 대기업(신테크놀로지, 부동산, 통신업체, 백화점 등) 이벤트 등 공간대여 및 협찬, 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외부지원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
- 현재 지원금을 제외하면 부채가 없는 상황으로 이익보다는 새로운 젊은 예술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
- 시에서 예술·창작·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을 위한 작업공간과 전시시설 등을 제공하며, 단기 프로젝트(1~2주)나 수개월 단위의 기획사업도 지원하고 있음

□ 104 FACTORY 인큐베이팅 공간공유

- 첨단과학이나 신기술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이나 팀을 위한 인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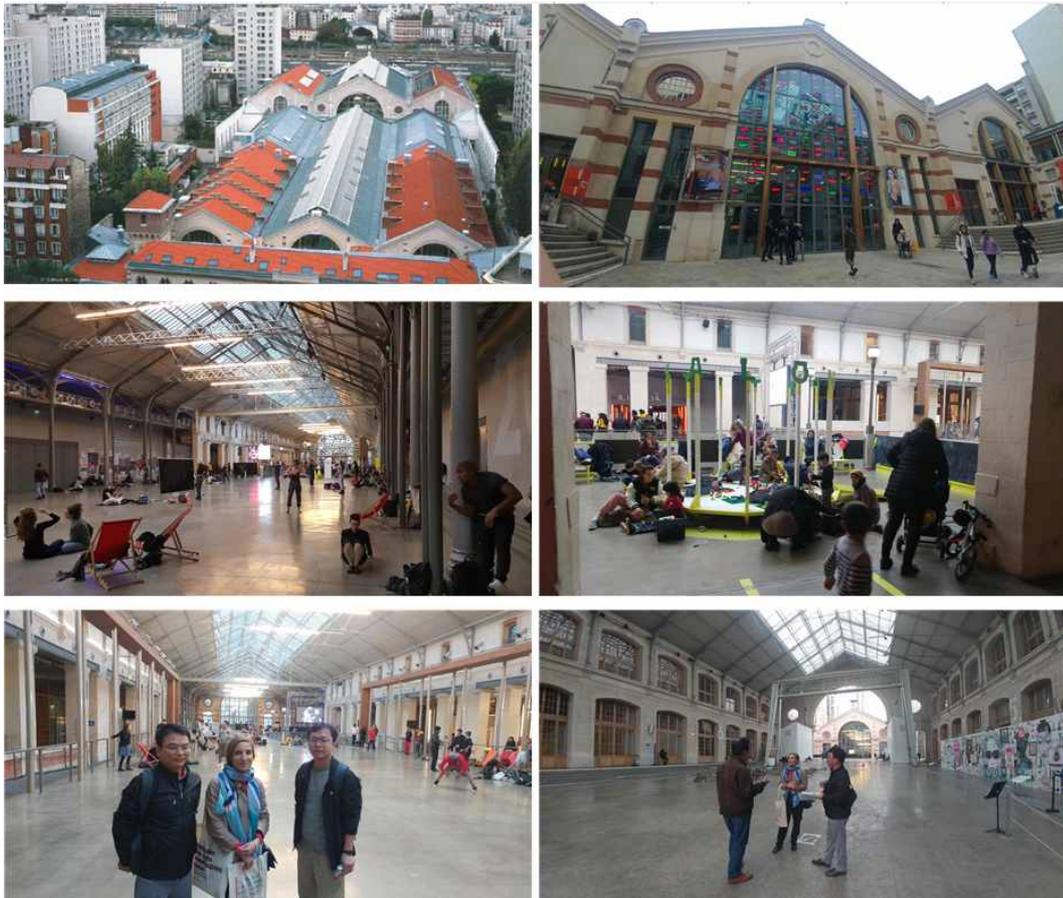
27) 인터뷰 : Victoire Veche(빅투와르 베슈) 관리담당자

베이팅 공간을 제공(재정적 지원 없음)

- 예술·문화공간의 2층과 작은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20개소 정도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음
- 문화·역사·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기업들로 선정하여 전시행사 공동개최 등을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

□ 주요 시사점

- 19구는 파리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구역으로 주민의 약 60%가 정부보조를 받는 지역이었으나 공공영역에서 예술·문화를 공유하는 거점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된 성공사례
- 예술가들에게 작업·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의 자립적인 운영구조를 지지
-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예술·문화의 역동성과 대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유공간 기능을 담당
- 혁신기업(팀)에 대한 인큐베이팅 공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전통·역사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



(3) 파리시 공유경제 정책현황 (파리시청)²⁸⁾

□ 인터뷰 주요내용

- 파리시에서는 공유경제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공영주택을 만드는 회사에 시가 공간을 제공하여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보급하는 동시에 공유경제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여 관련 협회나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민들의 의견과 활동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공유경제가 발달하기 어려움
- 파리시는 공유경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이 시의원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와 연대의 경제, 플랫폼 등 사회혁신과 IT 접목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음
- 전반적인 정책은 없으며, 섹션별로 나름대로 공유경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 정도로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공유경제와 관련한 참여예산제도를 ACCORDERIES(어코더리)²⁹⁾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리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이사회(CGF)가 구성되어 있음
-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이사회(CGF)를 통해 공유경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플랫폼 보다는 여러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큰 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 현재 4개소 정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요리·기타·학습 등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거나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몇 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시의 관리자는 재정지원만해주고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함
- 이러한 자치활동은 캐나다에서 도입된 모델로 2011년에 프랑스에 도입을 희망하는 시민기구들이 있어서 10구부터 시작하게 되었음
- 2018년 파리시의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파리시장은 공유경제

28) 인터뷰 : Jeremie SUISSA(제레미 슈사) 파리시의회 정책디렉터

29) ACCORDERIES(어코더리)는 밋줄과 연합하다는 합성어로 캐나다 퀘벡주의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빈곤을 이겨내고 사회 부적응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하며(강릉시 선진자활 해외연수 보고자료, 2013), 파리에서는 재능을 서로 교환·공유하는 회원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해가는 방식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

대 포식경제 문제를 CGF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대학 등을 중심으로 활발은 논의 진행되고 있음

- 공유(협업)경제는 수평구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모든 경제 관행과 모델을 결합하여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어떻게 조직화하여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임
-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발전시킨 구조와 조직은 디지털로 지원되는 특성을 지니며, 플랫폼(Uber, 에어비앤비 등), 팹랩(Fab-Labs), 공유자금지원계획, 학습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로부터 예상되는 위험(디지털 격차, 불공정 경쟁, 불안정성, 부가가치 공유 등)과 기회(경제적,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및 활동, 소셜링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이 강조됨
- 최근 들어 공유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에어비앤비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호텔을 규합하고, 직원들의 보험문제 등 불공정경쟁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 건물의 20~25%를 점유하고 있음
-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 120일 수준에서 100일 이하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지만, 전국적인 여론은 그렇지 않은 상황
- 더불어 세금도 내도록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 기업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시원도 필요한 상황
- 공공영역이 아닌 개인 간에 자전거나 차량을 공유하는 활동 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벨리브(VELIB)와는 다르게 트로티네트(전동킥보드)의 경우 실패한 사례로 시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 프랑스는 국가가 제어하는 중앙집권 체계로 최근 시에서 규제할 수 권리를 획득하여 운영기업 3개로 축소하여 조정을 진행 중에 있음
- 제조회사, 공유자, 이용규칙 등을 제한하는 방식도 시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추진
-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노동자 복지 등에 대한 처우개선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음
- 음식배달자들의 경우 젊은 참여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안정적인 급여생활과 복지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 초기에 재정지원 없이는 힘든 구조로 기존에 운영이 어려운 회사를 시가

사들여 시스템을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 시사점

- 파리시에는 공유경제 규모에 비해 담당부서나 정제된 정책·계획 없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활동(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기본적으로 공유경제가 시민참여나 플랫폼 방식 등을 통하여 활성화 되는 것을 장려하지만 부정적 영향 등이 발생될 경우에만 규제하려는 입장임
- 프랑스는 플랫폼 경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독과점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집중해왔음
-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가 집중되었음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에 대한 위협(디지털 격차, 불공정 경쟁, 불안정성, 부가가치 공유 등)과 기회(경제적,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및 활동, 소셜링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응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연구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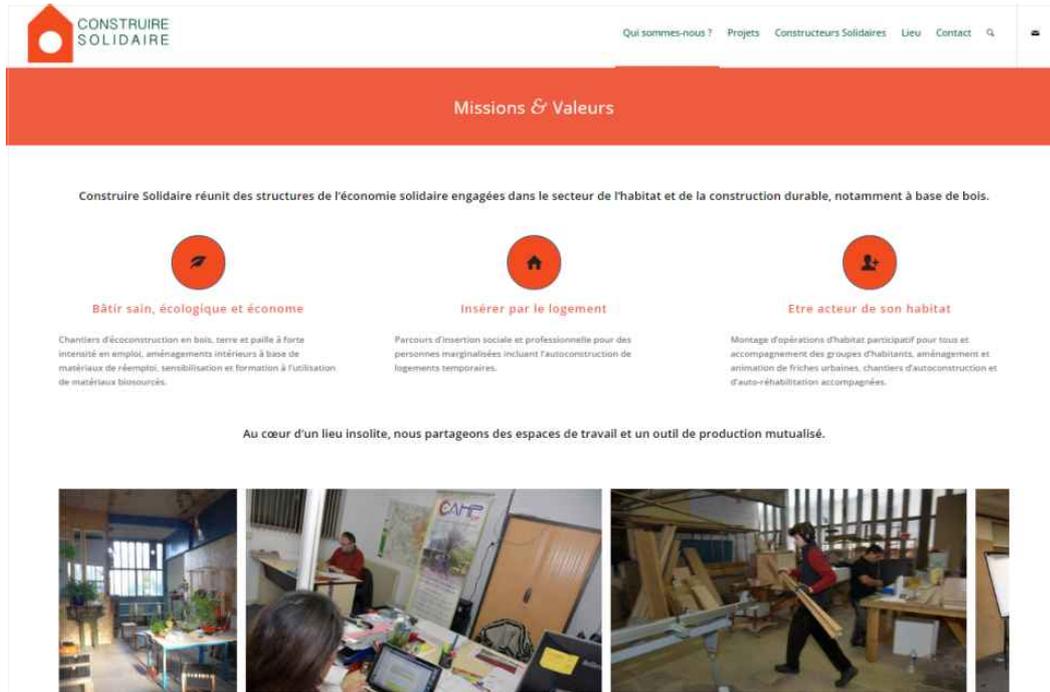
(4) (시민참여 주거공유) CAHP-IDF (공유주택조합)

□ CAHP-IDF (공유주택조합)³⁰⁾

- CAHP-IDF(Collectif d'Animation de l'Habitat Participatif d'Ile-de-France)
-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자와 카톨릭 종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이 많았으며, 1970년대 초반 자본주의적 요소가 대거 도입되면서 법률적으로 근절되었다가 조합의 요청으로 2014년 법률개정을 통해 완화됨
- 현재 프랑스 전역에 약 100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지역에만 5개가 존재하는데 파리 등 대도시는 지가 등 비용문제로 공유주택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
- 새로운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과거 입주자들과 건축가들이 모여 공유주택 등의 프로젝트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에 조합을 구성
- 조합 이전에서는 모임수준이었으며, 공통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뿐 별도의 수익창출을 하지 않고 있음
-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직원으로 3명은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고 있음
- 사회계층간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여서 살며 유대를 강화해가는 참여주거형(Habitat participatif)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주택을 설계, 건축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함께 모여 주택과 공동 공간에 대한 주거 생태계를 구축
- 건강하고 생태적이며 경제적인 건축,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건축, 참여형 주택 운영과 지원을 가치와 목표로 운영
- 공동주택의 옥상이나 정원 등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공동체 활성화 및 유대감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원
- 주택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모든 행정, 재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결속력 및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체를 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대를 낮춰주고, 장기상환 대여시스템을 만들어 초기에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유주택 프로젝트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약 3년 정도의 기간 소요)

30) 인터뷰 : CAHP-IDF 도시계획가 Anne Foy(안느 푸와)

-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지원자 모임(시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20~25세대가 그룹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
- 필요한 자원동원(전문가, 컨설팅, 지원금 등 확보) 및 건축 실행
- 완성 후 개별 소유(대여금 장기상환)



- www.construire-solidaire.fr



Baobab (공유주택)³¹⁾

- 몽프회의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과감한 행정으로 협회를 만들어 추진해온 결과, 공유경제 우수지역으로 성장하였음
- 30년전부터 오렌지색 공유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Baobab 공유주택'은 2011년부터 시작해 시청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입주 완료되었음
- 처음에는 지역의 은행가(자비에 프앙)와 건축가가 공유주택 아이디어를 기

31) 인터뷰 : Baobab 공유주택 이용자 Alenka Zver(알레카 즈베르)

- 확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입주자들이 예산관리와 운영을 직접 수행
- 프로젝트 시작부터 CAHP-IDF, 전문가, 입주자 등이 참여하여 오랫동안 협의해 진행하였으며, 중간에 입주자가 드나들더라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체 13실에 11가구가 입주해있으며, 2실은 인본주의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취약계층 공간은 빈민복지와 무관하게 프로젝트 초지에 행정의 요청으로 추진 (주변에 빈민층 주택단지가 있으며, 세대당 65㎡ 이내에서 제공)
 - 건축가들이 입주자들마다 다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세대마다 구조가 다른 것이 특징
 - 이웃간의 연대의식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활동이 공유주택의 핵심이며, 별도의 운영현장(규칙)을 만들어 생일파티 등 일상적인 이웃관계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정기모임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활용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가 이뤄짐
 - 다목적실 등 입주자들을 위한 전시회, 농산물 직거래, 물물교환 장터, 건강체조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이용
 - 전체 입주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용계획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림판에 예약현황을 기록하여 사용
 - 옥상에 마련된 녹색지대는 입주자들이 직접 가꾸는 도시농업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규 입주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 입주자가 도덕적 의무와 화합에 대한 의지 정도를 판단하여 매매
 - 부동산거래 웹페이지에 공고를 내어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
 - 건축비용은 평당 4,000~4,500유로 정도였으며, 최근에 6,000~6,500유로에 거래되고 있음(일반적인 시세)
 - 공유주택 모델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개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장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공유주택의 형태에 제한은 없으며, 최근 18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델은 경제·복지를 강화한 주택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단순히 많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주거

○ 공유주택 외관



○ 커뮤니티 공간 : 다목적실, 가든



○ 옥상정원 : 도시농업 활용



공간을 함께 건설하여 공동체의 컨셉과 운영 방향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과제

- 다수의 인원과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참여자들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공공기관(행정·금융기관 등) 참여가 중요
- 프랑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형태로 시도된 사례들이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건축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축가 등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유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대조직을 구성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 추진 고려

(5) VELIB (공유자전거)

□ 운영개요

- 2007년 도입된 벨리브(VELIB)는 자전거(Velo)와 자유로운(Libre)의 합성어로 2016년 기준 파리 전역에 자전거 23,000여대를 공유할 수 있는 정거장 1,800개소를 약 300m 간격으로 조성
- 홈페이지(www.velib-metropole.fr)에서 이용권 구입하여 1회 30분 이용 가능하며, 추가 30분당 추가요금(일반 1유로, 전기 2유로) 발생
- 패스권(1~7일) 15유로, 정기권은 성인기준 월 3.1유로, 연 37.20유로

www.velib-metropole.fr



□ 주요 시사점

- 파리시에서 직접 실행하는 공유경제 관련 유일한 정책사업으로 공유자전거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성공모델
- 최근에는 다양한 업체가 생겨나면서 상품과 서비스가 혼재되거나 도난·파괴·유지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자전거를 제외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철거하거나 운영업체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 2〉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9 조례 제 44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④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내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편익 증

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조 제4항에 따른 시장충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당연직)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밖에 1호부터 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⑥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공유경제 교육·홍보
6.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